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2018. 1.



환 경 부

목 차

| | |
|--------------------------------------|-----|
| I. 국고보조사업 총괄표 | 1 |
| II.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 3 |
| III.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작성기준 | 4 |
| IV. 사업별 작성지침 | 11 |
| 1.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 13 |
| 2.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 19 |
| 3.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24 |
| 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30 |
| 5. 지하역사공기질개선사업 | 38 |
| 6.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도시별 교통소음 저감 사업 | 46 |
| 7.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 53 |
| 8.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 57 |
| 9.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67 |
| 10. 서식지의 보전기관 | 81 |
| 11.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 | 91 |
| 12.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 98 |
| 13.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 105 |
| 14. 국립공원 사업 | 115 |
| 15.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 121 |
| 1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특) | 128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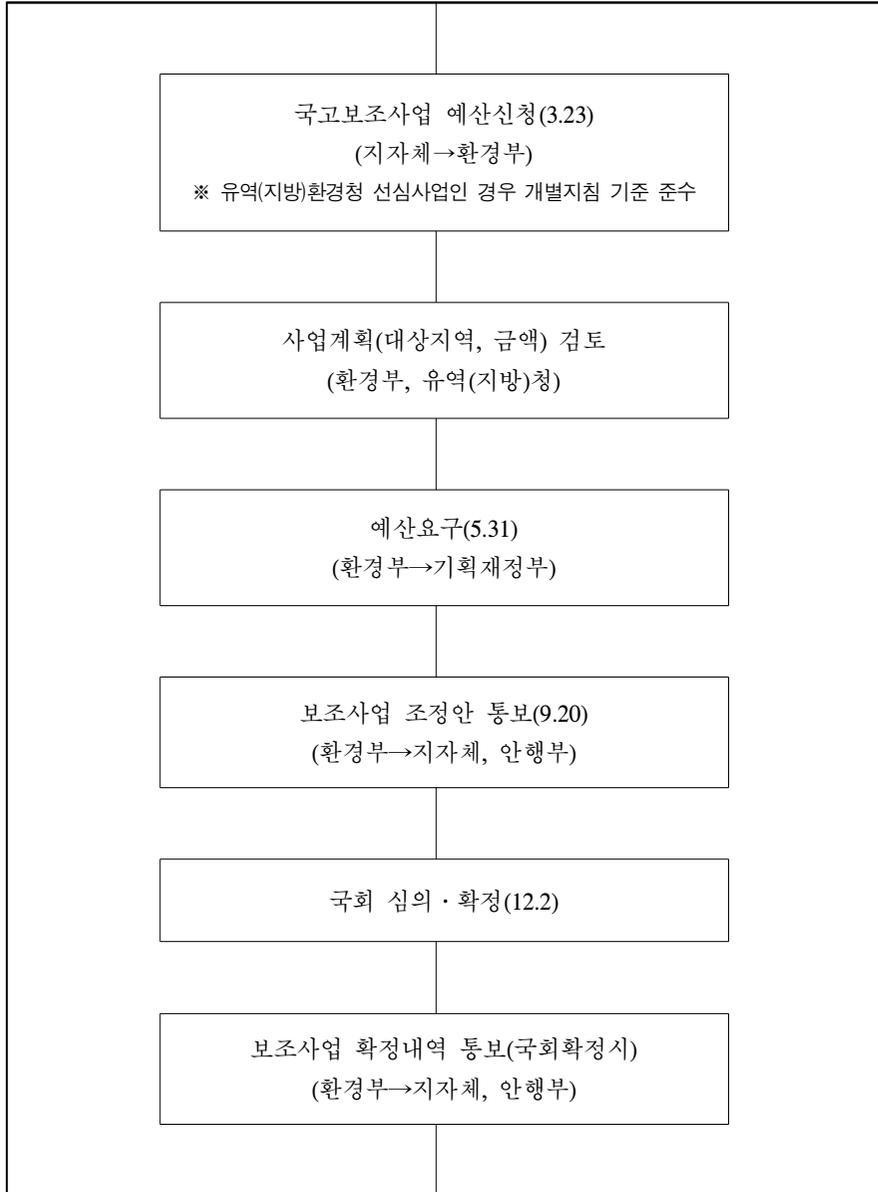
| | |
|-------------------------------------|-----|
| 17. 생태휴식공간(생태놀이터) 조성 | 145 |
| 18. 생태휴식공간(자연마당) 조성 | 153 |
| 19. 도시소생태계조성사업 | 164 |
| 20.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지원 | 177 |
| 21. 대기개선 추진대책 | 183 |
| 22.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 196 |
| 2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 205 |
| 24.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 213 |
| 25.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 220 |
| 26.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 225 |
| 27.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 234 |
| 28. 생태하천 복원사업 | 242 |
| 2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 243 |
| 30.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 267 |
| 31.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269 |
| 32.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 280 |
| 33.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285 |
| 34.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 305 |
| 35.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 314 |
| 36.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지원 | 320 |
| 37.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 확산방지 및 안정화 | 326 |

I. 국고보조사업 총괄표(*표 : 선심대상)

| 분야별 | 사업명 | 재원분담비율(%) | | | 비고 |
|------|-----------------------------|-----------|-------|----|---------------------|
| | | 국고 | 지방비 | 기타 | |
| 환경일반 | ○ 환경 문화예술 보급사업 | 70 | 30 | | ○계속사업 |
| |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 50 | 50 | | ○계속사업 |
| |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50 | 50 | | ○계속사업 |
| | ○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정액 | 국고이상 | | ○계속사업(가구당 168만원) |
| | ○ 지하역사공기질개선사업 | 30~40 | 60~70 | | ○계속사업 |
| | ○ 노후인구 분석을 통한 도시별 교통조용 차감사업 | 50 | 50 | | ○계속사업 |
| |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 50 | 50 | | ○계속사업 |
| | ○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 | 30 | 70 | | ○계속사업 |
| 자연보전 | ○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50 | 50 | | ○계속사업 |
| | ○ 서식지의 보전기관 | 30 | 70 | | ○계속사업 |
| | ○ *야생동물 구조관리 체계구축 | 50 | 50 | | ○계속사업 |
| |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30 | 30 | 40 | ○계속사업(수익자 40%) |
| | ○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 50 | 50 | | ○계속사업(국비 지원한도 50억원) |
| | ○ 국립공원사업 | 100 | - | | ○계속사업 |
| | ○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 50 | 50 | | ○계속사업 |
| |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특) | 50 | 50 | | ○계속사업 |
| | ○ 생태휴식공간 확대(생태놀이터) | 30 | 70 | | ○계속사업 |
| | ○ 생태휴식공간 확대(자연마당) | 30 | 50 | | ○계속사업 |
| | ○ 도시소생태계 조성 | 50 | 50 | | ○계속사업 |
| | ○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지원 | 50~70 | 50~30 | | ○계속사업 |

| 분야별 | 사업명 | 재원분담비율(%) | | | 비고 |
|--------------------|------------------------------|-------------------|-------|----|-------|
| | | 국고 | 지방비 | 기타 | |
| 대기 | ○ *대기개선 추진대책 | 50 | 50 | | ○계속사업 |
| |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 50 | 50 | | ○계속사업 |
| |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 50 | 50 | | ○계속사업 |
| | ○ 잔차등차구해및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 정액 | | | ○계속사업 |
| |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 정액 | | | ○계속사업 |
| |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 50 | 50 | | ○계속사업 |
| | ○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 기반 구축 지원 | 50 | 50 | | ○계속사업 |
| | 수질 | ○ *생태하천복원사업 | 50 | 50 | |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 60~80 | 20~40 | | ○계속사업 |
| ○ *비점오염저감사업 | | 50~70 | 30~50 | | ○계속사업 |
| ○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 | 40~70 | 30~60 | | ○계속사업 |
| ○ 수질 및 수생태계측정조사 | | 50~80 | 20~50 | | ○계속사업 |
| ○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 70 | 30 | | ○계속사업 |
| 폐기물 | | ○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 50 | 50 | |
| | ○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 50 | 50 | | ○계속사업 |
| | ○ 생활폐기물 집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설치지원 | 50 | 50 | | ○계속사업 |
| | ○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 확산방지 및 안정화 | 50 | 50 | | ○계속사업 |

II.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III.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재원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작성

나. 사업 추진상황, 지방비 부담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신청
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주의에 의하므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서의 **제출 기한(2018. 3. 23)**을 준수

※ 유역(지방)환경청 선심사업인 경우 3.9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
라.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대상사업 선정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

마. '19년 예산편성 시 국고보조사업 실집행률, 세입징수율 등을 파악하여 우수지자체는 사업지역 선정시 우대할 계획임

※ 상기 국고보조사업 총괄표에 제시되지 아니한 상·하수도 분야(지역발전특별회계 포함), 공단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최적화 관련사업(쓰레기 소각시설, 자원화사업 등) 등은 각 개별 지침(방침)에 의거 작성·제출

2. 보조금 반영기준

- '17년도 집행실적(율)을 기준으로 '1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반영
 - 집행율 50% 미만 :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집행율 50 이상 ~ 80% 미만 : 원칙적으로 '17 대비 80% 수준으로 반영
 - 집행율 80% 이상 : 적정한 소요 수준을 반영
- * '17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라도 '19 집행가능성이 높은 경우 별도 기준 적용

3. 제출서식

가. 시·도 제출서식 : 전자문서(첨부화일 포함)

* 전자문서 첨부가 어려운 경우(대용량 파일 등) e-mail(cjh6467@korea.kr)로 제출 후 유선 통보

① [별지 1-1호]~ [별지 1-4호] 서식

- 시·도는 [별지 1-1~1-4] 서식(각 부문별 총괄표, 예 : 환경정책부문, 자연보전부문 등)을 작성, 부문별로 기초 자치단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부문별(환경정책,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등)로 파일을 구분하여 제출,

※ 가능한 인쇄물은 지양하고 파일로 제출

② 시·도 추진사업이 있는 경우 시·군·구 제출서식[IV.사업별 작성지침 참조]과 동일 서식 제출

③ 유역(지방)환경청 선심 대상사업은 해당사업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나. 시·군·구→시·도 제출서식(시도에서 취합, 유역(지방)청 또는 환경부에 제출)

① 사업별로 지정된 서식[IV.사업별 작성지침 참조]

- 추진실적은 '17년까지 작성

[별지 1-1호서식]

‘환경일반’ 분야 국고보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시·군·자치구) | 재원 | 환경문화 예술보급 | 지역환경 교육센터 운영 | 녹색구매 지원센터 설치 |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도시별 교통소음 저감사업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구축 |
|-----------------|-----|--------------|--------------------|--------------------|--------------------------|---------------------|---------------------------------------|---------------------------------|
| 계 | 계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시·도 추진사업 | 계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A시 | 계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B군 | 계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C구 (자치구) | 계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연’ 분야 국고보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시·군·자치구) | 재원 |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 서식지 외 보전 기관 | 야생 동물 구조 관리 체계 구축 |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 생물 자원 보전 시설 설치 | 국립 공원 사업 | 지질 공원 제도 구축 및 운영 | 자연 환경 보전· 이용 시설 | 생태 휴식 공간 (생태 놀이터) | 생태 휴식 공간 (자연 마당) | 도시 소 생태계 조성 | 보존역 훼손지 복원 및 보존 이용 시설 살구원 |
|-----------------|-----|-----------------------|-----------------------------|----------------------|----------------------------------|----------------------------|----------------------------|----------------|---------------------------------|-----------------------------|-------------------------------|------------------------------|----------------------|--|
| 계 | 계 | | | | | | | | | | | | | |
| | 국고 | | |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시·도 추진사업 | 계 | | | | | | | | | | | | | |
| | 국고 | | |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 A시 | 계 | | | | | | | | | | | | | |
| | 국고 | | |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B군 | 계 | | | | | | | | | | | | | |
| | 국고 | | |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기’ 분야 국고보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시·군·자치구) | 재원 | 대기개선 추진대책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사업 |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
|-----------------|-----|--------------|---------------------|----------------------|----------------------------------|---------------------|----------------------------|------------------------------------|
| 계 | 계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시·도 추진사업 | 계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A시 | 계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B군 | 계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C구 (자치구) | 계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 분야 국고보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시·군·자치구) | 재원 | 생태하천 복원사업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 비점오염 저감사업 |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 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 설치 |
|-----------------|-----|--------------|----------------------|--------------|-----------------------|----------------------|-----------------------|
| 계 | 계 | | | | | | |
| | 국고 | | | | | | |
| | 지방비 | | | | | | |
| | 기타 | | | | | | |
| 시·도 추진사업 | 계 | | | | | | |
| | 국고 | | | | | | |
| | 지방비 | | | | | | |
| | 기타 | | | | | | |
| A시 | 계 | | | | | | |
| | 국고 | | | | | | |
| | 지방비 | | | | | | |
| | 기타 | | | | | | |
| B군 | 계 | | | | | | |
| | 국고 | | | | | | |
| | 지방비 | | | | | | |
| | 기타 | | | | | | |
| C구 (자치구) | 계 | | | | | | |
| | 국고 | | | | | | |
| | 지방비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분야 국고보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시·군·자치구) | 재원 |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지원 |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지원 |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 확산방지 및 안정화 |
|-----------------|-----|--------------------------|------------------|----------------------------------|----------------------------------|
| 계 | 계 | | | | |
| | 국고 | | | | |
| | 지방비 | | | | |
| | 기타 | | | | |
| 시·도 추진사업 | 계 | | | | |
| | 국고 | | | | |
| | 지방비 | | | | |
| | 기타 | | | | |
| A시 | 계 | | | | |
| | 국고 | | | | |
| | 지방비 | | | | |
| | 기타 | | | | |
| B군 | 계 | | | | |
| | 국고 | | | | |
| | 지방비 | | | | |
| | 기타 | | | | |
| C구 (자치구) | 계 | | | | |
| | 국고 | | | | |
| | 지방비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V. 사업별 작성지침

| | |
|------|--------------|
| 담당부서 | 시민소통팀 |
| 담당자 | 이현경 |
| 전화번호 | 044-201-6074 |
| FAX | 044-201-6050 |

1.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환경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및 일반시민들의 참여 속에 감동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
 -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민간단체, 법인, 학교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대하여 지원
- 지원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지원규모 : 500백만원('18년)

2.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지원액 | 6,500 | 300 | 500 | 1,200 | 1,200 | 700 | 700 | 700 | 700 | 500 |
| 사업내용 | 환경 노래 | 환경 노래, 환경 뮤지컬 | 환경 노래, 환경 뮤지컬 | 환경 노래, 환경 뮤지컬 | 환경 음악제, 환경 뮤지컬 등 |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자치단체의 조건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단체, 법인, 학교 등과 공동 또는 위탁(대행)하여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 부담분(30%)을 확보한 자치단체
- 사업별 지원범위
 - 출연자 및 연출자 등의 인건비, 용역비, 창작비, 대관비, 홍보비, 시상금 등 환경문화예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제반 비용

4. 기관별 주요 수행 사항

| 기관 | 주요수행사항 |
|-----|--|
| 환경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추진계획 수립 ○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예산(국고보조금) 편성·지원 ○ 국고보조금 정산 ○ 사업실적 평가 |
| 지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시행계획 수립 ○ 예산(지방비) 편성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추진(직접 추진하는 경우) ○ 사업자 선정(공동 또는 위탁·대행 추진의 경우) ○ 예산지원(공동 또는 위탁·대행 추진의 경우) ○ 사업자 지도 감독(공동 또는 위탁·대행 추진의 경우) ○ 사업비 정산 ○ 환경부에 사업추진결과 보고 |
|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추진계획 수립 ○ 지자체와 위탁·대행 계약 체결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추진 ○ 지자체에 사업추진결과 보고 |

5. 대상사업

- 환경미술전, 환경사진전, 환경백일장, 환경영화제, 환경연극제, 환경음악제, 환경뮤지컬 등

6. 국고지원비율 및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지원비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국고보조 신청한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목적에 적합
한지 등을 심사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 결정

8. 제출서식 : 붙임

[붙임]

(2019)년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8. . .

| | | | |
|----------------------|--|-----|----------------|
| 시·도(시·군)명 (담당 부서) | | 담당자 | 성 명 : 연락처 : |
|----------------------|--|-----|----------------|

1.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 목적

○

사업내용

○ 사업주최 :

○ 사업주관 :

○ 공동사업시행자 :

※ 민간단체, 법인, 학교 등과 공동(위탁·대행)수행할 경우 공모결과에 따른 해당 기관(단체) 또는 공모계획 기재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공연, 전시, 경진대회 횟수, 참가자 수, 관람예상자 수 등을 기재

2. 2019년 요구내용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요구내용>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 국고 | 지방비 | 민간부담액 |
|------|----|-----|-------|
| | | | |

※ 민간부담액은 공동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재

<산출근거>

지원 필요성

3. 사업추진 절차

4. 참고자료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소요의 적정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첨부

※ 계속사업인 경우 전년도 추진실적 내부보고자료 첨부

| | |
|------|--------------|
| 담당부서 | 환경교육팀 |
| 담당자 | 고준귀 |
| 전화번호 | 044-201-6533 |
| FAX | 044-201-6691 |

2.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환경교육종합계획('16~'20)의 주요 과제로 지역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 및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센터 지정은 부진
 - 또한, 지역센터 지정 기관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없어 지역환경교육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
 - 지역환경교육사업의 체계적 추진 거점이자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점 역할을 할 지역센터의 지정·운영 확대 필요
 - 국비지원을 통해 지역센터 지정 확산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제17조
 -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600백만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17년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
 - 지역 내 환경교육기관·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형, 사회환경교육단체형, 관리자형, 프로그램형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홈페이지 구축, 청소년 환경홍보단 구성·운영 등 환경교육 정보 수집·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내 환경교육 허브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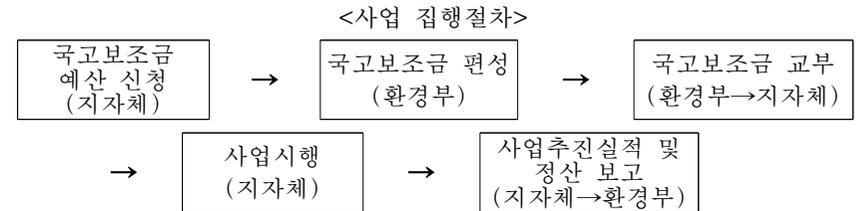
- 향후 지원계획 : 지원 지자체 확대 ('18년 지원대상 : 부산·울산, 경기도, 충남)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자치단체의 조건
 -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지방비(50%)를 확보한 자치단체
- 사업별 지원범위
 - 어린이, 청소년 등 주민 환경교육 실시, 환경교육 실시를 위한 환경교육지도사 등 인력양성, 유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교육과 직접 관련된 제반 비용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



5. 국고지원비율 및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지원비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참고(환경협력과-2002, '14.9.1)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2019)년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추진계획

2018. . .

| | | | |
|----------------------|--|-----|----------------|
| 시·도(시·군)명 (담당 부서) | | 담당자 | 성 명 : 연락처 : |
|----------------------|--|-----|----------------|

1.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 목적

○

사업내용

○ 사업주최 :

○ 사업주관 :

※ 사업추진방식(직접수행 등)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기재 가능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환경교육 인원, 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인원, 유관단체 협력 횟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 등 기재

2. 2019년 요구내용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요구내용>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 국고 | 지방비 |
|------|----|-----|
| | | |

<산출근거>

| | |
|------|--------------|
| 담당부서 | 환경산업경제과 |
| 담당자 | 조용재 사무관 |
| 전화번호 | 044-201-6670 |
| FAX | 044-201-6666 |

□ 지원 필요성

3. 사업추진 절차

4. 참고자료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소요의 적정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첨부

※ 자체적으로 수행해온 사업인 경우 전년도 추진실적 내부보고자료 첨부

3.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일반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 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 유통매장 모니터링,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등의 사업 수행
- 지원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지원규모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에 국고지원(개소당 1억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13년) 부산시, 경기도 등 2개 시·도에 2억원 국고지원(신규)
 - ('14년) 부산, 경기, 제주, 충북, 대전 등 5개 시·도에 5억원 국고지원
 - ('15년) 부산, 경기, 제주, 충북, 대전 등 5개 시·도에 5억원 국고지원
 - ('16년) 부산, 경기, 제주, 충북, 대전 등 5개 시·도에 5억원 국고지원
 - ('17년) 부산, 경기, 제주, 충북, 대전, 세종 등 6개 시·도에 6억원 지원
- 향후 지원계획
 - ('18년) 부산, 경기, 제주, 충북, 대전, 세종, 인천, 광주 등 8개 시·도에 8억원 지원
 - 녹색구매지원센터 전국 확산을 위해 연간 5개소 이상 선정 및 지원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자체(5개소)
- (지원조건) 지방비 부담분(50%) 확보 자치단체

4. 대상사업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

5.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6. 추진체계

- 환경부 : 사업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 자치단체 : 지방비 확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집행 및 정산

7. 기타사항

- 실적 보고 :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8.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 |
|-----------------------------|
| 사업명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

2018. . .

| | | | |
|-----------------------------|--|-----|---------------|
| 시·도명 시·도 교육청명 (담당 부서) |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사업기간 중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 지원조건 :
 - 지원내용 : ※국고 %, 지방비 % 등
 - 사업수행방법 :
 - ※ 직접 수행,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을 대상으로 공모 수행하는 등 운영방법 기술

2. 현황

- 일반현황
- 사업의 필요성
- 사업 세부내용
 -
 -
 -
 -

- 사업효과
- 기타

3. 연차별 추진계획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구분 | 세부사업 | 실적 | | 계획 | | | |
|----|------|-----|----|-----|----|-----|----|
| | | '17 | | '18 | | '19 | |
| 합계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새로이 작성 가능

4. 사업년도 세부추진계획

| 세부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계 | | | |
| <예시> ○ ○ ... - ... - - | | 단가, 물량 등 기재 | |

5. 사업추진일정

| 구분 | 추진일정 (월) | | | | | | | | | | | | 비고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참고자료

※ 동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소요의 적정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첨부

| | |
|------|--------------|
|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 담당자 | 이윤지 |
| 전화번호 | 044-201-6804 |
| FAX | 044-201-6823 |

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지원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17.12)
- 지원규모 : 노후 슬레이트 188,600동(‘12~’21년) 처리비용 지원
 - 시범사업(‘11년, 2,500동) → 본 사업(‘12~’21년, 188,600동)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 실적
 - ’11년 국비 28억원(2,500동) 지원(‘11년 시범사업)
 - ’12년 국비 60억원(10,000동) 지원
 - ’13년 국비 192억원(20,000동) 지원
 - ’14년 국비 288억원(20,000동) 지원
 - ’15년 국비 369억원(22,000동) 지원
 - ’16년 국비 343억원(20,450동) 지원
 - ’17년 국비 341억원(20,300동) 지원

○ **향후 지원계획**

-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1년까지 188,600동 처리지원
- '18년 20,298동 처리지원 예정

< 연도별 슬레이트 처리사업물량 계획 >

| 구분 | 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물량(동) | 123,050 | 20,000 | 20,000 | 22,000 | 20,450 | 20,300 | 20,298 | 20,298 |

3. 지원대상 기관 및 조건

○ (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사업(아래 분류 참조) 추진 예정인 자치단체로 사업별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자치단체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사업

○ (지원조건 및 방식)

- (지원조건) 지방비 부담분 확보 자치단체
- (지원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금액) 슬레이트 처리비용* 일부 지원

* 시·군·구별 지방비 포함하여 배정 예산 총액에서 계획물량 처리

○ (사업물량 배정) ‘일반배정’ 및 ‘특별배정’으로 구분

- 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슬레이트 분포현황, 지방비 확보수준, 작년 사업 실적행률, 취약계층 지원비율 등에 따라 배정

4. 재원분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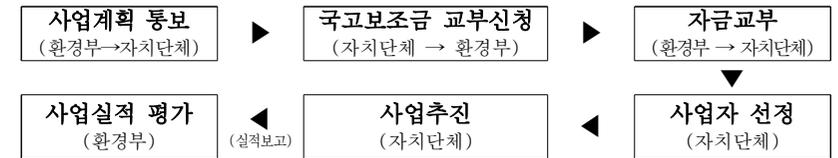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분담비율(안)
 - 배정(슬레이트 처리비용) : 국비(가구당 168만원)+지방비(가구당 168만원)

5. 추진체계

○ 슬레이트 처리(환경부, 자치단체) → 주택개량·정비 등(자치단체, 관계부처* 또는 소유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자체 빈집정비사업, 국토교통부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 사업추진 체계도 >



6. 기타사항

- 사업 진행상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보고
 - 분기 실적 보고 : 매분기(익월 10일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실적 보고 :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7. 제출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추진일정, 재원확보계획 등 총괄(붙임1)
- 수요조사 결과표(붙임2)
 - 시·군·구별, 사업종류별 구분
 - 특별배정 물량 수요조사 결과서 포함

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18. .

| | |
|----------------|--|
| 시·도명 (사업자명) | |
|----------------|--|

작성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1. 사업 개요

가. 개요

- 목 적 :
- 기 간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시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기 투자액 :
 - 사업년도 사업비 :
-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나. 현 황

-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 실적 및 계획

(제출일, 현재)

| 사업구분 | 추진실적('17년) | | 추진계획(동) | |
|----------------------|------------|-------|---------|------|
| | 배정물량(동) | 실적(동) | '18년 | '19년 |
| 계 | | | | |
| 주택개량 연계 | | | | |
| 빈집정비 연계 | | | | |
|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 | | | |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 | | | |
| 기타 타부처 연계 | | | | |
| 환경부 주관사업 | | | | |

※ 추진실적은 해당 자치단체만 작성하고 세부 진행현황은 ()안에 병기
 ※ 추진계획은 시군별로 구분·작성(붙임2 수요조사표에 포함)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효과

마. 기타 특이사항

바. 재원부담 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 사업별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구분·작성

- 1)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336만원/동, 취약계층 지붕개량비용은 350만원/동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별 지방비 분담율 적용
- 2) 시도비 및 시군구비로 구분
- 3) 본예산, 추경 등 재원별 구분, 추경예산은 확보시기 명시(ex. 1/4분기)

2.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구분 | 사업계획안(동) | | | | |
|-------------------|----------|------|------|------|--------|
|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계 | | | | | |
| 농어촌주택개량 연계 | | | | | |
| 빈집정비 연계 | | | | | |
|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 | | | | |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 | | | | |
| 기타 타부처 연계 | | | | | |
| 환경부 주관사업 | | | | | |

※ 관련부처 연계사업은 부처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계획물량 작성

3. '19년도 세부추진계획

| 사업구분 | 사업물량 (동) | 지방비 확보계획 | | |
|-------------------|----------|-------------------------|-------------------|--------------------|
| | | 소요예산(백만원) ¹⁾ | 재 원 ²⁾ | 확보계획 ³⁾ |
| 계 | | | | |
| 농어촌주택개량 연계 | | | | |
| 빈집정비 연계 | | | | |
|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 | | | |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 | | | |
| 기타 타부처 연계 | | | | |
| 환경부 주관사업 | | | | |

4. 추진일정

| 구분 (예시) | 추진일정 (월)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주택개량 연계 | | | | | | | | | | | | |
| 빈집정비 연계 | | | | | | | | | | | | |
|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 | | | | | | | | | | | |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 | | | | | | | | | | | |
| 기타 타부처 연계 | | | | | | | | | | | | |
| 환경부 주관사업 | | | | | | | | | | | | |

※ 월별로 세부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기재(필요 시 별지 첨부)

5. 건의 및 애로사항 등

< 붙임2 >

수요조사 결과(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 |
|------|--------------|
|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 담당자 | 김현주 |
| 전화번호 | 044-201-6796 |
| FAX | 044-201-6802 |

일반배정

| 자치단체 | 사업구분 | 신청물량(동) | 소요재원(백만원) ¹⁾ | 재원 ²⁾ |
|------|-------------------|---------|-------------------------|------------------|
| 계 | - | | | |
| OO시 | 주택개량 | | | |
| | 빈집정비 | | | |
| |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 | | |
|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 | | |
| | 기타 타부처 | | | |
| | 환경부 주관 | | | |
| OO시 | 주택개량 | | | |
| | 빈집정비 | | | |
| | 자가가구 주거급여 연계 | | | |
|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계 | | | |
| | 기타 타부처 | | | |
| | 환경부 주관 | | | |
| : | : | : | : | : |

¹⁾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288만원/동, 취약계층 지붕개량비용은 350만원/동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별 지방비 분담율 적용

²⁾ 시도비 및 시군구비로 구분

특별배정

| 구분 ¹⁾ | 자치단체(시군) | 건축물 수(동) | 슬레이트 수(동) | 신청물량(동) ²⁾ |
|------------------|----------|----------|-----------|-----------------------|
| | | | | |

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①), 차상위계층(②), 서해5도 주민(③),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④)로 구분

²⁾ 신청물량은 지원 대상자 예상 신청률, 지방비 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

5. 지하역사공기질 개선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시민·종사자 건강보호
 - 공기질 개선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공기질 조기개선 및 민간의 환경개선 투자확대 유도
- 지원근거 :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18.2)(예정)
- 지원규모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및 민간 지하철 운영기관에 약 565억원 국고지원(19~22년)

2. 추진실적 및 지원계획

- 추진실적
 - '09년 서울시 등에 149억원 국고지원('09년 신규사업)
 - '10년 서울시, 부산시 등에 200억원 국고지원
 - '11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에 121억원 국고지원
 - '12년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등에 70억원 국고지원
 - '13년 서울시에 25억원 국고지원
 - '14년 서울시 등 6개시에 22.5억원 국고지원
 - '15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에 85억원 국고지원
 - '16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에 67억원 국고지원
 - '17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에 83억원 국고지원

- 향후 지원계획
 -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18~'22년)」에 따라 공기질 개선효과, 이용시민 및 종사자 건강보호에 영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지원

3. 지원대상 기관 및 조건

- (지원대상) 지하철을 운영 중인 자치단체
 - 자치단체(6개)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 지원조건 및 방식
 - (지원조건) 지방비 또는 운영기관 부담분(60~70%) 확보기관
 - (지원방식) 자치단체 지원

4. 대상사업

- 미세먼지 오염원 차단
 - ex) 자갈도상 콘크리트 개량, 흡음물탈 제거, 역사 방풍문 설치 등
- 환기설비 개선
 - ex)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필터 교체 및 설치 등
- 터널 미세먼지 제거
 - ex) 집진차량 구매, 살수배관 설치, 터널 물청소 등
- 기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또는 관리를 위해 추가 시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소요로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업

5.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30~40%, 지방비 60~70%

6. 추진체계

- 환경부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 자치단체 : 지방비 확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집행 및 정산
- 지하철공사 등 민간 운영기관 : 계약체결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

7. 기타사항

- 집행실적 보고 : 사업공정률 및 예산 집행상황 보고(월말 기준)

8.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지하역사공기질 개선사업

2018. .

시·도명 (사업자명)

작성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E-mail :)

확인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E-mail :)

1. 사업 개요

가. 개요

- 목 적 :
- 기 간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시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기 투자액 :
 - 사업년도 사업비 :
-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나. 현황

-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 실적 및 계획

| 사업 | 실적 | | | 계획 | |
|----|-----|-----|-----|-----|-----|
|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효과

마. 기타 특이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 연간 소요 사업비를 기재하고 재원부담비율을 명시할 것

2. 연차별 추진계획

※ 1년 단위 사업인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연차별 투자소요 | | | |
|--|----------|------|----------|-----|--|--|
| | | | '19 | '20 | | |
| 합 계 | | | | | | |
| <예시> ○ 미세먼지 오염원 차단 ○ 환기설비 개선 ○ 터널 미세먼지 제거 - 집진차량 구매 - 터널 물청소 - ... 세부 내역 | | | | | | |
| 재원 별 ○ 국고 (%) ○ 지방비 (%) - 시·도비 ○ 기타 - ○○공사(%) | | | | |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새로이 작성 가능

3. 사업년도 세부추진계획

| 세부내역 | 금 액 | 산출내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 계 | | | |
| <예시> ○ 미세먼지 오염원 차단 ○ 환기설비 개선 ○ 터널 미세먼지 제거 ○ ... - ... - - | | | |

| | |
|------|--------------|
|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 담당자 | 이지선 |
| 전화번호 | 044-201-6793 |
| FAX | 044-201-6802 |

6.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도시별 교통소음 저감 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도시 광역화에 따라 주민이 다양한 소음원에 노출되고 소음민원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등 해결책이 필요
 - 도시별 소음분포 현황 및 소음저감 대책 수립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저감대책 수립 및 향후 개발사업시 야기될 수 있는 소음피해를 사전 예측하여 주민피해를 예방
 - 일정 지역의 소음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사전예방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도시별 소음노출 인구, 노출면적 등 소음노출현황 분석 및 소음지도 작성을 통해 교통소음 소음저감대책 마련
- 지원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 2(소음지도의작성),
 소음·진동 종합계획('16~'20)
- 지원규모 : 도시별 소음피해 진단 및 저감대책을 추진하고자하는 인구 25만 이상 자치단체를 대상(5개 도시, 1,150백만원)으로 국고 지원 시작('13~)

4. 사업추진일정 계획

| 구 분 (예시) | 추진 일정 (월) | | | | | | | | | | | | 비고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미세먼지 오염원 차단 | | | | | | | | | | | | | | 일자리 창출효과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 타

- 상세산출내역 및 견적서 등 추진사업에 관한 세부사항(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업추진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및 기 추진사항 등)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13년 부산, 인천, 대전, 성남, 남양주 등 11.5억원 국고지원
- '14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대구, 성남 등 13억원 국고지원
- '15년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등 7.5억원 국고지원
- '16년 서울, 광주, 대구, 울산 등 4.5억원 국고지원
- '17년 서울, 화성, 여수, 광양 등 5억원 국고지원

○ 향후 지원계획

- 소음영향이 큰 인구 25만이상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지원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자치단체의 조건

- '14년말 현재 인구규모 25만 이상 자치단체
- 지방비 부담분(50%) 확보 지자체

○ 사업별 지원범위

- 지자체의 소음노출 인구분석 및 소음지도 작성 경비
- 비용 효과적인 교통소음 저감방안 수립 경비

4. 대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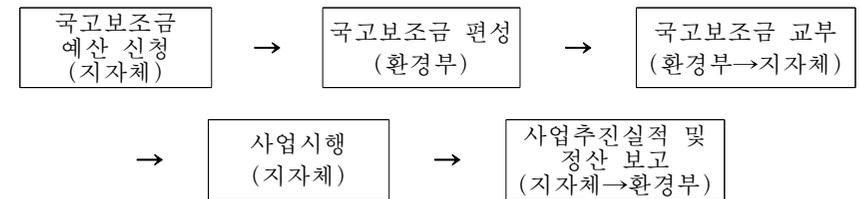
- 소음노출 인구, 노출면적 등 소음노출현황분석 및 소음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등과 효과적인 교통소음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경비
- ※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은 제외

5.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분담비율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사업 집행절차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6.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도시별 교통소음 저감 사업

2018. .

| | | | |
|------|--|--------|--|
| 시·도명 | | 시·군·구명 | |
|------|--|--------|--|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Email:)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Email:)

1. 사업 개요

가. 개요

- 목 적 :
- 기 간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시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기 투자액 :
 - 사업년도 사업비 :
-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나. 현 황

-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 실적 및 계획

| 구 분 | 세부 사업 | 실적 | | | 계획 | |
|-----|-------|-----|-----|-----|-----|-----|
| |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효과

마. 사업추진 체계

바. 기타

2. 연차별 추진계획

※ 1년 단위 사업인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연차별 투자소요 | | | |
|------------------|----------|------|----------|----|-----|----|
| | | | '19 | | '20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합 계 | | | | | | |
| 세 부 내 역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시·도비 | | | | | | |
| ○ 기타 - 민자(%) | | | |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새로이 작성 가능

3. '19년도 세부추진계획

| 세부내역 | 금 액 | 산출내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 계 | | | |
| <예시> ○ ○ ... - ... - - | | 단가, 물량 등 기재 | |

4. 사업추진일정 계획

| 구 분 (예시) | 추진 일정 (월) | | | | | | | | | | | | 비고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 | |
|------|---------------------|
| 담당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 담당자 | 이신우 |
| 전화번호 | 032)560-7940 |
| FAX | 032)560-7905 |

7.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계속)

1.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대행업 등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를 선진화하여 국제적 적합성 기반을 구축하고자함
- 지원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 지원규모 :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국비 15억원 지원('18년)

2. 사업계획

- 2011년부터 매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시설 및 기술력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

3. 지원대상 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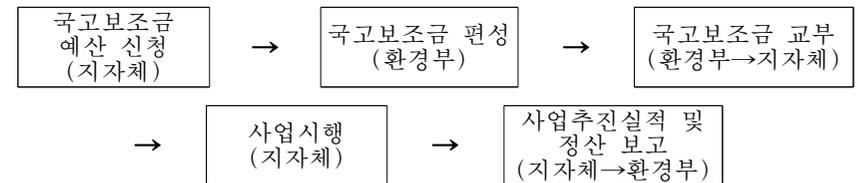
- 지원대상 자치단체의 조건 : 지방비 부담분(50%) 확보 자치단체
- 사업별 지원범위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시설 및 기술력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30억원(국고 15억원) 지원
 - ※ 2019년 계획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대상사업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
 - 시험·검사의 소급성 확보(표준물질 구매 및 장비 검·교정 등)
 - 정도관리를 위한 실험실 환경개선(실험실 개·보수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 정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 확보 및 교육 등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구역내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교육 실시 등
 - 국립환경과학원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공동연구 활성화
 - 기준실험실 구축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보
 - ※ 2014년부터 구입한 장비(자산보조)에 대하여 장비 이력카드 구비(참조:붙임)

5.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분담비율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사업 집행절차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자산보조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6.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계속)

20 . . .

| | | | |
|------|--|---------------|--|
| 시·도명 | | 시도보건환경 연구원 | |
|------|--|---------------|--|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1. 사업개요

가. 개요

- 사업목적
- 총사업비
- 사업의 필요성
-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 재원부담 비율(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2019년도

-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금 액 | 산 출 내 역 | | 국고지원비율 |
|------|-----|---------|-----------------|--------|
| | | 경상보조 | 자산보조 (구입장비명) | |
| 합 계 | | | | |
| | | | | |

* 장비구매(자산보조) 후 장비이력카드 유지

3. 기대효과

4. 기 타

| | |
|------|--------------|
| 담당부서 | 생물다양성과 |
| 담당자 | 성연주 |
| 전화번호 | 044-201-7247 |
| FAX | 044-201-7261 |

8.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정책목표

-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등 행위규제 위주의 직접규제 방식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생태계 보전정책으로 전환

○ 단위사업의 목적

-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

○ 지원근거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 ① 환경부장관은 해양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이하 생략)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 구분 | 국고지원액 | 대 상 지 역 |
|------|-------|---|
| 2002 | 207 | 3개 시·군 창원시(주남저수지), 군산시(금강호), 해남군(영암호·고천암호·금호호) |
| 2003 | 542 | 5개 시·군 서산시(천수만), 김제시(만경·동진강하구) 추가 |
| 2004 | 711 | 9개 시·군 서천군(금강하구), 홍성군(간월호), 김포시(김포평야), 철원군(철원평야) 추가 |
| 2005 | 746 | 10개 시·군 순천시(순천만) 추가 |
| 2006 | 901 | 14개 시·군 부산광역시(강서구 낙동강하류), 고양시(장항습지 및 산남습지), 파주시(군내면 민통선), 익산시(금강하류 옹포면) 추가 |
| 2007 | 1,010 | 16개 시·군 안산시(시화호), 구미시(해평습지) 추가 |
| 2008 | 1,346 | 19개 시·군 화성시(시화호), 아산시(금강유역), 창녕군(우포늪) 추가 |
| 2009 | 2,000 | 20개 시·군 강화군(한강하구), 부안군(동진강 하류) 추가, 아산시 제외 |
| 2010 | 1,000 | 20개 시·군 |
| 2011 | 900 | 19개 시·군 부산광역시 제외 |
| 2012 | 900 | 19개 시·군 |
| 2013 | 1,000 | 21개 시·군 연천군(임진강 일원), 김해시(화포천 습지) 추가 |
| 2014 | 1,250 | 24개 시·군 인천시 서구(한강하구), 진도군(군내호), 고창군(동림저수지) 추가 |
| 2015 | 1,188 | 25개 시·군 당진시 추가 |
| 2016 | 1,309 | 24개 시·군 인천광역시 서구 제외 |
| 2017 | 1,359 | 25개 시·군 제주 서귀포시 추가 |

○ 향후 추진계획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등 사업대상 확대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생물다양성우수지역 및 주요 철새도래지의 배후에 철새들이 채식할 수 있는 대규모 농경지를 보유하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신청한 자치단체(시·군·구)

4. 대상사업

- 대상지역 및 우선순위 결정방법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의 활용방안,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소득 증대 방안 강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보호지역 및 인근지역
 - (2순위) 철새인증지역 및 주요 철새도래지역과 멸종위기야생생물 I·II급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야생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 사업유형(내용) 선정 원칙
 - 먹이의 시기조절 및 먹이제공 종의 다양화 등을 위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적은 비용으로 추진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크며, 추심경 금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벗짚존치 사업의 전국 확대 추진
- 사업내용 :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 보호·관리에 대한 계약 체결
 - 생태계우수지역관리계약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우수지역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보호·관리토록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경작관리계약

- 사업대상 농경지에 지역주민이 보리(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찰쌀보리 등) 등을 계약경작하고, 철새 먹이제공 계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보호활동관리계약

- 추심경금지 후 계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철새먹이 제공을 위한 벗짚존치 등
- 철새의 쉼터 제공을 위한 담수를 조성·관리하고 계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사업비(계약비) 산정방법

- 계약대상지역 및 인근 토지의 임대료 범위 내

- 경작관리계약의 경우

- 사업비 = 계약면적(ha) × 면적당 단가(원/ha)

※ 계약면적은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먹이제공 효과가 큰 보리 재배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철새의 개체수에 따른 필요 곡물량을 산정하여 경작관리계약이 필요한 면적을 희망자 및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산정

※ 면적당 단가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전국 평균가격과 지역 수매가격 등을 참고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

- 보호활동관리계약의 경우

- 농작물 미수확 존치 사업비 = 계약면적(m²) × 면적당 단가(원/ha)

※ 계약면적은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먹이제공 효과가 큰 벼농사 지역중 철새의 개체수에 따른 필요 곡물량을 산정하여 미수확존치가 필요한 면적을 희망자 및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산정

※ 면적당 단가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전국 평균가격과 지역 수매가격 등을 참고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

· 담수 등 습터제공 및 생태둠벙 조성·관리 사업비 = 계약면적(m^2)× 습터 조성·관리비 단가(원/ha)

※ 계약면적은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먹이제공 효과가 큰 벼농사지역으로 철새의 개체수에 따른 필요 담수면적을 추정하여 산정

※ 면적당 단가는 습터 조성 및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0천원/ha 이내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

※ 생태둠벙은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여 5천원/ m^2 으로 하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

· 벗짚존치 사업비 = 계약면적(m^2)× 면적당 단가(원/ha)

※ 계약면적은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먹이제공 효과가 큰 벼농사지역으로 철새의 개체수에 따른 필요 벗짚존치 면적을 추정하여 산정

※ 면적당 단가는 벗짚 시중단가를 참조하여 현지 판매가격의 1.5배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감안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

5. 관리비

- 사업시행기관(시·군)에서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수당”, 조사 활동을 위한 “여비”, 안내판 제작 등을 위한 “재료비” 등을 예산에 반영·집행가능

- 다만, 관리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의 10% 이내로 하되, 상한액은 15백만원

6.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비구성 : 국고 30%, 지방비 70%(시·도비 35%, 시·군비 35%)

7. 기타사항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환경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계약체결) : 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사업계획서 검토 : 유역(지방)환경청

8.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2018. . .

| | | | |
|------|--|--------|--|
| 시·도명 | | 시·군·구명 | |
|------|--|--------|--|

작성자(시·군·구)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작성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1. 사업개요

가. 개요

- 사업명 :
- 사업대상지 :
- 사업기간 :
- 사업비(천원) :
- 사업내용(계약내용) :
 - 시행하고자 하는 계약의 방식 및 내용 기술
 - ※ 철새인증지역 및 생태계우수지역과 사업효과가 우수한 벗짚존치 사업유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경작관리계약(보리재배) 및 부득이한 경우 기타 보호활동관리계약(농작물미수확존치, 추심경금지, 쉽터조성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

나. 현황

- 사업대상지 일반 현황
 - 전·답·과수원 등 면적 및 분포
- 사업대상지 인근지역 현황
- 사업대상지 생태계 현황
(자연환경관련 보호지역, 법정보호 야생생물 서식여부, 철새도래 현황 등 포함)

다. 사업의 필요성

- 생태계우수지역계약, 경작관리계약, 보호활동관리계약 체결의 필요성 등 기술

라. 사업(계약)내용

- 대상지역 : 위치 및 면적
- 계약내용
 - 계약유형(생태계우수지역관리계약, 경작관리계약, 보호활동관리계약 등)
 - 계약면적(유형별로 작성)
- 계약금액
 - 계약의 유형에 따른 계약금액 및 산정내역 제시

마. 사업성과 분석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으로 인한 주요 보호종 관리 효과 및 철새 유인 효과 분석
-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소득증대 방안 등

바. 법령제도 또는 특기사항

사. 재원 부담비율

(국고 : %, 시·도비 : %, 시·군비 : %)

2.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ha, 천원)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연차별 투자소요 | | | | | | | | |
|---------------|-------|------|----------|----|------|----|------|----|--------|----|--|
| | | | 2018까지 | | 2019 | | 2020 | | 2021이후 |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합 계 | | | | | | | | | | | |
| 세부내역 | | | | | | | | | | | |
| ○ 생태계우수지역관리계약 | | | | | | | | | | | |
| ○ 경작관리계약 | | | | | | | | | | | |
| ○ 보호활동관리계약 | | | | | | | | | | | |
| -농작물미수확 존치 | | | | | | | | | | | |
| -쉽터제공 | | | | | | | | | | | |
| -벚짚존치 | | | | | | | | | | | |
| -추심경금지 등 | | | | | | | | | | | |
| ○ 국고 (%) |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 시·도비(%) | | |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3. 2019년도 세부추진계획

| 세 부 내 역 | 금 액 (천원) | 산출내역 | | 국고지원 비율(%) |
|---------------|----------|--------|----------|------------|
| | | 면적(ha) | 면적당단가(원) | |
| 합 계 | | | | |
| ○ 생태계우수지역관리계약 | | | | |
| ○ 경작관리계약 | | | | |
| ○ 보호활동관리계약 | | | | |
| - 농작물 미수확 존치 | | | | |
| - 쉽터제공 | | | | |
| - 벚짚존치 | | | | |
| - 추심경금지 등 | | | | |
| ○ 기타 | | | | |

※ 국고지원 30%, 지방비 70%(도비 35%, 시·군비 35%)

4. 사업 추진일정 계획

- 사업계획(계약의 주요내용, 대상면적, 계약기간) 공고, 주민의견 수렴, 계약체결 등 주요 일정계획 기재

5. 대상지역의 생태적 특성

- 생태계 조사결과(생물 및 철새종류, 개체수 등), 멸종위기종 서식여부 등 생태적 특성을 가급적 자세히 기술(참고자료 첨부)

| 구 분 | 사업지역 (ha) | 철새 및 생물의 종류 | | 평균 개체수 | 월동기간 (~) |
|-----|-----------|-------------|-------|--------|------------|
| | | 대표종 (3종) | 멸종위기종 | | |
| 현 황 | | | | | |

6.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도

- 해당지역 지도(1/25,000)에 사업대상지 위치 표시, 인근지역 주요 현황 표시

7. 기타(사진첨부) 참고사항

| | |
|------|--------------|
| 담당부서 | 자연공원과 |
| 담당자 | 박재근 |
| 전화번호 | 044-201-7518 |
| FAX | 044-201-7310 |

9.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나 훼손·단절된 지역을 대상으로 복원·복구 및 생태탐방 등을 함께 추진하여 생태계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도모
 -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10.11.9, 관계부처 합동 국무회의 보고) 및 전국 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07.11)에 따른 생태네트워크 보전대책으로 추진
 - * '20년까지 국가생태탐방로 총 2,500km 조성 목표('17년까지 2,000km 조성 완료)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54조(국고보조)
 - * 자연환경보전·이용, 훼손방지·복원 및 생태관찰시설 등의 설치·운영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08년: 250백만원 국고보조
 - '09년: 2,000백만원 국고보조
 - '10년: 3,000백만원 국고보조
 - '11년: 3,500백만원 국고보조
 - '12년: 4,000백만원 국고보조
 - '13년: 5,000백만원 국고보조

- '14년: 5,500백만원 국고보조
- '15년: 6,000백만원 국고보조
- '16년: 6,000백만원 국고보조
- '17년: 5,550백만원 국고보조

- 향후 지원계획
 - 생태탐방로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총 2,500km 조성('18~'20)

3. 지원대상 및 지원 우선순위 자치단체

- 지방비 50%를 확보할 수 있는 자치단체
- 시·도 또는 시·군 단위에서 생태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
- 생태탐방로 조성 관련 지역주민이나 지역시민단체 등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자치단체
- 국가급 탐방로에 걸맞는 테마를 부여하고 지역구간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

4. 대상사업

-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안내시설, 관찰시설, 보행안전시설, 휴게시설 등
 - 대규모 인공 시설물의 설치비 요구는 지양하고 기존 생태환경, 역사,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

5. 지원형태(지원율)

- 자치단체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6. 기타사항

7. 제출서식: 붙임

【 목 차 】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계획
(탐방로 명칭 기재)

I. 탐방로 조성구간 개요 ----- 00

II. 국가급 여부 검토 ----- 00

III. 탐방로 계획 ----- 00

IV. 투자 계획 ----- 00

V. 자가 평가 ----- 00

VI. 첨부자료 ----- 00

VII. 기타 특장점 ----- 00

VI. 기 타 ----- 00

2018년 월

시·도
시·군·구

<확인자> 시·도(시·군·구) 과명 직책 성명 (인)
연락처(전화번호: , FAX: , E-mail:)

1. 탐방로 조성구간 개요

□ 명 칭

- (국가급 탐방로에 걸맞는 테마를 부여하고 지역구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명칭을 작명하여 기술)

□ 주요 전략

- (특장점과 탐방자원화 주된 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
- 기본 재원(안): (제안하는 탐방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재원조달 계획을 기술, 국고 및 지방비 비율을 제시하고, 지방비의 실질적 조달방법을 간략히 기술)
- 조성원칙: (제안하는 탐방로 조성을 위한 공간구성과 활동 원칙을 제시)

□ 조성구간 개괄

- (주요 구간별 세부명칭 혹은 특징과 길이를 기술)

□ 주요 특징

- (특이할만한 주요 생태자원, 문화자원과 탐방로의 주요 특징을 약술)

□ 특이사항

- (국가급 생태문화탐방로로 지정되어야 하는 특이할만한 사유 등을 기술)
- (탐방로 조성에 대한 지역적 참여수준,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적 목표, 연계사업 등, 국가급 탐방로로 내세울 수 있는 현 양식 외 사항을 기술)

<주요 표현사항>

1. 탐방로 전 구간을 개괄적으로 표현
2. 탐방로 주변 주요 생태문화자원 표현
3. 세부구간별 길이, 탐방수단(도보, 자전거, 기타) 표현
4. 행정구역 경계 표현
5. 기타 주요 구간별 대표 현황 사진 등

* A4 크기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는 A3, A2, A0 크기의 용지에 표현하여 탐방구간과 정보가 제대로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탐방로 조성구간 개괄도】

II. 국가급 여부 검토

- (검토결과 기술)

| | |
|--|--------------|
| <p>○ 도 전체의 국가생태문화탐방권역, 탐방지원로 도면(자료로 제공됨)을 참조하여 계획하는 탐방로의 위치와 구간을 표현하여 검토</p> <p>※ 신청하고자 하는 탐방로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급 탐방권역, 조성가능구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p> <p>※ 국가급에 준하는 자원과 탐방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p> | |
| <p>※ 구체적인 검토사항 및 의견</p> | <p>도면 범례</p> |

III. 탐방로 계획

- 명칭: (명칭 기술)
- 조성구간: (구간별 길이 기술)
- 주요 특징: (주요 특징 기술)
- 주요 구간별 탐방로 구성

| 주요 구간 1 | 주요 구간 2 | 주요 구간 3 |
|----------|----------|----------|
| 탐방로 구성내용 | 탐방로 구성내용 | 탐방로 구성내용 |

- 주요 도입시설

| 주요 구간 1 | | 주요 구간 2 | | 주요 구간 3 | |
|---------|------|---------|------|---------|------|
| 소주제 | 도입시설 | 소주제 | 도입시설 | 소주제 | 도입시설 |
| | | | | | |

<표현내용>

1. 탐방지원로, 진입로, 거점시설, 탐방로, 탐방자원
2. 주요 탐방자원 기본 정보
3. 탐방세부구간, 거리, 탐방수단, 시간
4. 차별화된 주요 탐방특징 표현
5. 탐방시설계획

※ 필요시 A3~A0크기의 도면이나 여러 장으로 표현 가능

【탐방로 계획】

IV. 투자계획

- 1차년도: 탐방로 기반시설 등, 총 약 000백만원
(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1차년도 사업비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중심으로 편성

- 2차년도: 기반사업 평가 후, 연차사업 진행, 총 약 000백만원
- 3차년도: 사업성과 평가 후, 연차사업 진행, 총 약 000백만원

| 구분 | 항목 | 내역 | 연차별 계획 | | | 비고 |
|----------|----|----|--------|----|----|----|
| | | | 19 | 20 | 21 | |
| 총계 | | | | | | |
| 시설 | | | | | | |
| 관리 | | | | | | |
| 지역 참여 | | | | | | |
| 기타 | | | | | | |

V. 자가 평가

| 평가항목 (배점) | 자가 평가내용 | 배점 | 자가 평가 | 평가근거 |
|---------------------------|--|----|----------|---|
| 1 국가적 대표성 (25점) | • 국가를 대표하는 탐방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7 | | • 국가를 대표하는 탐방자원을 나열, 간략한 특징기술 • 첨부1. 국가를 대표하는 탐방자원 위치, 유형, 사진, 설명 등 자원에 대한 정보를 식별가능하게 설명하는 부록자료 첨부 |
| | • 국제적 가치가 있는 탐방자원인가? | 7 | | • 조성하고자 하는 탐방로상의 탐방자원과 탐방로가 국가 및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독특성, 장소성 등을 가지는지에 대해 기술 • 또는 탐방자원이 국제적인 보호종이나 구역에 해당될 수 있는지 기술 • 첨부 2. 상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및 해설 자료) 등을 첨부 |
| | • 그 지역만이 가지는 자연환경과 문화를 대표하는가? | 6 | | • 탐방자원 및 탐방로가 그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독특성과 지역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간략 기술 • 첨부 3. 상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 |
| | •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 및 문화 탐방자원이 포함되는가? | 5 | | • 법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자연 및 문화자원이 있는지, 법적 보전의무자원 및 지역이 아니더라도 보전 필요성이 있는 자원 등이 있는지 등을 기술 • 첨부 4. 상기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첨부 |
| | • 보전필요 자원을 훼손 하지 않는 탐방로인가? | 8 | | • 보전해야 하는 자연 및 문화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탐방로 계획이 되었는지를 기술 • 첨부 5. 상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 |
| 2 탐방지역 적합성 (25점) | • 국가가 제시하는 탐방 잠재구역에 속하는 탐방로인가? | 6 | | • 국가가 제시하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가능 잠재구역 내에 계획하는 탐방로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첨부 6. 국가생태문화탐방로 탐방 잠재구역과 계획 하는 탐방로 구간과의 관계를 도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 | • 국가의 생태·문화 자원 네트워크에 기여하는가? | 6 | | • 국가가 제시하는 생태문화탐방로(강길, 해안길, 숲 생태길)의 탐방지원으로 연결되는 탐방로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첨부 7. 국가가 제시하는 탐방권역, 탐방로 조성 가능구역, 계획하는 탐방로구간의 연결성을 도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 | • 자연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을 복합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가? | 5 | | • 계획하는 탐방로 주변에 자연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이 복합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이를 탐방 자원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 | | | | |

| 평가항목 (배점) | 자가 평가내용 | 배점 | 자가 평가 | 평가근거 |
|---|--|-----|----------|---|
| | | | | • 첨부 8. 계획하는 탐방로 주변의 주요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의 위치를 표현하고 이를 탐방로로 연결하는 계획을 식별 가능하게 표현하도록 함 |
| 3 탐방지역 지역활성 화 수준 혹은 가능성 (30점) | • 탐방자원 주변 지역 을 활성화하는 프로 그램이 운영되는가? | 8 | | • 지역민 참여, 지역민 감시, 지역민의 가이드, 방문객 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하여 탐방로 주변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천적으로 계획되었는가를 설명 • 첨부 9. 해당 지역에 도입하는 탐방프로그램계획을 자료에 첨부 |
| | • 프로그램은 실천적 인가? | 8 | | •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현실 및 실천성이 담보 되는지에 대한 근거 계획과 자료를 간략히 기술 • 첨부 10.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기술 |
| | • 지역민이 참여하여 탐방 프로그램을 실 천하는가? | 8 | | • 프로그램 운용 시 지역민 참여계획을 실천적·현실적 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 첨부 11. 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첨부 |
| | • 지역의 환경감시 프 로그램이 있는가? | 6 | | • 탐방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역민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설명 • 첨부 12 지역민 환경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첨부 |
| 계 (80점) | | 80 | | |
| 4 탐방시설 적합성 (20점) | • 국가가 제시하는 기본 디자인(로고, 색상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 3 | | • 참조: 성과평가 시 평가사항 |
| | •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인가? | 3 | | • 참조: 성과평가 시 평가사항 |
| | • 자연자원에 위해성이 없는 위치, 규모, 색상, 재료 등인가? | 7 | | • 참조: 성과평가 시 평가사항 |
| | • 해당 자연 및 문화 자원의 특성을 반영 하고 있는가? | 7 | | • 참조: 성과평가 시 평가사항 |
| 계 (100점) | | 100 | | |

VI. 첨부자료

1. 국가를 대표하는 탐방자원인가?

※ 국가를 대표하는 탐방자원의 위치와 사진 등으로 표현
A4 이외의 크기로 작도 가능 (식별 가능하도록 작성)

2. 국제적 가치가 있는 탐방자원인가?
3. 그 지역만이 가지는 자연환경과 문화를 대표하는가?
4.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 및 문화 탐방자원이 포함되는가?
5. 보전필요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탐방로인가?
6. 국가가 제시하는 탐방 잠재구역과 관련하여 조성되는가?
7. 국가의 생태·문화자원 네트워크에 기여하는가?
8.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복합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가?
9. 탐방자원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
10. 프로그램은 실천적인가?
11. 지역민이 참여하여 탐방 프로그램을 실천하는가?
12. 지역의 환경감시 프로그램이 있는가?

VII. 기타 장점

※ 기타 내세울 수 있는 국가급 생태문화탐방로로서의 장점을 기술

VIII. 기 타

※ 필요 시 기술

| | |
|------|--------------|
| 담당부서 | 생물다양성과 |
| 담당자 | 유병훈 |
| 전화번호 | 044-201-7253 |
| FAX | 044-201-7261 |

10. 서식지의 보전기관(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야생생물의 서식지외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 지원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등)
 - 야생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증식·복원 종합계획(‘06~‘15)」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15.12. 개정)」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 (지정 현황) '18.1월 현재 서울대공원 등 25개 기관 지정

| 지정번호 | 명칭 | 지정동·식물 | 지정일자 | 지정내역 | 관리기관 |
|------|------------------|--------|-----------|---|--------------------------|
| 1 | 서울대공원 | 동물20종 | '00. 4.12 | 반달가슴곰, 늑대, 여우, 표범, 호랑이, 삿, 수달, 두루미, 재두루미, 황새, 시라소니, 담비, 노랑부리저어새, 흑고니,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고니,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 서울시 서울대공원 동물원 |
| 2 | 한라수목원 | 식물26종 | '00. 5.25 | 개가시나무, 나도풍란, 만년콩, 삼백초, 순채, 죽백란, 죽절초, 지네발란, 파초일엽, 풍란, 한란, 황근, 탐라란, 석곡, 콩짜개란, 차걸이란, 전주물꼬리풀, 금자란, 한라솔다리, 암매, 제주고사리삼, 대홍란, 솔잎란, 자주망귀개, 으름난초, 무주나무 | 제주도 환경자연연구원 한라생태환경연구부 |
| 3 | (재)한택식물원 | 식물19종 | '01.10.12 | 가시오갈피나무, 개병풍, 노랑만병초, 대청부채, 독미나리, 미선나무, 백부자, 순채, 산작약, 연잎평의다리, 가시연꽃, 단양쭉부쟁이, 층층동굴래, 홍월굴, 털복주머니란, 날개하늘나리, 솔붓꽃, 제비붓꽃, 각시수련 | |
| 4 | (사)한국황새복원 연구센터 | 조류2종 | '01.11. 1 | 황새, 검은머리갈매기 | |
| 5 | 내수면양식연구센터 | 어류3종 | '01.11. 1 | 꼬치동자개, 감돌고기, 모래주사 | 국립수산 과학원 |
| 6 | 여미지식물원 | 식물10종 | '03. 3.10 | 한란, 암매, 솔잎란, 대홍란, 죽백란, 삼백초, 죽절초, 개가시나무, 만년콩, 황근 | |
| 7 | 삼성에버랜드 동물원 | 동물6종 | '03. 7. 1 | 호랑이, 산양, 검독수리, 두루미, 큰바다사자, 재두루미 | 삼성에버랜드(주) |
| 8 | 기청산식물원 | 식물10종 | '04. 3.22 | 섬개야광나무, 섬시호, 섬현삼, 연잎평의다리, 매화마름, 갯봄맞이꽃, 큰바늘꽃, 솔붓꽃, 애기송이풀, 한라송이풀 | |
| 9 | 한국자생 식물원 | 식물16종 | '04. 5. 3 | 노랑만병초, 산작약, 홍월굴, 가시오갈피나무, 순채, 연잎평의다리, 각시수련, 복주머니란,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달꽃, 백부자,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큰바늘꽃, 한라송이풀 | |
| 10 | (사)홀로세생태 보존연구소 | 곤충3종 | '05. 9.28 | 애기뿔소뿔구리,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 | |
| 11 | (사)한국산양·사향노루증보존회 | 포유류2종 | '06. 9.21 | 산양, 사향노루 | |
| 12 | (재)천리포 수목원 | 식물4종 | '06. 9.21 | 가시연꽃, 노랑붓꽃, 매화마름, 미선나무 | |

| 지정번호 | 명칭 | 지정동·식물 | 지정일자 | 지정내역 | 관리기관 |
|------|--------------------|--------|-----------|--|--------------|
| 13 |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 | 곤충3종 | '07. 3. 8 |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 장수하늘소 | |
| 14 | 함평자연생태공원 | 식물4종 | '08.11.18 | 나도풍란, 풍란, 한란, 지네발란 | 함평군 산림공원사업소 |
| 15 | 평강식물원 | 식물6종 | '09. 8.25 | 가시오갈피나무, 개병풍, 노랑만병초, 단양쭉부쟁이, 독미나리, 조름나물 | |
| 16 | 신구대학 식물원 | 식물11종 | '10. 2.25 | 가시연꽃, 섬시호, 매화마름, 독미나리, 백부자, 개병풍, 나도송마, 단양쭉부쟁이, 날개하늘나리, 대청부채, 층층둥글레 | |
| 17 | 우포따오기 복원센터 | 동물1종 | '10. 6.16 | 따오기 | 창녕군 우포늪관리사무소 |
| 18 | 경북대조류생태환경연구소 | 동물3종 | '10. 7. 9 | 두루미, 재두루미, 큰고니 | |
| 19 | 고운식물원 | 식물5종 | '10. 9.15 | 광릉요강꽃, 노랑붓꽃, 독미나리, 층층둥글레, 진노랑상사화 | |
| 20 | 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 | 식물7종 | '10. 9.15 | 왕제비꽃, 층층둥글레, 기생꽃, 복주머니란, 제비동자꽃, 솔붓꽃, 가시오갈피 | 강원도 |
| 21 |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 식물8종 | '11. 9. 9 | 노랑붓꽃, 진노랑상사화, 대청부채, 지네발란, 독미나리, 석곡, 초령목, 해오라비난초 | 한국도로공사 |
| 22 | (재)제주테크노파크 | 동물3종 | '11.12.29 | 두점박이사슴벌레, 물장군, 예기빨소똥구리 | (재)제주테크노파크 |
| 23 |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 복원센터 | 동물7종 | '13. 2.26 |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흰수마자, 여올마자, 꾸구리 돌상어, 부안종개 | 순천향대학교 |
| 24 | 청주랜드관리사업소 | 동물10종 | '14.2.10 | 표범, 늑대, 붉은여우, 반달가슴곰, 스라소니, 두루미, 재두루미, 흑고니, 삼, 독수리 | 청주시 |
| 25 | 한국수달연구센터 | 동물1종 | '17.2.7 | 수달 | 화천군 |

- (예산 지원 현황) '03년부터 '17년까지 총 21,796백만원 지원

o 향후 지원계획

- '18년 : 2,275백만원 예산 지원 예정

3. 지원대상 기관

o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o 국·공립 연구기관

o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o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그 부설기관

o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대상사업

o 국고지원 대상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멸종위기종의 확보·증식·복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

- 타 법령이나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 목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가능

- 각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보전대상 동·식물의 조사연구, 인공증식 기술개발, 현지복원에 필요한 여비, 인건비, 장비 구입비(소모성 부품) 등 지원

- 보전대상 동·식물 이외의 종에 대한 사업비 요구, 사업에 필수적이지 아니한 장비 구입비 등은 요구 지양

o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조정 가능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o 지원대상 범위

- 보전대상 종의 추가 확보, 자생지 조사 및 보호 사업
- 종의 특성에 적합한 증식 사업, 증식된 개체의 유지, 관리 사업
- 증식기술 개발이 필요한 종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
- 종의 생태·분류학적 특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유전자분석 및 관련 연구사업
- 서식지 복원사업
- 멸종위기종 보전 관련 교육, 홍보, 생태탐방 사업 등

5. 국고지원형태 및 지원율

- o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 보조(정률 보조)를 원칙으로 함 (지자체 30%, 민간기관 50%)
 - 총 사업비는 종의 조사·보호·증식·복원 등의 소요경비로 하되, 원칙적으로 장비구입비와 시설설치비는 제외. 다만,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에 필요한 장비구입시 사전에 환경부 협의 필요

6. 기타사항

□ 보조금의 편성

- o 사업계획서 제출
 -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환경부에 제출
- o 지원대상사업 및 규모 결정
 - 대상종의 증식·복원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국고보조신청 금액의 적정성, 국고보조금 운영의 합리적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각 기관별 예산 지원 규모 결정(필요시 전문가 검토 의뢰)

o 예산안 편성 및 결과 통보

-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다음 연도의 예산을 지원대상기관에 즉시 통보 (매년 연도말)

□ 국고보조금 교부

- o 편성된 예산내역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식지외보전기관 → 환경부) : 별지 제5호서식
 - 보조금은 사업추진 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함
 - 상반기 : 매년 2월말(운영기간 : 1월~ 6월)
 - 하반기 : 매년 7월말(운영기간 : 7월~12월)
- o 당해연도에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교부 결정(환경부 → 서식지외보전기관)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서식지외보전기관 종 보전 사업

2018. . . .

기 관 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1. 사업 개요

가. 개 요

- o 목 적
- o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 o 기 간 :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기
- o 총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기 투자액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19년 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 재원부담비율(국고 : 00 %, 지방비 : 00%, 기타 : 00%)
- o 사업규모
 - 지정 대상종

| 순번 | 국명 | 학명 | 지정 현황(I, II) |
|-----|----|----|--------------|
| 1 | | | 멸종위기종 00급 |
| 2 | | | |
| 3 | | | |
| ... | | | |

- 연도별 사업 추진 실적(연구현황 포함)
- 2019년 사업내용

나. '19년 사업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다. 기타 특이사항

2. 연차별 추진계획

※1년 단위 사업인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연차별 투자소요 | | | | | |
|------------------|--------------------|------|----------|----|------|----|--------|----|
| | | | 2018 | | 2019 | | 2020이후 | |
| 합 계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세 부 내 역 | <예시> | | | | | | | |
| | o 인공증식 기술 개발 연구 | | | | | | | |
| | o 서식지 조사 | | | | | | | |
| | o 대상종 증식 및 관리 | | | | | | | |
| | o 서식지 복원 | | | | | | | |
| | - | | | | | | | |
| 재 원 별 | o 국고 (%) | | | | | | | |
| | o 지방비 (%) | | | | | | | |
| | - 시·도비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 o 기타 | | | | | | | |
| | - (%) | | | | |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새로이 작성 가능

3. 2019년 세부 추진계획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 과제명 | 구 분 | 금액 | 비고 |
|------------|------|-----------|----|
| | 세부과제 | | |
| ○ | 000 | 00 | |
| | 000 | 00 | |
| 소 계 | | 00 | |
| ○ | 000 | 00 | |
| | 000 | 00 | |
| | 000 | | |
| 소 계 | | 00 | |
| 합 계 | | 00 | |

나.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금 액 | 산출내역 |
|-------------|-----|------|
| 합 계 | | |
| <과제명 : 000> | | |
| o 세부과제 | | |
| - 000 | | |

4. 사업추진일정

| 구 분 | 추진 일정(월)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과제명(세부과제) | | | | | | | | | | | | |
| 과제명(세부과제) | | | | | | | | | | | | |
| 과제명(세부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 타

| | |
|------|--------------|
| 담당부서 | 생물다양성과 |
| 담당자 | 송미연 |
| 전화번호 | 044-201-7240 |
| FAX | 044-201-7261 |

11.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 (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정책목표

- 부상 또는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방사를 위한 야생동물 구조·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야생동물 복지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계 보전 및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

○ 단위사업의 목적

-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시설·장비를 구비한 전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건립·운영
- 국가는 센터건축비, 운영장비 구입비 및 차량구입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약품 및 사료비 등을 확보하여 구조센터의 유지·관리 등 운영을 책임짐

○ 지원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재정지원)

-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건축비 및 운영장비 구입비 지원(개소당 500백만원)

| 연도 | 지자체명 | 연도 | 지자체명 |
|------|-------------|------|---------------|
| 2004 | 경상북도, 전라남도 | 2013 | 대전광역시 |
| 2005 | 충청북도, 강원도 | 2015 | 서울특별시 |
| 2006 |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 2016 | 광주광역시 |
| 2007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2017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 |
| 2008 | 경기도, 충청남도 | 2018 | 경기도 북부 |
| 2009 | 제주특별자치도 | | |

-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증·개축 지원(총 200백만원)

| 연도 | 2016 | 2017 | 2018 |
|-----|--------------|-------------|-------------|
| 지자체 | 충청북도 충청남도 | 제주도 충청남도 | 강원도 충청남도 |

- 센터별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 향후 지원계획

- 건립부지의 확보 및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도에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건립을 확대하여 국가는 병원건축비, 운영장비 구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보조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구조센터의 건립부지 확보 및 시설 증·개축 비용,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4. 대상사업

| 사업구분 | | 세부사업내역 |
|-------------|-----------|--------------------------|
| 야생동물구조센터 건축 | 신축 및 증·개축 | 방사훈련장, 보호사, 야생동물치료실 등 |
| | 운영장비 구입 | 구조차량, 치료용 의료기기, 사무용 장비 등 |
|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 |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

5. 재원분담비율

- 센터설치(자치단체 자본보조) : 소요사업비(센터 건축비 및 운영장비 구입비, 시설 증·개축비)의 50% 국고보조(국고 50%, 지자체 50%)
 - 지방자치단체는 건립부지 확보, 인건비, 약품·사료비 등 운영비용 부담
- 센터운영(자치단체 경상보조) : 소요사업비(센터 운영비)의 30% 국고보조(국고 30%, 지자체 70%)

사업명 :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

※ 센터 운영비의 경우에도 본 양식에 준하여 별도 작성·제출

2018. . .

시·도명

작성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1. 사업개요

가. 개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황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자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m³, 톤, 금액 : 백만원)

| 구분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연차별 투자 소요 | | | | | | | | | | |
|------|--|------|-----------|----|------|----|------|----|--------|----|--|--|--|
| | | | '17까지 | | 2018 | | 2019 | | 2020이후 | | |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
| 합계 | | | | | | | | | | | | | |
| 세부내역 | *사업내역을 세분하여 작성예> ○야생동물구조센터 신축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용역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구조차량 구입 -단가 -기타 ○의료기기 구입 -종류 -단가 -기타 ○사무용 장비 구입 -종류 -단가 -기타 ○전립부지 확보 -토지구입 -기타 ○인건비 -단가 -기타 ○약품 구입 -종류 -기타 ○사료 구입 -종류 -기타 ○기타 | | | | | | | | | | | | |
| 재원별 | ○국고 (%) ○지방비 (%) ○기타 (%) | | | | | | | | | | |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3. 2019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금 액 | 산 출 내 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 계 | | | |
| 사업내역을 세분하여 작성할것 | | | |

- 주) 1.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2.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4. 사업추진일정 계획

- 주)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준공 등 주요공정별로 일정계획(실적 포함) 기재

5. 기타사항

| | |
|------|--------------|
| 담당부서 | 생물다양성과 |
| 담당자 | 구현림 |
| 전화번호 | 044-201-7248 |
| FAX | 044-201-7261 |

12.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정책목표
 -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야생생물 관리체계 구축
- 단위사업의 목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들의 불만 해소와 안정적인 야생동물 보호관리 정책 추진
- 지원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국가 및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 및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2006년(4.5억원) : 9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2007년(5억원) : 10개 시·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2008년(10억원) : 11개 시·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09년(20억원) : 11개 시·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0년(17억원) : 10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1년(18억원) : 10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2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3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4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5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세종,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6년(33억원) : 15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7년(50억원) :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8년(50억원) :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향후 지원계획

- 피해예방시설 설치 추진 효과, 멧돼지 방지대책 추진확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및 대상 조정
- '12년도부터 피해금액, 지방비 확보, 피해저감 노력, 예산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 지원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4. 대상사업

- 지원대상 피해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업·임업·어업 등 재산상 피해
- 지원대상 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유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

5. 재원분담비율

- 자치단체 자본보조
 - 개인설치 : 국고 30%, 지자체 30%, 본인부담 40%
 - 지자체설치 : 국고 50%, 지자체 50%

6. 기타사항

- 해당 시·도에서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교부 신청

7.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2018. . .

| | | | |
|------|--|--------|--|
| 시·도명 | | 시·군·구명 | |
|------|--|--------|--|

작성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1. 사업개요

가. 개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황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m³, 톤, 금액 : 백만원)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연 차 별 투 자 소 요 | | | | | | | | |
|------------------|----------|------|---------------|----|------|----|------|----|--------|----|--|
| | | | 2017까지 | | 2018 | | 2019 | | 2020이후 |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합 계 | | | | | | | | | | | |
| 세 부 내 역 | | | | | | | | | | | |
| 재 원 별 | | | | | | | | | | | |

3. 2019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금 액 | 산 출 내 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 계 | | | |
| ○전기울타리 | | | |
| ○철선울타리 | | | |
| ○방조망 | | | |
| ○경음기 | | | |

- 주) 1. 세부내역은 시군구 별로 작성
 2. 전기울타리, 철선 울타리 등 예방시설 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4. 사업추진일정 계획

- 주)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제출, 대상사업 확정, 시설비 지원 등 일정계획 기재

5. 기타사항

| | |
|------|--------------|
| 담당부서 | 생물다양성과 |
| 담당자 | 강수진 주무관 |
| 전화번호 | 044-201-7512 |
| FAX | 044-201-7261 |

13.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 사업목적

- 자생 생물자원(DNA 등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표본, 살아있는 개체)의 현지외 (*ex situ*) 보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마련
- 생물자원 연구·개발, 전시·교육을 통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 지원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생물자원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11.7월 야생생물법(제37조) 개정에 따라 설치비 지원근거 마련

2. '생물자원 보전시설' 개요

- 기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2)
 -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및 전시
 -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 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 등록 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춘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3. 국고지원 경과 및 향후 지원 계획

○ 국고지원 경과

- (설치비 국고 지원 경과) '12~18년 총 8,150백만원 지원

| 연도 | 지원 대상 기관 | 국비 보조금 (백만원) | 보조비율 |
|------|---|---------------------|------------------------|
| 2012 | 야생동물 생태관찰원(경북 영주) | 1,000 | 국 비 : 50% 지방비 : 50% |
| 2013 | 야생동물 생태관찰원(경북 영주) | 1,000 | 국 비 : 50% 지방비 : 50% |
| 2014 | 자생생물 생태원(전북 장수)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전남 순천) | 500 500 | 국 비 : 50% 지방비 : 50% |
| 2015 | 자생생물 생태원(전북 장수)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전남 순천) | 500 500 | 국 비 : 50% 지방비 : 50% |
| 2016 | 전주 생태동물원(전북 전주) 경기도 생물자원보전시설(경기도) | 500 300 | 국 비 : 50% 지방비 : 50% |
| 2017 | 전주 생태동물원(전북 전주) 경기도 생물자원보전시설(경기도) | 1,600 100 | 국 비 : 50% 지방비 : 50% |
| 2018 | 경기도 생물자원보전시설(경기도) 우치공원 생태동물원(광주광역시) 생물자원보전 자연생태원(고창군) | 500 1,000 150 | 국 비 : 50% 지방비 : 50% |

○ 향후 지원 계획

- (선정 기준) 생물자원의 보전 및 연구·교육 기능을 특화시킨 시설 설치 사업을 선정하여 국고 지원 계획 (단순 전시·관람 시설 설치 및 기설치 시설의 단순 개보수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은 배제)

- (지원대상기관 의무)

- 사업 종료 후 환경부에 사업 정산 보고를 해야 함
-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심사 신청을 해야 함

4. 국고 보조 신청 조건 (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역별 특색있는 생물자원 보전·연구 및 전시·교육을 추진하여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인식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 설치계획 및 설계 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설치계획 및 목적 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2호(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를 **충족***하는 시설로서 **신·증축인 경우에 한정**(단순 개보수 제외)
- * 국고지원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요건을 갖춘 사업계획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심사 신청을 해야 함

5. 국고지원형태 및 지원율

-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 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6. 제출서식 : 사업계획서(붙임)

[붙임]

사업명 :

(예) 「00000(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

2018. . . .

기 관 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1. 사업 개요

가. 개 요

o 목 적 :

o 기 간 :

* 계속사업일 경우 사업시점부터 사업 종점까지 명시

* '19년 당해 종료 사업일 경우 “2019년” 명시

o 총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기 투자액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19년 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재원부담비율(국비 : 00 %, 시·도비 : 00%, 시·군비 : 00%)

o 사업 유형 (예 : 신축 / 증축 / 특정 목적으로 개보수, 중복 서술 가능)

-

o 사업 대상지 (주소 등)

-

o 보전대상 생물자원 (대표적 자원을 20종류 안팎으로 기재)

| 순번 | 국명 | 학명 | 수량 (예: 부피 및 농도, 개수 등) | 자원종류 (예: DNA, RNA, 추출물, 종자, 균주, 표본, 생체 등) | 보관상태 (예: -70℃에서 10vial 보관)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 | | | | |

나. 국고지원 필요성 (정책적 타당성 등)

○

○

다. 세부 사업내용

○ 전체기간 중 설치사업 내용

-

○ '19년 설치사업 내용

-

라. 기대효과

○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m³, 톤, 금액 : 백만원)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연 차 별 투 자 소 요 | | | | | | | | |
|---|----------|------|---------------|----|-------|----|-------|----|--------|----|--|
| |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합 계 | | | | | | | | | | | |
| 세 부 내 역 | | | | | | | | | | | |
|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지(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실시설계 ○감리용역 ○토목공사 - - ○건축공사 - - ○기 타 | | | | | | | | | | | |
| 재 원 별 | | | | | | | | | | | |
| ○국 고 (%) ○지방비 (%) - 시·도비 - 시·군비 ○차 입 (%) ○민자유지 (%) ○기 타 (%) | | | | | | | | | | |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기타 세부내역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 추가기재
 3.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4. A4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3. 2019년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금 액 | 산 출 내 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 계 | | | |
| ○ 타당성조사 | | | |
| ○ 기본설계 | | | |
| ○ 용지(보상)비 | | | |
| - 직접보상 | | | |
| - 간접보상 | | | |
| ○ 실시설계 | | | |
| ○ 감리용역 | | | |
| ○ 토목공사 | | | |
| - | | | |
| - | | | |
| ○ 건축공사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3. 기타 세부내역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 추가기재
 4.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4. 사업추진일정

○ 사업 1년차 (2019년)

| 구 분 (예시) | 추진 일정 (월) | | | | | | | | | | | | 비고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타당성조사 | | | | | | | | | | | | | | |
| 기본설계 | | | |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준공 등 주요공정별로 일정계획(실적 포함) 기재

○ 사업 2년차 (2020년, 해당사항 있을 시 기재)

| 구 분 (예시) | 추진 일정 (월) | | | | | | | | | | | | 비고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타당성조사 | | | | | | | | | | | | | | |
| 기본설계 | | | |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준공 등 주요공정별로 일정계획(실적 포함) 기재

5. 기 타(연구실, 수장고, 교육계획 등)

○

6. 첨부

○

| | |
|------|--------------|
| 담당부서 | 자연공원과 |
| 담당자 | 김미연 |
| 전화번호 | 044-201-7315 |
| FAX | 044-201-7310 |

14. 국립공원 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정책목표
 - 국립공원의 자연자원보전 및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고 탐방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국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미래의 국가가치를 결정하는 국가 자연자원의 적극적 보전을 도모
- 단위사업의 목적
 - 국립공원내 훼손지복구 등을 통한 공원자원 보호·복원
- 지원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39조(비용부담의원칙)
국립공원은 국가부담, 도·군립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 자연공원법 제4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
 - 자연공원법 제73조의2, 동법시행령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2. 지원대상 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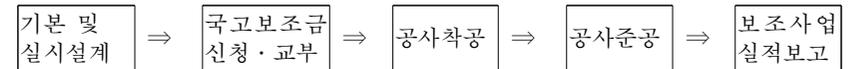
- 지원대상 자치단체
 - 국립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여수시)
- 지원 우선순위
 - 공원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공원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3. 대상사업

- 국립공원지역내 훼손된 공원자원 복원 및 보호사업(지자체 직접관리 국립공원에 한함)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
- 사업집행 절차



- 국고보조율(100%)

| 사업대상 | 국고지원 수준 |
|------------------------|------------|
| ○ 훼손된 공원자원 복원 및 보호사업 등 | 예산범위내에서 전액 |

5. 기타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요구시 필요한 사항 기재

6. 제출서식 : 붙임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m³, 톤, 금액 : 천원)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 연 차 별 투 자 소 요 | | | | | | | | | |
|---|----------|------|------|---------------|--|------|----|------|----|--------|----|--|--|
| | | | | 2016까지 | | 2017 | | 2018 | | 2019이후 | | | |
| | | 현행 | 변경요구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 합 계 | | | | | | | | | | | | | |
| 세 부 내 역 | | | | | | | | | | | | | |
|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지(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실시설계 ○감리용역 ○토목공사 - ○건축공사 - ○기 타 | | | | | | | | | | | | | |
| 재 원 별 | | | | | | | | | | | | | |
| ○국 고 (%) ○지방비 (%) - 시·도비 - 시·군비 ○차 입 (%) ○민자유지 (%) ○기 타 (%) | | | | | | | | | | | | |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3. A4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4. 총사업비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요구내역을 별도(서식 3호 또는 4호) 작성 제출

3. 2019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 세부내역 | 금 액 | 산 출 내 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 계 | | | |
|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용지(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 실시설계 ○ 감리용역 ○ 토목공사 - - ○ 건축공사 - - ○ 기 타 | | |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3.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4. 사업추진일정 계획

- 주)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준공 등 주요공정별로 일정계획(실적 포함) 기재

5. 기타사항

- 기타 각종 통계자료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출서식 기재

| | |
|------|--------------|
| 담당부서 | 자연공원과 |
| 담당자 | 김보경 |
| 전화번호 | 044-201-7318 |
| FAX | 044-201-7310 |

15.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우리나라가 보유한 풍부한 지질유산을 발굴·보전하고 교육, 관광 등과 연계시킨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질공원 활성화 도모
 - 지질유산의 체계적인 국가관리시스템 정착과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을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
- 지원 근거
 - 자연공원법 제36조의7조(비용부담)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 국가지질공원 10개소 인증 : 울릉도·독도, 제주도('12.12.27), 부산('13.12.6), 강원, 청송('14.4.11), 무등산권('14.12.10), 한탄·임진강('15.12.31), 강원고생대('17.1.5), 경북동해안 ('17.9.13), 전북서해안권('17.9.13)
 - (울릉도·독도) 면적 127.9km², 지질명소 23개소
 - (제주도) 면적 1,864.4km², 지질명소 10개소
 - (부 산) 면적 296.98km², 지질명소 12개소

- (강원평화지역) 면적 2,067.07km², 지질명소 21개소
- (청송) 면적 845.71km², 지질명소 24개소
- (무등산권) 면적 246.31km², 지질명소 23개소
- (한탄·임진강) 면적 766.68km², 지질명소 20개소
- (강원고생대) 면적 1990.1km², 지질명소 21개소
- (경북동해안) 면적 2,261km², 지질명소 19개소
- (전북서해안권) 면적 520.3km², 지질명소 12개소
- 세계지질공원 2개소 인증 : 제주도('10.10.1, 재인증('14.9)), 청송('17.5)
 - (제주도) 제주도 전체, 지질명소 12개소
 - (청송) 청송군 전체, 지질명소 24개소
 - ※ 2017년 기준 세계지질공원은 총 127개, 35개국 운영(중국 35개 최다, 일본 8개 등)
- 향후 지원계획
 - 국내 지질유산 발굴·보존 및 국가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액 및 대상지역 점차 확대
 - ※ 2020년까지 12개 국가지질공원 및 5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지속 추진**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질유산의 가치 등을 인정받아 국가(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 ※ 국가지질공원 최초 인증 후 4년간 지원 **추진**

4. 대상사업

- 지질자원 보존과 활용을 조화시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 지질공원 보호 및 안내시설 설치,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1. 사업 개요

가. 개요

- 목적 :
- 기간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시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기 투자액 :
 - 사업년도 사업비 :
-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나. 현황

-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 실적(연구현황 포함)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효과

마. 기타 특이사항

사. 자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 연간 소요 사업비를 기재하고 자원부담비율을 명시할 것

2. 연차별 추진계획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연차별 투자소요 | | | | | |
|------------------|--|------|----------|----|------|----|--------|----|
| | | | 2018 | | 2019 | | 2020이후 | |
| 합 계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세 부 내 역 | (예시) | | | | | | | |
| | ○ 지질공원 보호 및 안내 시설 설치 ○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 지질명소 관리,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 지역주민 및 업체와의 협력사업 ○ 지질공원 홍보 ○ 국제교류 및 마케팅전략 ○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등 - | | | | | | | |
| 재 원 별 | ○ 국고 (%) | | | | | | | |
| | ○ 지방비 (%) - 시·도비 - 시·군비 ○ 기타 - (%) - (%) - (%) | | | | | |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새로이 작성 가능

3. 2019년 사업년도 세부추진계획

| | |
|------|--------------|
| 담당부서 | 생태서비스진흥과 |
| 업무담당 | 최 윤 석 |
| 전화번호 | 044-201-7516 |
| FAX | 044-201-6594 |

| 세부내역 | 금 액 | 산출내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 계 | | | |
| <예시> | | | |
| 0 지질공원 보호 및 안내시설 설치 | | | |
| 0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 | | |
| 0 지질명소 관리,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 | | |
| 0 지역주민 및 업체와의 협력사업 | | | |
| 0 지질공원 홍보 | | | |
| 0 국제교류 및 마케팅전략 | | | |
| 0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
| 0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등 | | | |
| - | | | |
| - | | | |
| - | | | |

1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계속, 지특)

1. 사업목적 및 개요

- 정책목표
 -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경관적 가치가 큰 지역의 고유 생물종 보전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 시키고, 건전한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생태 체험·관찰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 단위사업의 목적
 -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자연자원의 보전·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토 환경조성
 - 국민들의 생태체험·관찰 등 기회 제공으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 인식
- 지원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지원)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설치 가능
 - ①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②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 ③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자연환경을 이용·관찰하기 위한 시설
 - ④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 ⑤ 기타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연보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4. 사업추진일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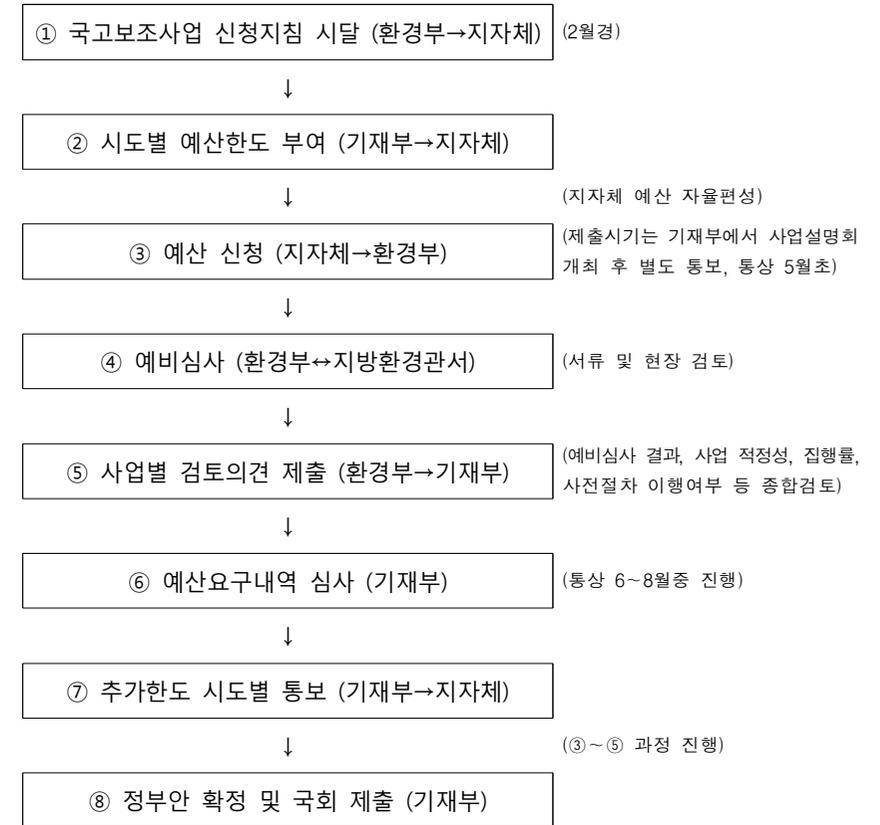
| 구 분 (예시) | 추진 일정 (월) | | | | | | | | | | | | 비고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지질공원 보호 및 안내시설 설치 | | | | | | | | | | | | | | |
|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 | | | | | | | | | | | | | |
| 지질명소 관리,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지역주민 및 업체와의 협력사업 | | | | | | | | | | | | | | |
| 지질공원 홍보 | | | | | | | | | | | | | | |
| 국제교류 및 마케팅전략 | | | | | | | | | | | | | | |
|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 | | | | | | | | | | |
|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등 | | | | | | | | | | | | | | |

5. 기 타

2. 지원대상 사업

- 지원대상 : 전 지방자치단체
- 대상사업
 - 생태계보전지역, 생태계 우수지역, 생태관광지역 등의 고유 생물종 등 자연자원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
- 대상지역
 - 생태계보전지역, 천연기념물지역, 자연공원(지질공원 제외) 등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된 법적행위규제지역
 -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고유 생물종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복원하여 그 가치를 알리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한 지역
 - 기타 생태체험·관찰 및 생태학습 등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우선순위
 -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 등 생태우수지역 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인위적 요인 등에 의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복구하기 위한 사업**
 - 생태습지, 수생태 시설, 생태숲 등 생물 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자연생태계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해 생태탐방이나 자연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입지타당성조사, 투융자 심사, 토지확보 등을 완료하여 **당해연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 사업추진체계



3. 재원분담 비율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Matching Fund 부담(국고보조 : 소요사업비의 50%)
 - ※ 토지매입비·옹지보상비와 이와 관련된 비용,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진입도로 건설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4. 기타사항

-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취합하여 입지타당성조사 완료 여부, 지자체간 또는 타 보조사업과의 중복 여부, 지방비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 환경부에 해당기간 내 일괄 신청
-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류검토를 통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자가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내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도록 작성자, 확인자 성명 및 전화, e-mail 등을 기록유지

5. 제출서식

-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 「2018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17.4. 기재부)」 기준이며, '19년 지침의 양식 변경 시 변경된 양식으로 작성

<붙임>

사업명 : ○○○○ (계속, 신규)
 -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2018 . . .

| | | | |
|------|--|--------|--|
| 시·도명 | | 시·군·구명 | |
|------|--|--------|--|

작성 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E-mail:)

확인 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E-mail:)

<붙임1>

2019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시·도명 : (생활기반계정)

(단위:백만원)

| 구분 | 소관 (중앙 관서) | 세부사업명 | 사군구 내역 | 우선 순위 (/) | 2018예산 (A) | 2019예산(안) | | | 증(△)감 | |
|----------------------|------------------------------------|-------------------|------------|-------------------|---------------|-----------|----------|-------|-------|---|
| | | | | | | 지자체 신청 | 부처 요구 | 최종(B) | (B-A) | % |
| | | | 합계 | | | | | | | |
| | | | 소계 | | | | | | | |
| 신청 한도 대상 사업 | 자율편성 사업 | | 계 | | | | | | | |
| | | (시·도 한도 사업) | 세부사업명A | ▪분청 ▪기초 | | | | | | |
| | 세부사업명B | | ... | | | | | | | |
| | 기초 생활권 기반구축 (사군구 한도사업) | | 계 | | | | | | | |
| | | 세부사업명A | ▪분청 ▪기초 | | | | | | | |
| | 세부사업명B | ... | | | | | | | | |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제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 2) 세부사업이 분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3) 우선순위는 자율편성사업, 기초생활권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기초생활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 4)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 5) 기초생활권지원사업(예 : 성장촉진지역)은 신청한도대상사업란(계속소요)과 부처편성
사업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 6)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단위:백만원)

| 구분 | 소관 (중앙 관서) | 세부사업명 | 사업시행 주체내역 | 우선 순위 (/) | 2018예산 (A) | 2019예산(안) | | | 증(△)감 | |
|----------------------|----------------------|--------------|--------------|-------------------|---------------|-----------|----------|-------|-------|---|
| | | | | | | 지자체 신청 | 부처 요구 | 최종(B) | (B-A) | % |
| | | | 합계 | | | | | | | |
| | | | 소계 | | | | | | | |
| 제주 자율 편성 사업 | 시도자율 편성사업 | | 계 | | | | | | | |
| | | 세부사업명A | 세부사업계 ▪분청 | | | | | | | |
| | | 세부사업명B | ... | | | | | | | |
| |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업 등 | | 계 | | | | | | | |
| | | 세부사업명A | 세부사업계 ▪분청 | | | | | | | |
| | | 세부사업명B | ... | | | | | | | |
| 부처편성 사업 | | 소계 | | | | | | | | |
| | 세부사업명A | 세부사업계 ▪분청 | | | | | | | | |
| | 세부사업명B | ... | | | | | | | | |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제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 4)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단위:백만원)

| 구분 | 소관 (중앙 관서) | 세부사업명 | 사업시행 주체내역 | 우선 순위 (/) | 2018예산 (A) | 2019예산(안) | | | 증(△)감 | |
|----------------|----------------------|--------|--------------|-------------------|---------------|-----------|----------|-------|-------|---|
| | | | | | | 지자체 신청 | 부처 요구 | 최종(B) | (B-A) | % |
| | | | 합계 | | | | | | | |
| | | | 소계 | | | | | | | |
| 세종 편성 사업 | 시도자율 편성사업 | | 계 | | | | | | | |
| | | 세부사업명A | 세부사업계 | | | | | | | |
| | | | ▪분청 | | | | | | | |
| | 세부사업명B | ... | | | | | | | | |
| |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업 등 | | 계 | | | | | | | |
| | | 세부사업명A | 세부사업계 | | | | | | | |
| ▪분청 | | | | | | | | | | |
| 세부사업명B | ... | | | | | | | | | |
| 부처편성 사업 | | | 소계 | | | | | | | |
| | 세부사업명A | 세부사업계 | | | | | | | | |
| | | ▪분청 | | | | | | | | |
| 세부사업명B | ... | | | | | | | | | |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제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 4)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붙임2>

2019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회계-계정 >

(백만원)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A) | 2019예산(안)요구 | | | 증(△)감 | |
|------------|--------|---------------|-------------|----------|-------|-------|---|
| | | | 지자체 신청 | 부처 요구 | 조정(B) | (B-A) | % |
| 계 | | | | | | | |
| ▪ △△사업(신규) | | | | | | | |
| ▪ ○○사업(계속) | | | | | | | |
| ▪ □□사업(계속) | | | | | | | |

- ※ 담당자 : 00군 000과 000 ☎ (000-000-000) ✉ (000000@000.000)
- ※ 지자체신청란은 시·도 신청금액, 부처요구란은 소관부처 요구금액, 조정란은 공란처리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사업내용

| 내역사업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 ¹⁾ | 사업규모 ²⁾ | 지원조건 ³⁾ | 시행주체 ⁴⁾ |
|--------------|--------|---------------------------|--------------------------|----------------------------|--------------------|
| ▪ △△△ 사업(계속) | '94~계속 | 25,352억원 ('18까지 △△억원) | 110천ha ('17 : △△천ha) |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 시·군 |
| ▪ ○○○ 사업(신규) | '74~계속 | 25,352억원 ('18까지 △△억원) | ·인공어초시설 적지 307천ha |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 시·군 |

- 1)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8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8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 2)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 3)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용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용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 4)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사업)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 (○○ 사업)

2. 2019년 예산신청 내용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 '18예산 | | '19신청 | | 산출근거 |
|--------------|-------|----|-------|----|--|
| | 물량 | 예산 | 물량 | 예산 | |
| <합 계> | | | | | |
| ▪ △△ 사업 (신규) | | | | | ·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
| ▪ ○○ 사업 (계속) | | | | | · (계속) △지구, △ha, △△백만원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백만원)

(백만원)

| 내역사업명 | 재원 구분 | 총사업비 | 2017까지 | 2018예산 | 연차별 투자계획 | | | | |
|------------|-----------------------|---------------------|---------------------|---------------------|-------------------|-------------------|------------------|------------------|------------------|
| | |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이후 |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 | | | | | | |
| ▪ △△사업(신규)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64 32 32 - | 20 10 10 - | 20 10 10 - | 10 5 5 - | 10 5 5 - | 4 2 2 - | - - - - | - - - - |
| ▪ ○○사업(계속)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 | | | | | | |

'19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 내역사업명 | 2018년 예산(안) | 부지확보 | 입지타당성조사 및 각종 영향평가 | 지방재정 투자심사 | 비고 |
|-------|-------------|------|-------------------|-----------|----|
| 계 | | | | | |
| ▪ | | | | | |

예산집행실적(국비기준)

(백만원)

| 내역사업명 | '17예산 | | | | '18예산 | | |
|-------|---------|--------|----------|-------------|---------|-----------|-----------|
| | 예산현액(A) | 집행액(B) | 차년도이월(C) | 집행률(%)(B/A) | 당초예산(D) | 예산현액(C+D) | 1/4분기 집행액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예산현액 : '17당초예산 + 전년도('16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8예산현액 : '18당초예산 + 전년도('17년) 이월금 + 이·전용액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 내역사업명 | 부진사유 | 애로사항 및 '16년 집행전망 |
|-------|------|------------------|
| 계 | | |
| ▪ |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적행율이 60%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 구분 | ~'14 | '15 | '16 | '17 | '18 | '19 |
|--------|------|-----|-----|-----|-----|-----|
| <합계> | | | | | | |
| ▪ △△사업 | | | | | | |
| ▪ ○○사업 | | | | | | |

※ 내역사업기준으로 작성하되 '18년은 요구금액으로 작성

<붙임3>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 내역사업명 | 2018년도 | | | | 2019년도 | | | | 증 감 | |
|-----------------|--------|------------|-----------|------------|--------|------------|-----------|------------|-------|-------|
| | 물량 | 계 (a+b) | 국고 (a) | 지방비 (b) | 물량 | 계 (c+d) | 국고 (c) | 지방비 (d) | (c-a) | (c/a) |
| <합 계> | | | | | | | | | | |
|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 100 | 60 | 30 | 30 | 150 | 90 | 45 | 45 | 15 | 50 |
| o 전라북도 | 10 | 6 | 3 | 3 | 7 | 4 | 2 | 2 | △1 | △33.3 |
| · 부안군(계속) | | | | | | | | | | |
| · 순창군(신규) | | | | | | | | | | |
| · 완주군(완료) | | | | | | | | | | |
| o 전라남도 | 10 | 6 | 3 | 3 | 7 | 4 | 2 | 2 | △1 | △33.3 |
| · 00군(계속) | | | | | | | | | | |
| · 00군(신규) | | | | | | | | | | |
| · 00군(완료) | | | | | | | | | | |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 내역사업명 | 재원 구분 | 총사업비 | 2017 까지 | 2018 예산 | 연차별 투자계획 | | | | |
|-----------|-----------------------|------|------------|------------|----------|------|------|------|------------|
| | |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이후 |
| < 합 계 >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 | | | | | | |
| ▪ 고창군(계속)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 | | | | | | |
| ▪ 순창군(계속)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 | | | | | | |
| ▪ △△군(신규)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 | | | | | | |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 내역사업명 | 2017예산 | | | | 2018예산 | | |
|--------------|-----------------|------------|------------------|----------------|-----------------|---------------|--------------|
| | 예산 현액 (A) | 집행액 (B) | 차년도 이월 (C) | 집행률(% (B/A) | 당초 예산 (D) | 예산현액 (C+D) | 1/4분기 집행액 |
| 계 | | | | | | | |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계 | | | | | | | |
| ▪ 고창군(계속) | | | | | | | |
| ▪ 순창군(계속) | | | | | | | |

<붙임4> 사업별 세부 설명자료 작성양식

00도 / 000군 (환경부, 지특 시도자율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계속

충남 △△ 사업

(억원)

| 구 분 | '18예산 (A) | '19예산(안) | | | 증감 (B-A) | % |
|--------|--------------|----------|-------|-----|-------------|---|
| | | 요구 | | 검토안 | | |
| | | 지자체 | 부처(B) | | | |
| ○△△ 사업 | | | | - | | |

* 충남도 000과 000 000-000-0000 / 청양군 000과 000 010-0000-0000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30억원(국비 120, 지방비 210) /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 기투자 40억원, 잔여사업비 290억원
- 사업위치 : 충남 00군 00리
- 사업규모 : 8,500㎡ 증축 / ○ 사업기간 : 2017~2020
- 시행주체 :
- 사업내용 :

사전절차 이행여부

| | 부지매입 | 투자심사 | 사전평가(입지타당성 등) |
|----|----------|------|---------------|
| 여부 | ○/×/해당없음 | | |

* 미이행시 사유 or 예정일:

사업집행률

(백만원)

| '16 | | | '17 | | | '18 | | |
|-----|-----|---|-----|-----|---|-----|-----|---|
| 현액 | 집행액 | | 현액 | 집행액 | | 현액 | 집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17년은 12월말 기준, '18년은 4월말 기준(신규사업은 작성 생략)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 | 계 | '18 까지 | '19 | '20 | '21 | '22 이후 |
|----|---|--------|-----|-----|-----|--------|
| 국비 | | | | | | |

검토의견(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환경부 기재사항)

참고: 기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사진, 설명자료 등(계속 사업 필요시 제시, 신규사업 필히 제시)

| | |
|------|--------------|
| 담당부서 | 자연공원과 |
| 담당자 | 성인숙 |
| 전화번호 | 044-201-7328 |
| FAX | 044-201-7310 |

17. 생태휴식공간 확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녹지, 자연지반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유휴 자투리 땅, 미조성·방치·노후 공원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자연생태공간을 조성한 후, 어린이들과 부모 등 지역주민들에게 놀이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
- 도시지역의 공원면적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0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
 - ※ 도시공원 결정면적 : '07년 1,179km²→'11년 1,008km²(14% 감소)→'16년말 942.2km² (20% 감소)
- 지자체에서는 토지매입 및 조성비 등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체 공원면적의 53.6%(504.9km²)가 미집행,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 용도에서 해제된 용지는 개발용지로 전환, 부족한 녹지공간 심화 우려
 -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433km², 그중 2020.7월 실효대상은 396.7km²
- 조성된 공원도 생태적 고려가 미흡한 이용 중심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명 : 생태휴식공간 조성(생태놀이터 조성)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사업규모 : 500m² ~ 5,000m² 내외(*1,500~3,000m² 정도가 적절)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제43조의2 제4항 (도시생태 복원사업, '18.5.29.시행)
 -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지자체 자본보조, 지특(경제발전계정))
- 지원대상 : 도시생활권의 유휴·방치된 자투리땅, 인공시설 위주의 놀이터·미조성공원, 리모델링이 필요한 어린이공원, 소공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2014년부터 92개소에 국고 12,369백만원 지원

| 연도 | 지원 대상 기관 | 국비 보조금 (백만원) | 보조비율 |
|------|------------------|--------------|------------------------|
| 2014 | ▪ 서울시 서초구 등 12개소 | 1,500 | 국 비 : 30% 지방비 : 70% |
| 2015 | ▪ 부산 해운대구 등 23개소 | 3,090 | 국 비 : 30% 지방비 : 70% |
| 2016 | ▪ 서울 동작구 등 20개소 | 2,780 | 국 비 : 30% 지방비 : 70% |
| 2017 | ▪ 부산 해운대구 등 19개소 | 2,660 | 국 비 : 30% 지방비 : 70% |
| 2018 | ▪ 서울 은평구 등 18개소 | 2,339 | 국 비 : 30% 지방비 : 70% |

- 향후 지원계획 : 사업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확대

3.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지원대상사업

- 놀이, 체험, 학습, 휴식 등 다양한 공간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하고,
- 자연생태를 느끼며 환경감수성 증진과 창의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놀이터 및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지원우선 순위

- 미조성공원 방치·훼손된 지역 또는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생태적 여건이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도시생태계 개선효과가 크고 생활권 근거리로서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높은 지역
-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확고하여 당해년도 추진이 가능한 지역 등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시행
- 사업자 : 설계 및 시공(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지원비율 : 30%
- 사업비 : 5억원 이하(국화 1.5억원, 지방비 3.5억원)

5.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2018. .

| | | | |
|------|--|-------|--|
| 시·도명 | | 관리지역명 | |
|------|--|-------|--|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목적 :
- 나. 소재지 :
- 나. 사업면적 :
- 다. 사업기간 :
- 라. 사업비(총사업비) : 00백만원 (국비00백만원, 지방비00백만원)

2. 사업대상지 현황

- 가. 사업대상지역 현황
 - 사업대상지 특성
 - 일반현황 및 토지소유자
 - 토지이용상태
 - 자연생태현황
 - 훼손현황
 - 입지여건 및 장점 * 도시내 주거지역 등 생활권 우선
 - 주변 자연자원, 생태환경, 생활환경, 인구 등
- 나. 관련계획과의 관계
 - 도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 다. 지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상의 [지목의 종류] 중 선택
- 라.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상의 [용도지역]을 선택 기재
 - 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 세분화 :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기재

3. 사업계획

- 가. 기본구상
 - 조성 기본방향
 - 공간계획
 - 보전, 복원, 이용공간 구분
 - 세부 용도별 계획
 - 소생태계 등 생물서식공간, 탐방·학습 등 이용시설, 유지·관리 시설 등 용도별로 구분
- 나. 기본계획(구상)도
- 다. 유지관리
 -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 운영 프로그램
- 라. 기대효과

4. 투자계획

- 가. 연차별 계획

(백만원)

| 구분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연차별 투자소요 | | | |
|------|---|------|----------|----|------|----|
| | | | '19년 | | '20년 | |
| 합계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세부내역 | ○ 생태놀이터 조성 - ○ 이용시설 - | | | | | |
| 재원별 | ○ 국고 (%) ○ 지방비 (%) ○ 기타(민자) (%) | | | |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변경가능

나. 당해연도 계획

(백만원)

| 세부내역 | 금 액 | 산출내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 계 | | | |
| <예시> ○ 설계비 ○ 공사비 - 지형 - 수목식재 - 생태계조성 - 시설물 - | | 단가, 물량 등 기재 | |

5. 사업추진일정

| 구 분 | 추진 일정 (월) | | | | | | | | | | | | 비고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설계 | | | | | | | | | | | | | |
| 공사착공 | | | | | | | | | | | | | |
| 자문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타자료

- 현황도(지형도, 위성사진 등)

<예시>

| ooo 놀이터 | | | |
|---------|-------------|--------|----------|
| 소재지 | oo시 oo구 oo동 | 면적 | 9,500㎡ |
| 용도지역 | 도시, 준주거, 녹지 | 지목 | 전, 답, 대지 |
| 소유자 | oo시 | 토지이용상태 | 불법경작 방치 |

- 이용실태, 훼손현황 사진 등
- 관련통계(공원, 미조성공원 현황 등)
※ 위성사진 및 현황사진 반드시 포함

| | |
|------|--------------|
| 담당부서 | 자연공원과 |
| 담당자 | 성인숙주무관 |
| 전화번호 | 044-201-7328 |
| FAX | 044-201-7310 |

18. 생태휴식공간 확대(자연마당 조성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나, 콘크리트화, 녹지공간 감소, 고령화 사회 진입 등에 따라 생활권에서의 건강함 생태휴식공간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가
- 도시내의 훼손되거나 유휴·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으로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서비스의 이용 확대
- ☞ ‘자연마당’은 다양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있는 공간으로서 집앞 마당과 같이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의미
-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사업의 실천과제로 “도시생태공간(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 도심과 그 주변의 불법경작지, 나대지 등 유휴·방치된 훼손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도시와의 생태축을 연결하며,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 지속 확대

<조성방향>

- ◆ 다양한 생물서식지 조성으로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
 - ① 중·대규모 → 생물다양성 및 서식 안정성 확보
 - ② 도시지역 → 도시생태 건전성 확보, 주민 체감·참여
 - ③ 생태축 등 자연환경과 연계 → 도시의 생태거점 역할

□ 사업개요

- 사업명 : 자연마당 조성사업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3년 사업으로 추진(1차년도 설계, 2~3차년도 공사)
 - 1단계(1차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
 - 2단계(2차년도) : 인허가, 지형 및 기반정비 등
 - 3단계(3차년도) : 습지 등 생물서식 공간, 자연학습장, 관찰로 설치 등
- 사업규모 : 5만㎡ 내외
- 사업비 : 3년간 총 30억원 이내(국비 15억원, 사업규모에 따라 변동)
 - 1차년도는 실시설계비 1억원(개소당 30백만원 지원)
 - ※ 2~3차년도 공사비 개소당 30억원 내외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제43조의2 제4항(도시생태 복원사업, '18.5.29.시행)
 -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지자체 자본보조, 지특(경제발전계정))
- 지원대상 : 도시지역내 유휴·훼손·방치된 지역
 - ※ 훼손된 지역으로 도시 생활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지역 우선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2016년부터 12개소 추진중, 5,550백만원 지원

| 연도 | 지원 대상 기관 | 국비 보조금 (백만원) | 보조비율 |
|------|-------------------------|--------------------|---------------------------------|
| 2016 | ▪ 충주, 고창 등 2개소 | 100 | 국비 : 50% 지방비 : 50% |
| 2017 | ▪ 부산 북구 등 8개소(신규 6개소) | 1,380 | 국비 : 30%, 50% 지방비 : 70%, 50% |
| 2018 | ▪ 서울 동작구 등 12개소(신규 4개소) | 4,070 | 국비 : 30%, 50% 지방비 : 70%, 50% |

○ 향후 지원계획 : 사업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확대
※ 사업지 특성, 대상면적 및 향후 '19년 확정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지역

○ 도시내 유휴·훼손·방치된 5만㎡ 내외의 지역
<대상지 요건 및 고려사항>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조성면적 | 5만㎡ 내외 | |
| 토지소유 | 대상지역 전체 국·공유지 | |
| 이용상태 | 도시내 유휴·훼손·방치된 지역 | |
| 고려사항 | - 주거지와 근접한 생활권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 - 훼손된 지역으로 정형화된 부지(선형 제외) - 주변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생물종의 유입 및 전파가능 - 수원확보가 용이한 지역 - 생물서식공간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효과성 - 지방비 투입, 조성후 유지관리 등 지자체 의지 등 | |

□ 지원대상사업

- 훼손된 지역의 지형, 식생 등을 복원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물서식지 등 조성
 - 조성된 생물서식지 보전 등 자연환경의 보전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주민이용, 휴식, 탐방, 학습을 위한 시설물
- ※ 세부지원내용 참고

| 구 분 | 세 부 지 원 내 용 |
|-----|---|
| 공사비 | 원지반 정리, 마운딩, 절·성토, 습지 등 지형복원과 관련된 공사 |
| | 교목·관목·지피초화 식재, 수목이식, 고사목·외래종 제거, 지주목 설치, 토양개량 등 식생복원과 관련된 공사 |
| | 돌무더기, 나무더마, 이동통로, 새집, 곤충호텔 등 생물서식 관련 시설 및 데크, 목교, 안내판, 설명판, 표찰, 생태놀이기구 등 학습·탐방·체험 관련 생태시설물 공사 |
| | 과고라, 의자, 앉음벽, 수도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휴게 및 편의시설과 관련된 공사 포장, 전기, 울타리 등 시민의 직접 이용과 관계 없는 기반시설 공사 |
| | 집수정, 배수관로정비 및 설치 등 우·배수와 관련된 공사 |
| | 현장사무실, 가설공사, 비산먼지 등 복원사업 시행을 위한 임시 공사 |
| 기타 | 지장물 철거, 운반, 폐기물처리비 |
| |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형측량 및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비용(영향평가 등), 모니터링비, 전문가 자문비 |

□ 지원우선 순위

- 인구가 많은 도시 생활권에 방치·훼손된 지역으로 생태적 여건이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생물서식지 조성 등으로 도시생태계 개선효과가 크고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 근거리로서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높은 지역
- 사업규모가 커서 생물의 안정적 서식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확고한 지역 등

<붙임>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승인
 - 사업추진과정 관리 및 감독(환경청)
- 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시행
- 사업자 : 설계 및 시공(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

사업명 : ○○ 자연마당 조성사업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지특)
- 지원비율 : 30%

2018. .

5.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 | | | |
|------|--|-------|--|
| 시·도명 | | 관리지역명 | |
|------|--|-------|--|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나. 사업범위 :

다. 사업기간 :

라. 사업비(총사업비) : 00백만원 (국비00백만원, 지방비00백만원)

○ 기투자액

* 신청지역에 기 투자된 금액을 의미(토지매입, 보상, 시설설치 등 구분)

2. 사업대상지 현황

가. 사업대상지역 현황

○ 소재지 :

○ 사업신청 면적 : m²(실제 조성할 면적을 기재)

- 소유자별 면적 : 국유지(), 공유지()

| 구분 | 국유지 | 공유지(시) | 사유지 | 합계 | 비고 |
|---------------------|-----|--------|-----|----|----|
| 면적(m ²) | | | | | |
| 구성비(%) | | | | | |

- 용도지역별 면적

| 구분 | 면적 | 세부내역 | | | |
|------|----|-------------------|-------------------|-------------------|------------------|
| 도시지역 | |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

- 지목별 현황

| 구분 | 계 | 전 | 답 | 임야 | 공원 | ○○ |
|---------------------|---|---|---|----|----|----|
| 면적(m ²) | | | | | | |
| 구성비(%) | | | | | | |

- 필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별첨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특성

- 일반현황

- 인구현황

| 구분 | 1km이내 | 2km | 3km | 비고 |
|-------|-------|-----|-----|----|
| 인구(명) | | | | |

* 거리별(반경 1, 2, 3km이내) 거주인구 기준(읍면동)

- 토지이용 연혁 및 현재 이용상태

- 자연생태현황

*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비옴지도 등에 의한 등급 현황

- 훼손현황

- 사업대상지 관리기관(기관명, 부서명)

○ 주변지역 현황

- 주변 자연자원, 생태환경, 생활환경, 인구 등

나. 관련계획과의 관계

○ 도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중장기 토지이용구상 및 방향

3. 사업계획

가. 기본구상

○ 조성 기본방향

○ 공간계획

- 핵심, 완충, 전이구역 등으로 공간구분

○ 세부 용도별 계획

- 소생태계 등 생물서식공간, 탐방·학습 등 이용시설, 유지·관리 시설 등 용도별로 구분

나. 기본계획(구상)도

다.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 운영관리 주체(부서명), 인력 및 예산운영계획
- 모니터링 계획
- 운영 프로그램

라. 기대효과

4. 투자계획

가. 년차별 계획

(백만원)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연차별 투자소요 | | | | | |
|------------------|--|------|----------|----|------|----|------|----|
| | | | '19년 | | '20년 | | '21년 | |
| 합 계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세 부 내 역 | ○ 설계 | | | | | | | |
| | ○ 공사비 - 지형복원 - 식생복원 - 생태시설 - 이용시설 - 우배수 - 기타 | | | | | | | |
| 재 원 별 | ○ 국고 (%) | | | | | | | |
| | ○ 지방비 (%) ○ 기타(민자) (%) | | | | | | | |

※ 세부내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66쪽)

나. 당해연도 계획

(백만원)

| 세부내역 | 금 액 | 산출내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 계 | | | |
| ○ 설계 | | 단가, 물량 등 기재 | |
| ○ 공사비 | | | |
| - 지형복원 | | | |
| - 식생복원 | | | |
| - 생태시설 | | | |
| - 이용시설 | | | |
| - 우배수 | | | |
| - 기타 | | | |
| ○ | | | |

※ 세부내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66쪽)

5.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자연마당 조성시 수반되는 인·허가 절차
 - 인·허가명, 인·허가기관, 예상소요기간, 소요비용 등
 - 사업추진시 문제점, 선행조건 등 고려사항
- 대상지 관련 법정계획 및 개발계획(사업) 등 수립 여부
 - 계획명, 계획기간, 년차별 투자계획 등
 - * 추진중인 계획(사업)도 포함
-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 일정 | | | | | | | | | | | | 비고 | |
|------|-------|---|---|---|------|---|---|---|------|---|---|---|----|--|
| |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 설계 | | | | | | | | | | | | | | |
| 인허가 | | | | | | | | | | | | | | |
| 공사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타 참고자료

- 현황도(위성사진 등에 사업구역 표기)
- 현황사진(현재 사업대상지, 훼손상태, 지장물 등)
- 도시계획도(녹지축,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도, 도시기본구상도 등)
- 대상지 주변 자연환경현황도(위성사진 등에 표기)
- 기타 사업대상지 여건,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관련통계(공원, 미조성공원 현황 등)

| | |
|------|--------------|
| 담당부서 | 자연공원과 |
| 담당자 | 성인숙주무관 |
| 전화번호 | 044-201-7328 |
| FAX | 044-201-7310 |

19.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저감 및 도시경관 향상, 에너지 효율극대화, 도시생태계 연결의 대안으로서 옥상과 같은 인공지반 녹지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 지상부와 달리 구조적 안정성, 방수 및 방근 등 제약요소와,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옥상 생태계 조성 및 지원은 저조
 - * 서울시의 경우 옥상면적 166km²(도시화지역의 약 46%) 중 옥상녹화 가능면적은 약 55km²정도로 추정
- 또한, 기 조성한 옥상녹화도 초본·관목류 위주의 식재, 휴게공간 등 단편화 되어 있어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생태적 기능이 다소 미흡한 실정
- 따라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의 공공건축물 옥상 소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 및 도시홍수예방, 도시열섬현상 저감 등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자연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1,000㎡ 내외(5개소 내외)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지자체 자본보조, 환특)
- 지원대상 : 도시지역내 공공 건축물 옥상 상부(평지붕)
 - 도시지역으로 주변환경 및 경관이 비교적 양호하나 생태적 징검다리로서의 연결성이 필요한 지역
 - 신청일 기준 국·공유지(사유지는 제외)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2015년부터 12개소 추진중, 3,600백만원 지원

| 연도 | 지원 대상 기관 | 국비 보조금 (백만원) | 보조비율 |
|------|----------------|--------------------|------------------------|
| 2015 | ▪ 서울 강동구 등 6개소 | 1,000 | 국 비 : 50% 지방비 : 50% |
| 2016 | ▪ 경기 안산시 등 5개소 | 1,000 | 국 비 : 50% 지방비 : 50% |
| 2017 | ▪ 부산 강서구 등 5개소 | 800 | 국 비 : 50% 지방비 : 50% |
| 2018 | ▪ 인천 남동구 등 5개소 | 800 | 국 비 : 50% 지방비 : 50% |

- 향후 지원계획 : 연도별 5개소 내외 지원하고, 사업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확대

3.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사업

- 건물 옥상부의 소생태계 조성을 통해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수공간 도입 또는 습지 조성 등 필수
- 생태학습장, 시민의 휴식·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지원하기 위한 시설 설치사업
-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거나 지원이 가능한 사업
 - 준공후 사후관리 및 소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
 - * 예산확보, 주기, 모니터링 수행자 등을 제시, 세부사항은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17.1)」 참조

□ 지원우선 순위

- 최근 조성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중량형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축물
 - ※ 중량형 옥상녹화 : 토심 20cm이상 녹화가 가능하며, 이용과 관리가 전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신축건물 등에 적용이 가능한 녹화시스템을 말함. 또한 식생높이와 종류를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고, 이용 및 공간적 다양성(생태공간 조성 등)을 고려한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음
- 생태축·녹지축 등 도시 생태네트워크의 연결성이 우수하고 시민의 이용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시행
- 사업자 : 설계 및 시공(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나. 위치(주소) :

다. 건물명 :

라. 사업면적 :

마. 사업기간 :

바. 사업비(총사업비) : 00백만원 (국비00백만원, 지방비00백만원)

* 총사업비 4억원(국고 2억원) 내외

2. 사업대상지 현황

가. 주변지역 현황 * 도시내 신축건물로서 공공건축물 등 우선

- 주변 자연자원과의 연결성
- 주변지역과의 경관성, 조망성

나. 사업대상지 특성

- 대상 건축물의 기본 현황
- 건축물 옥상부 현황

3. 사업계획

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 대상 건축물의 중량형 옥상녹화 가능 여부 제시
 - 옥상 소생태계 조성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현장점검을 위한 구조도면, 구조안전진단보고서, 구조계산서 등)
- 기타 옥상 소생태계 조성 대상지로서 적합성 제시

나. 기본구상

○ 조성 기본방향

- 이용지역, 완충지역, 보전지역으로 공간개념 수립
- 중량형 녹화에 적합한 토심확보
- 옥상 소생태계 조성에 적합한 시설물 및 식재수종 선정
-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공간구상
-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 세부계획

- 옥상공간에 적합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 주요 목표종 선정
- 탐방·학습·휴게공간 조성

○ 기본계획(구상)도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도
- 배수층, 방수·방근층, 토양층 단면도
- 식재 및 시설물 평면도

다.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 기관명, 부서명, 관리인력, 관리예산 등

○ 모니터링 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 예산확보, 주기, 모니터링 수행자

라. 기대효과

4. 투자계획

가. 년차별 계획

(백만원)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연차별 투자소요 | | | | 비고 |
|------------------|------------|------|----------|----|------|----|----|
| | | | '19년 | | '20년 |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합 계 | | | | | | | |
| 세 부 내 역 | o 구조검토 | | | | | | |
| | - | | | | | | |
| | o 슬래브상부시스템 | | | | | | |
| | - | | | | | | |
| | o 식재 및 시설물 | | | | | | |
| | - | | | | | | |
| o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재 원 별 | o 국고 | | | | | | |
| | (%) | | | | | | |
| | o 지방비 | | | | | | |
| | (%) | | | | | | |
| o 기타(민자) | | | | | | | |
| (%) | | | | | |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변경가능

** 사업은 '19년 사업종료 원칙

나. 당해연도 계획

(백만원)

| 세부내역 | 금 액 | 산출내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 계 | | | |
| <예시> | | | |
| o 구조검토 | | 단가, 물량 등 기재 | |
| o 공사비 | | | |
| - 슬래브 상부 시스템 | | | |
| - 수목식재 | | | |
| - 생물서식공간 | | | |
| - 시설물 | | | |
| o 유지관리비 | | | |

5. 사업추진일정

| 구 분 | 추진 일정 (월) | | | | | | | | | | | | 비고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설계 | | | | | | | | | | | | | | |
| 공사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타 제출 자료

- 사업개요(표)
- 건물현황(표)
- 현황도(위성사진 등)
- 건축물 현황사진 및 옥상부 전경 사진
- 건축물 구조도면(신축 건물은 제외-현장 점검시 필요한 경우 요청)
- 해당 도시의 생태축, 녹지축, 주변 녹지, 공원 등 생태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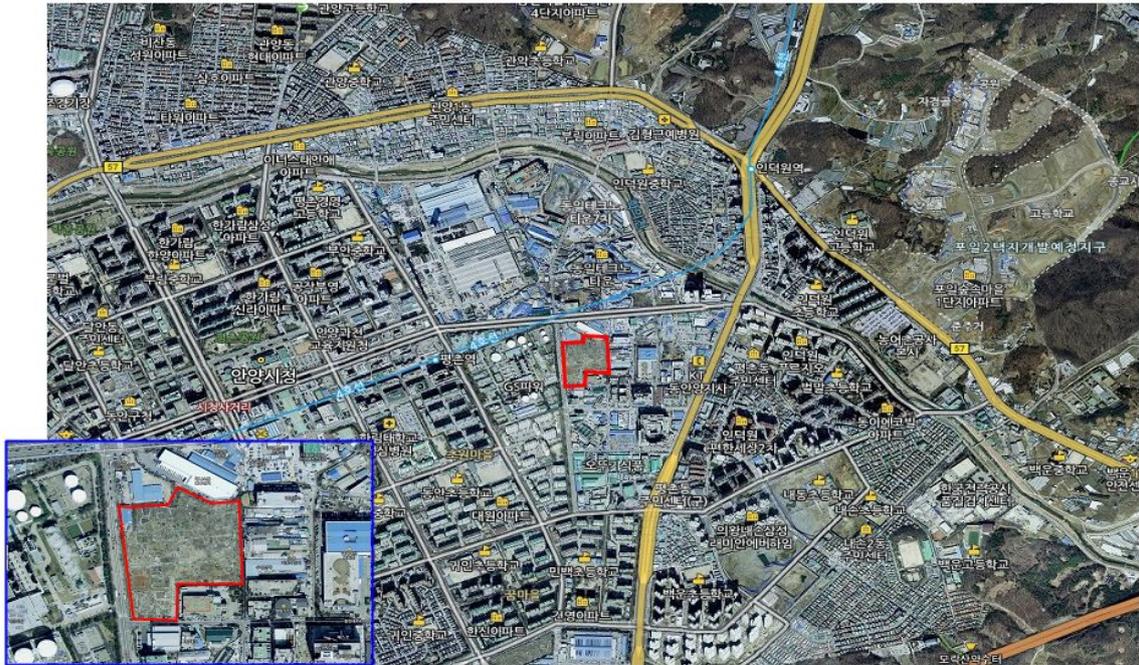
사업개요

| | | | | | |
|--------------|--|----------------|--------------------|-----|----------------|
| 건물명 | | 준공년도 | | 건축주 | |
| 주 소 | | | | | |
| 건물규모 | 연면적 : m ² , 옥상면적 : m ² , 층수(지상/지하) : | | | | |
| 사업신청면적 | | m ² | 옥상에 조성된 기존 녹지면적 | | m ² |
| 총사업비 | | | | | |
| 구조안전 진단실시 | 자비로 기 실시(), 지원대상지로 선정 시 자비로 실시 예정() 국비(지방비)로 실시하기를 희망() ※ 해당사항에 ○표 하여 주세요. | | | | |
| 사 업 참여목적 | | | | | |
| 기대사항 | | | | | |

건물현황

| | | | | | |
|----------------------|--|-----|----------------------|--|-----|
| 현재 건물 근무· 상주·이용인원 | | 명/일 | 옥상녹지 조성 후 기대 이용인원 | | 명/일 |
| 현재 이용계층 | | | 조성 후 이용계층 | | |
| 건 물 이용현황 | 층별 이용(입주)현황 | | | | |
| 건 물 변경사항 | - 건물 용도변경 여부 : ○ , X (변경내용 :) - 리모델링 및 증축 여부 : ○ , X (변경내용 :) | | | | |
| 현재 옥상 이용현황 | - 개방여부 및 개방시간 - 주요 이용자 계층 | | | | |
| 관련도서 보유여부 | - 보유 준공도서 :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 ○ , X (진단시기 : 년 월) | | | | |

대상지역 현황도 및 전경사진(예시)



건물(옥상) 전경 사진(양식)



| | |
|------|--------------|
| 담당부서 | 자연공원과 |
| 담당자 | 김보경 |
| 전화번호 | 044-201-7318 |
| FAX | 044-201-7310 |

20.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환경부 또는 시·도에서 지정한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 등) 및 개선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과 보호지역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보전·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고를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명 :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지원
- 사업구분 : 국고보조사업(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세부사업명
 - 습지보전관리(076-1832-302-330-03)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076-1832-305-330-03)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54조, 습지보전법 제8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 국고보조율 : 국가지정 보호지역(국비70%), 시·도 지정보호지역(국비50%)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제한없음
- 사업내용
 - 보호지역(습지 및 생태경관)에 대한 훼손지 복원
 - 보호지역에 대한 현명한 이용을 위한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습지보호지역 | 1,000 | 1,000 | 2,000 | 2,536 | 2,589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 - | - | 50 | 200 |

○ 향후 지원계획

- 습지보호지역(31개소) : 환경부 지정(24개소), 시·도지사 지정(7개소)
- 생태경관보전지역(33개소) : 환경부 지정(9개소), 시·도지사 지정(24개소)

3. 지원대상 및 지원 우선순위 자치단체

□ 지원대상사업

-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 지원우선 순위

- 보호지역의 생태계 훼손되어 복원이 시급한 지역
- 보호지역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장물 등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

- 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확고하여 추진이 가능한 지역
- 지방비(30% 또는 50%)를 확보할 수 있는 자치단체

<붙임>

**사업명 :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지원**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시행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비율 :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주체에 따라 차등지원
 - 환경부 지정 : 국고 70%, 지방비 30%
 - 시·도지사 지정 : 국고 50%, 지방비 50%

2018. .

5.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 | | | |
|------|--|-------|--|
| 시·도명 | | 보호지역명 | |
|------|--|-------|--|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목적 :
- 나. 사업범위 :
- 다. 사업기간 :
- 라. 사업비(총사업비) : 00백만원 (국비00백만원, 지방비00백만원)
 - 기투자액
 - ※ 1차년도 사업비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중심으로 편성

2. 사업대상지 현황

- 가. 사업대상지역 현황
 - 사업대상지 특성
 - 일반현황
 - 토지이용현황
 - 자연생태현황
 - 훼손현황
 - 주변지역 현황
 - 주변 자연자원, 생태환경, 생활환경, 인구 등
- 나. 관련계획과의 관계
 - 도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3. 사업계획

- 가. 기본구상
 - 조성 기본방향
 - 공간계획
 - 보전, 복원, 이용공간 구분

- 세부 용도별 계획
 - 지장물 철거, 생태복원, 보전·이용시설 설치현황 등 용도별로 구분

나. 기본계획(구상)도

- 다.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 모니터링 계획
 - 운영 프로그램

라. 기대효과

4. 투자계획

가. 년차별 계획

(백만원)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연차별 투자소요 | | | |
|------------------|--|------|----------|----|------|----|
| | | | '18년 | | '19년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합 계 | | | | | | |
| 세 부 내 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비 ○ 훼손지 복원 - ○ 이용시설 - | | | | | |
| 재 원 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 ○ 지방비 (%) ○ 기타(민자) (%) | | | |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변경가능

| | |
|------|--------------|
| 담당부서 | 대기관리과 |
| 담당자 | 장정호 |
| 전화번호 | 044-201-6909 |
| FAX | 044-201-6915 |

21. 대기개선 추진대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정책목표

-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

⇒ 대기질을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수도권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도권외 : 대기환경종합계획에 의함

○ 단위 사업의 목적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저녹스버너 보급
 -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저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생물성연소 저감 시범사업
 -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 지원 근거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 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57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21 | |
|-----------------------|---------------------|-----------------------|---------------------|----------------------|-----------------------|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조기폐차 | 167,473 (281,009대) | 64,594 (90,872대) | 93,400 (116,169대) | 402,000 (500,000대) |
| |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767,587 (481,112대) | 21,697 (9,973대) | 22,212 (14,993대) | 66,636 (44,979대) |
| | LPG엔진개조 | 386,967 (197,518대) | 113 (56대) | 870 (500대) | 2,610 (1,500대) |
|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4,890 (388대) | 2,777 (373대) | 22,500 (3,000대) | 67,500 (9,000대) |
| | 건설기계 DPF 부착 | 911 (195대) | 6,637 (1,352대) | 9,475 (1,895대) | 17,175 (3,435대) |
| | 건설기계 엔진교체 | 10,187 (1,304대) | 7,863 (1,116대) | 11,250 (1,500대) | 33,750 (4,500대) |
| | 노후차 운행제한(LEZ) | 379 (카메라 24개) | 806 (카메라 34개) | 5,684 (카메라 304개) | 3,665 (카메라 196개) |
| |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 8,061 | 1,198 | 1,209 | 7,513 |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 | 2,000 (800대) | 4,516 (1,800대) | 30,000 (12,000대) | |
|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 85,959 (13,940대) | 6,553 (1,517대) | 8,246 (947대) | 24,738 (2,841대) | |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18,027 (126대) | 15,697 (167대) | 16,440 (137대) | 81,360 (678대) | |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 | 894 (11,176대) | 1,000 (12,500대) | 8,600 (107,500대) | |
| 생물성연소 저감시범사업 | | | 신규 | 8,550 (1,500대) | |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① 지원 대상 : 전국
- ② 지원 우선순위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수도권대기법 시행령 별표1), (수도권외) 대기오염우심지역

4. 대상사업

| 사업구분 | 세부사업내역 | |
|-----------------------|--|--|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조기폐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신청시 폐차 보조금 지원 |
| |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부착비용 지원 |
| | LPG엔진개조 |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DPF, pDPF) 부착이 어려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LPG엔진개조비용 지원 |
|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대형버스·화물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 | 건설기계 DPF 부착 | 도로용 3종 노후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차량)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비용 지원 |
| | 건설기계 엔진교체 |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굴삭기·지게차 등)를 대상으로 구형엔진(tier-1)을 신형엔진(tier-3 이상)으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
| | 노후차 운행제한(LEZ) | 수도권대기법 제28조의2에 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추진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비용 지원 |
|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 사용이 종료된 장치의 회수관리 비용 및 보증기간(3년) 경과 장치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용 지원 | |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
|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 중소 사업장 NOx 저감시설인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청소차) 구입 비용 지원 | |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 대상 : 서울, 경기, 인천 내용 :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에 일정액 지원 | |
| 생물성연소 저감 시범사업 | 대상 : 서울, 경기, 인천 내용 : 고기구이 음식점 대상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 |

5. 재원분담비율

| 보조사업명 | | 재원분담비율('18년 기준) |
|-----------------------|--------------------|---|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조기폐차 | - 국고 50%, 지방비 50% |
| |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 정부보조(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
| | LPG엔진개조 | - 정부보조(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
|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 정부보조(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
| | 건설기계 DPF 부착 | - 정부보조(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
| | 건설기계 엔진교체 | - 정부보조(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
| | 노후차 운행제한(LEZ) | - 국고 50%, 지방비 50% |
|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 | - 국고 50%, 지방비 50% |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 - 국고 50%, 지방비 50% |
|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 | - 정부보조(용량별 정액)+자부담 |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 - 국고 50%, 지방비 50% |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 - 정부보조(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
| 생물성연소 저감 시범사업 | | - 정부보조(저감시설 설치_국고 50%, 지방비 50%) - 정부보조(사후관리_국고 20%, 지방비 20%)+자부담 60% |

※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조기폐차 : 1.608백만원/대(국비 0.804백만원, 지방비 0.804백만원)
-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2.963백만원/대(국비 1.4815백만원, 지방비 1.4815백만원)
- LPG엔진개조 : 3.479백만원/대(국비 1.7395백만원, 지방비 1.7395백만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15백만원/대(국비 7.5백만원, 지방비 7.5백만원)
- 건설기계 DPF 부착 : 10백만원/대(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 15백만원/대(국비 7.5백만원, 지방비 7.5백만원)
- 노후차 운행제한(LEZ) : 37.394백만원/대(국비 18.697백만원, 지방비 18.697백만원)

-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 경과장치 클리닝 비용 : 150천원/대(국비 75천원, 지방비 75천원)
- 반납운송비 : 6천원/대(국비 3천원, 지방비 3천원)
- 재사용장치 클리닝 비용 : 150천원/대(국비 75천원, 지방비 75천원)
- 참고보관 및 관리비 : 16천원/대(국비 8천원, 지방비 8천원)
- 탈거비용 : 19천원/대(국비 9.5천원, 지방비 9.5천원)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500백만원/대(국비 250백만원, 지방비 250백만원)
-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 용량별 정액(상세: 붙임1 참고)
-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장비 : 240백만원(국비 120백만원, 지방비 120백만원)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 16만원/대(국비 8만원, 지방비 8만원)
- 생물성연소저감 시범사업 : 10.6백만원(국비 5.3백만원, 지방비 5.3백만원)

6. 기타사항

- 저녹스버너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 <붙임1> 참고
- 생물성연소 저감시범사업 설명자료 : <붙임2> 참고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설명자료 : <붙임3> 참고

<참고> '19년 국고보조사업신청 접수기관>

| 보조사업 구분 | 환경부 | 관할환경청 |
|-----------------------|-----|-------|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 ○ |
|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 | ○ |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 ○ |
|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 | ○ |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 ○ |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 ○ |
| 생물성연소 저감시범사업 | | ○ |

7. 제출서식 : <붙임4>

<붙임1>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 지원 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 보조금의 지원 기준

- 시설 용량에 따라 국비를 정액 지원하되, 지방비는 국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용량별 보조금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 용량별 | 국비 | 지방비 | 용량별 | 국비 | 지방비 |
|---------------|-------|-------|------------|--------|-------|
| 0.3톤이상 0.5톤미만 | 2,860 | 1,144 | 4톤이상 5톤미만 | 6,790 | 2,716 |
| 0.5톤이상 0.7톤미만 | 3,930 | 1,572 | 5톤이상 6톤미만 | 7,500 | 3,000 |
| 0.7톤이상 1톤미만 | 4,430 | 1,772 | 6톤이상 7톤미만 | 7,930 | 3,172 |
| 1톤이상 2톤미만 | 4,790 | 1,916 | 7톤이상 8톤미만 | 8,500 | 3,400 |
| 2톤이상 3톤미만 | 5,140 | 2,056 | 8톤이상 10톤미만 | 9,430 | 3,772 |
| 3톤이상 4톤미만 | 6,360 | 2,544 | 10톤 이상 | 10,210 | 4,084 |

<붙임2>

생물성연소 저감시범사업

○ 추진근거

-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15~'24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지원 대상

- 수도권 소재 대형 고기구이 음식점

○ 지원 내용

-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및 사후관리 : **3,975백만원, 750개소**
 - 저감시설 설치 : 3,7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 750개소 × 10백만원(100m² 기준)/개소 × 50%
 - 사후관리(운영비 지원) : 225백만원*(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 750개소 × 1.5백만원/개소·년 × 20%
 - ※ 추가 설치·운영비는 음식점에서 자체 부담

- 재원분담비율 : 정부보조(저감시설 설치_국고 50%, 지방비 50%),
정부보조(사후관리_국고 20%, 지방비 20%)+자부담(60%)

○ 지원계획('22까지 한시적 지원)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 생물성연소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 3,975백만원 - 저감시설 설치 750개소×10백만원/개소×50% = 3,750백만원 - 유지관리 750개소×1.5백만원/개소년×0.2% = 225백만원 | ○ 생물성연소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 4,575백만원 - 저감시설 설치 750개소×10백만원/개소×50% = 3,750백만원 - 유지관리 750개소×1.5백만원/개소년×0.2% = 225백만원 - 모니터링 750개소×0.5백만원/개소년 = 375백만원 | ○ 생물성연소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 5,175백만원 - 저감시설 설치 750개소×10백만원/개소×50% = 3,750백만원 - 유지관리 750개소×1.5백만원/개소년×0.2% = 225백만원 - 모니터링 1,500개소×0.5백만원/개소년 = 750백만원 | ○ 생물성연소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 5,550백만원 - 저감시설 설치 750개소×10백만원/개소×50% = 3,750백만원 - 유지관리 750개소×1.5백만원/개소년×0.2% = 225백만원 - 모니터링 2,250개소×0.5백만원/개소년 = 1,125백만원 |

<붙임3>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사업 필요성

- 유종(油種)이 확인된 어린이 통학차량 중 약 97%(7.8만대)가 경유차량이므로, LPG차 전환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환경영향) 경유차에서는 실주행시 미세먼지 발생의 2차 생성기여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LPG차의 약 93배 더 배출됨
 - ※ 실외도로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g/km) : 경유차(0.560), LPG차(0.006)
 - (건강영향) 민감계층인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2배 정도까지 호흡량이 많아서 대기오염물질에 2배 가량 더 노출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LPG 신차 구입비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 용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9인승 이상의 자동차
- (지원대상) 차령(생산연도) 9년이 초과(2009년 이전 등록 차량)된 노후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신차를 구입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
- (지원물량) 전국 지자체 1,800대 지원
- (지원순위)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하되, 차령이 같은 경우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순위 결정
 -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국·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 제외)
- (지원금액)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정액 지원
 -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개소, kl, 금액 : 백만원)

| 구분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 연차별 투자소요 | | | | | | | |
|------|--|------|------|----------|----|-----|----|-----|----|-------|----|
| | | | | '18이전 | | '19 | | '20 | | '21이후 | |
| | | 현행 | 변경요구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합계 | | | | | | | | | | | |
| 세부내역 | | | | | | | | | | | |
| 재원별 | ○국고 (%) ○지방비 (%) - 시·도비 - 시·군비 ○차입 (%) ○민자유지 (%) ○기타 (%) | | | | | | | | | | |

- 주) 1.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2. A4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3. 세부내역은 보조사업단위별로 작성, 다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은 세세 사업단위까지 작성
 ⇒ 예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 △백만원(x), 노후차 조기폐차△대, △백만원(○)

3. 2019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계 | | | |
| | | | |

주) 1. 세부내역은 시·군·구 별로 작성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다음 양식에 의거 '19년도 세부추진계획 작성>

(단위:만원)

| 광역 | 기초 | 구분 | 산출내역(용량별) | | | | | | | | | | | | | | |
|-----|-----|---|-----------|-------------|-------------|-----------|---------|---------|---------|---------|---------|---------|---------|----------|-------|---|---|
| | | | 계 | 0.3톤~0.5톤미만 | 0.5톤~0.7톤미만 | 0.7톤~1톤미만 | 1톤~2톤미만 | 2톤~3톤미만 | 3톤~4톤미만 | 4톤~5톤미만 | 5톤~6톤미만 | 6톤~7톤미만 | 7톤~8톤미만 | 8톤~10톤미만 | 10톤이상 | | |
| ○○도 | 합계 | 물량 ^{주1)} 금액 (a+b+c) 국비(a) 지방비(b) 기타 ^{주2)} (c) | | 횡서식 | 가능 | | | | | | | | | | | | |
| ○○도 | △△시 | 물량 ^{주1)} 금액 (a+b+c) 국비(a) 지방비(b) 기타 ^{주2)} (c) | | | | | | | | | | | | | | | |
| ○○도 | △△군 | 물량 ^{주1)} 금액 (a+b+c) 국비(a) 지방비(b) 기타 ^{주2)}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물량 : 저녹스버너 설치 수요대수, 주2) 기타 : 자부담 * 시·군·구별로 작성

4. 사업추진일정 계획

주)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기재

| | |
|------|--------------|
| 담당부서 | 청정대기기획과 |
| 담당자 | 김진선 |
| 전화번호 | 044-201-6885 |
| FAX | 044-201-6895 |

5. 기타사항

22. 천연가스차 보급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도시지역 대기오염의 주 요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특히 오염 원인의 주요부분을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자동차가 차지
 - 자동차가 차지하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비중은 65% 이상이며, 이중 약 36%가 대형경유차에 기인
-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시내 운행빈도가 높고 매연 배출이 심한 경유 시내버스 및 청소차를 매연이 전혀 없고 청정한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여 대기환경 개선
- 지원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제2호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 계획

- 추진실적

(‘17년말 기준, 단위: 대)

| 구분 | 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버스 | 40,659 | 28,827 | 2,853 | 2,617 | 1,865 | 2,072 | 896 | 1,529 |
| 청소차 | 1,300 | 1,019 | 105 | 69 | 19 | 33 | 18 | 37 |

○ 향후 지원계획

- 연도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 구분 | 계 | '00~'17 | '18 | '19~'22 |
|--------|--------|---------|-------|---------|
| 버스(대) | 51,084 | 39,990 | 2,064 | 9,030 |
| 청소차(대) | 1,568 | 1,314 | 50 | 204 |

- 지원계획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참조>

-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보조
 - .. 대형 : 1대당 1,200만원 보조(국비 600만원, 지방비 600만원)
 - .. 중형 : 1대당 700만원 보조(국비 350만원, 지방비 350만원)
- CNG 하이브리드버스 구입비 보조
 - .. 대형 : 1대당 6,000만원 보조(국비 3,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
- 천연가스청소차 구입비 보조
 - .. 11톤급 : 1대당 4,200만원 보조(국비 2,100만원, 지방비 2,100만원)
 - .. 5톤급 : 1대당 2,700만원 보조(국비 1,350만원, 지방비 1,350만원)
- 연료비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 천연가스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거리 보조
 - .. 고정식 충전소 시설용량에 비해 충전 기준대수가 미달하는 경우 보조
-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비 1기당 7억원 국고 용자
 - ※ 지원조건 : 금리(분기별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선정기준

- 도시지역에서 운행되는 경유 시내버스 등과 청소차를 천연가스차로 교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 우선순위

- 2000 ~ 2018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대상 지자체
-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오염 우심 도시지역

- 천연가스공급시설(충전소) 설치 지역 등

4. 대상사업

○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 천연가스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통근·통학버스 등) 구입비 일부 보조 및 연료비 보조
 -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 참조

○ 천연가스공급시설(충전소) 설치비용 국고 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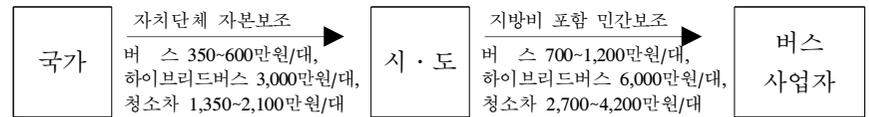
- 천연가스버스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저렴한 가스 공급 유도, 도시가스업체 및 버스업체의 손실발생을 사전방지

○ 지자체 및 청소대행업체(민간) 천연가스청소차 국고보조금 지원

5.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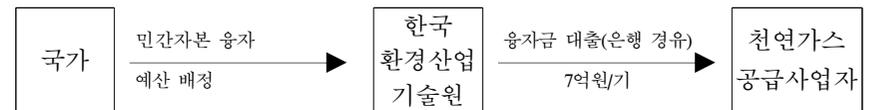
○ 사업추진체계

- 천연가스버스·청소차 보급 (자치단체 자본보조)
 -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는 확보된 지방비와 Matching 방식으로 동시에 사업자에게 지원



- 천연가스공급시설 (기타 민간자본 용자)

- 지자체는 공급시설 설치장소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은행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대출



1. 사업개요

가. 개요

나. 현황(대기질 현황, 자동차 운행현황, 시내버스·청소차 운행현황 등)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 비율(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 지방비는 시·도, 시·군 부담비율 제시

2. 연차별 추진계획

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 구분 | 계 | 2018년까지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이후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천연 가스 | 계 | | | | | | | | | | |
| | 국비 | | | | | | | | | | |
| 버스 구입비 | 지방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CNG 하이브 리더버스 구입비 | 계 | | | | | | | | | | |
| | 국비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청소차 구입비 | 계 | | | | | | | | | | |
| | 국비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연료 보조비 | 계 | | | | | | | | | | |
| | 국비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나.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2018년까지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이후 | |
|-------------|---|---------|-----|-------|-----|-------|-----|-------|-----|---------|-----|
| |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공 중 별 | 설계비 | | | | | | | | | | |
| | 재료비 설치비 | | | | | | | | | | |
| 재 원 별 | 계 | | | | | | | | | | |
| | 환 특 용 자 지 방 비 기 타 | | | | | | | | | | |

3. 2019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 산출내역 | 재원부담비율(%) |
|------------------|-----|----------|------|---------------------------|
| 계 | | | | |
| - 천연가스 버스 구입 | | | |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
| - CNG 하이브리드버스 구입 | | | |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
| -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 | | |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
| - 연료비 보조 | | | |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
| - 천연가스공급 시설 | | | | 환특용자 기타 |

4. 사업추진일정 계획

가. 천연가스버스 보급

- 보급대상 버스업체 선정
- 버스업체별 보급물량 확정
- 버스구매계약
- 버스운행 등

나.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 보급대상 기관·업체 선정
- 각 기관별 보급물량 확정
- 청소차 구매계약
- 청소차운행 등

다.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

- 공급시설 사업자 선정
- 공급시설 설치 부지 선정
- 공급시설 설치계약 체결
- 공급시설 설치 공사, 인허가
- 공급시설 가동 등

5. 기타사항

- 시내버스 운행현황 (업체별 버스보유 현황, 업체별·연도별 대·폐차현황 등)
- 차고지 보유현황(업체별 보유현황, 여유면적,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여부, 인근 도시 가스 배관망 설치 현황 등)
- 공영차고지 현황(운영중·설치중·계획중인 차고지별 위치, 면적, 보유차량, 공급 시설 설치여부 등)
- 청소차운행현황(기관별 청소차 보유현황, 연도별 대·폐차현황 등)

| | |
|------|--------------|
| 담당부서 | 푸른하늘기획과 |
| 담당자 | 송화령 |
| 전화번호 | 044-201-6876 |
| FAX | 044-201-6873 |

2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 대기오염실태 파악 및 지역실정에 맞는 대기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측정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 고시 제2016-270호)
- 사업내용
 -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도시대기·도로변대기·대기중금속 측정망) 신설·교체비용(50%) 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 (도시대기측정망) 2017년까지 328개소 구축
 - (도로변대기측정망) 2017년까지 37개소 구축
 - (대기중금속측정망) 2017년까지 55개소 구축

- 향후 지원계획
 - 도시대기·도로변대기·대기중금속 측정망 신설
 - PM_{2.5} 자동 측정기기 확충
 - PM_{2.5} 정도관리(수동) 장비 구매
 - 도시대기·도로변대기·대기중금속 측정망 장비로 내용연수 경과 장비의 교체 비용

3.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도시대기·도로변대기·대기중금속 측정망을 신설·교체하고자 하는 지자체
- 지원우선순위
 - 측정망의 장비가 노후화되었거나 가동상태가 불량한 지점
 - <도시대기 측정망>
 -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점
 - 인구 10만 이상인 지역 중 도시대기측정망이 미설치된 지역
 - 미세먼지 다량 배출지역 중 측정소가 부재한 지역
 - <도로변대기 측정망>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일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지역(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
 - <대기 중금속 측정망>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및 주요 산업단지 등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반환, 실적보고 등의 업무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로 위임됨('09.2)

1. 사업개요

가. 개요

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단위 : 개소)

| 시·군 | 계 | 도시대기 | 도로변대기 | 대기중금속 | 전광판 |
|-----|---|------|-------|-------|-----|
| 계 | | | | | |
| | | | | | |

다. 대기오염측정망 확충계획(단위 : 개소)

| 구분 | 계 | 2017까지 | 확충계획 | | |
|--------|---|--------|------|-------|-------|
| | | | 소계 | 2018년 | 2019년 |
| 계 | | | | | |
| ○도시대기 | | | | | |
| ○도로변대기 | | | | | |
| ○대기중금속 | | | | | |

라. 대기오염측정망 교체계획(단위 : 개소)

| 구분 | 계 | 2017까지 | 교체계획 | | |
|--------|---|--------|------|-------|-------|
| | | | 소계 | 2018년 | 2019년 |
| 계 | | | | | |
| ○도시대기 | | | | | |
| ○도로변대기 | | | | | |
| ○대기중금속 | | | | | |

마. 문제점

바. 사업의 필요성(설치대상 지역별로 설치 필요성 설명)

-

사.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아. 재원부담 비율(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2019년도 세부추진계획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 개소수 | 소요금액 | 산출내역 | 국고지원비율 |
|----|-----|------|------|--------|
| 계 | | | | |
| 확충 | | | | |
| 교체 | | | | |

나. 신규장비 확충

(단위 : 천원)

| 구분 | 개소수 | 소요금액 | 산출내역 | 국고지원비율 |
|----------------------|-----|------|------|--------|
| 계 | | | | |
| ○도시대기 | | | | |
| PM _{2.5} 자동 | | | | |
| PM _{2.5} 수동 | | | | |
| ○도로변대기 | | | | |
| PM _{2.5} 자동 | | | | |
| PM _{2.5} 수동 | | | | |
| ○대기중금속 | | | | |

※ 도시대기·도로변대기 측정망의 PM_{2.5} 측정장비(자동)와 정도관리장비(수동)은 각 측정망 분류 아래 별도 작성

다. 노후장비 교체

(단위 : 천원)

| 구분 | 개소수 | 소요금액 | 산출내역 | 국고지원비율 |
|----------------------|-----|------|------|--------|
| 계 | | | | |
| ○ 도시대기 | | | | |
| PM _{2.5} 자동 | | | | |
| PM _{2.5} 수동 | | | | |
| ○ 도로변대기 | | | | |
| PM _{2.5} 자동 | | | | |
| PM _{2.5} 수동 | | | | |
| ○ 대기중금속 | | | | |

※ 도시대기·도로변대기 측정망의 PM_{2.5} 측정장비(자동)와 정도관리장비(수동)은 각 측정망 분류 아래 별도 작성

4. 사업추진일정

5. 기타(제안사항)

※ 대기측정망별 설치현황 연도순으로 작성·첨부하여 주십시오.

<붙임 2> 지방환경관서 신청양식

지방환경관서명

(단위 : 백만원)

| 지역구분 | '18예산 | '19 예산요구 | | | '19 예산조정 | | | 증감 (B-A) | 환경청 검토의견 (반영, 미반영, 조정사유) | 우선 순위 |
|-------|-------|----------|-----------|-----|----------|-----------|-----|-------------|-----------------------------|----------|
| | | 계 | 국고 (A) | 지방비 | 계 | 국고 (B) | 지방비 | | | |
| 시·도 | | | | | | | | | | |
|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선 순위대로 아래 양식의 엑셀 파일 첨부

(단위 : 천원)

| 시·도 | 시·군·구 | 망 구분 | 교체/신설 구분 | 지원단가 | 개(소)수 | 지원 총액 | 순위 반영 시 감안 사항 |
|-----|-------|------------------------------|-------------|--------|-------|----------|------------------------|
| | | 계 | | | | | |
| | | ○ 도시대기 | | 75,000 | | | |
| | | ○ 도시대기 PM _{2.5} 자동 | | 15,000 | | | |
| | | ○ 도시대기 PM _{2.5} 수동 | | 7,500 | | | |
| | | ○ 도로변대기 | | 75,000 | | | |
| | | ○ 도로변대기 PM _{2.5} 자동 | | 15,000 | | | |
| | | ○ 도로변대기 PM _{2.5} 수동 | | 7,500 | | | |
| | | ○ 대기중금속 | | 20,000 | | | |

| | |
|------|--------------|
| 담당부서 | 청정대기기획과 |
| 담당자 | 장희주 |
| 전화번호 | 044-201-6888 |
| FAX | 044-201-6895 |

24.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및 CO₂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 친환경차 기술개발 촉진 등 환경·산업적 편익 창출
- 지원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 계획

- 추진실적

(단위 : 대, 기)

| 구분 | 합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전기자동차 | 25,593 | 338 | 753 | 780 | 1,075 | 2,907 | 5,914 | 13,826 |
| 공공급속 충전인프라 | 927 | 33 | 85 | 59 | 60 | 100 | 150 | 440 |
| 전기이륜차 | 1,167 | - | 23 | 57 | 89 | 92 | 125 | 781 |

- 향후 지원계획(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7.9)

| 구분 | '19 | '20 | '21 | '22 |
|-----------|-------|-------|-------|--------|
| 전기자동차(천대) | 42 | 60 | 82 | 112 |
| 충전인프라(기) | 1,000 | 1,000 | 1,000 | 1,000 |
| 전기이륜차(대) | 5,000 | 5,000 | 5,000 | 15,000 |

※ '18년 전기차 보급계획 20,150대, 전기이륜차 5,000대

- 세제지원 : 개별소비세 등 최대 590만원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지자체, 법인·단체, 기업체 및 일반국민 등
 - 보조사업 수행기관
 - 전국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의 장
- ※ '18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4. 대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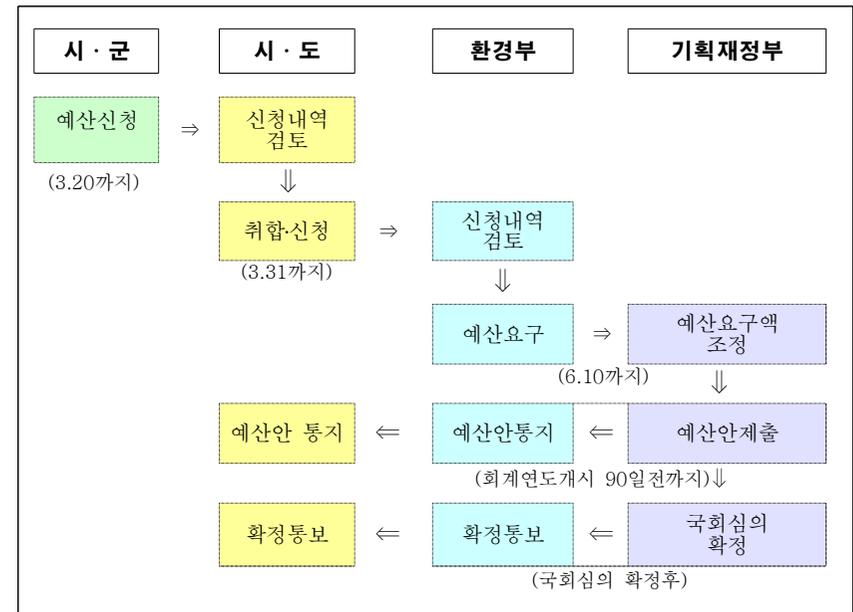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 (전기자동차)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차이, 유지비 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 (충전인프라) 보조금 지원단가는 공용/비공용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전기이륜차)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차이, 차종별 가격등을 고려하여 차등으로 구매보조금 지원
- ※ '18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5. 재원분담비율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차종별 차등 보조)('18년 기준)
 - 승용차 : 1대당 국비 최대 1,200만원, 초소형 450만원 지원
 - 버스 : 1대당 국비 6천만원(중형)~1억원(대형) 보조
 - 화물 : 1대당 국비 1,100만원(0.5톤)~2,000만원(1톤) 보조
- 충전인프라 설치 국고보조금('18년 기준)
 - 비공용 최대 150만원, 공용 최대 400만원 지원 등
 - ※ 보조금은 '18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개선 계획에 따른 차등지원금액으로 '19년 전기차 보조금은 향후 전기차 출시현황, 보급계획 등에 따라 변경 예정
- 전기이륜차('18년 기준)
 - 이륜차 1대당 230만원, 삼륜차 1대당 35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6. 기타사항

- 전기자동차(고속, 초소형, 버스) 보급계획은 기존 공공부문 차량의 자동차 운행 현황(자동차 보유 현황, 대·폐차 계획 등), 운행노선, 기대효과 등을 관내 기관별로 상세히 파악하여 수립·제시
- 전기자동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연계, 설치 지점, 전기공급 방안(모자거래, 신규설치 구분), 전력공급원과 충전기 설치지점과의 이격거리, 기대효과 등을 전기자동차 구매 기관별로 상세히 파악하여 수립·제시
- 신청 기한 및 업무처리 흐름도



7. 제출 서식 : <붙임1>

| 구분 | | 계 | | 2018년까지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이후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기타 | | | | | | | | | | |
| 전기 이륜차 | 계 | | | | | | | | | | |
| | 국비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담당부서 | 청정대기기획과 |
| 담당자 | 김진선 |
| 전화번호 | 044-201-6885 |
| FAX | 044-201-6895 |

25.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계속)

나. 충전인프라 설치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 계 | | 2018년까지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이후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완속 충전기 | 계 | | | | | | | | | | |
| | 국비 | | | | | | | | | | |

3. 사업추진일정 계획

가. 전기차 보급

- 보급대상 기관·업체 선정
- 각 기관별 보급물량 확정
- 전기차 구매계약
- 전기차 운행 등

나. 충전인프라 설치

- 충전인프라 사업자 선정
- 충전인프라 설치 부지 선정
- 충전인프라 설치계약 체결
- 충전인프라 설치 공사, 인허가
- 충전인프라 가동 등

4. 기타사항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 친환경차로의 세계자동차 시장개편을 선점하고 양산 보급 시점을 앞당기는데 기여 및 도심 대기질 개선

○ 지원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 | 계 |
|-----------|------|------|------|------|-----|-----|
| 수소차 보급 | 5 | 7 | 41 | 73 | 51 | 177 |
| 수소 충전소 보급 | 1 | 1 | - | 4 | 8 | 14 |

○ 향후 지원계획

- 「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15.12) 및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 등에 따라 지속 지원

1. 사업개요

가. 개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황(대기질 현황, 자동차 운행현황 등)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개소, kℓ, 금액 : 백만원)

| 구분 | 계 | 2018년까지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이후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수소차 보조금 지원 | 계 | | | | | | | | | | |
| | 국비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수소 버스 시범 보급 | 계 | | | | | | | | | | |
| | 국비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수소 충전소 | 계 | | | | | | | | | | |
| | 국비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3. 2019년도 세부추진계획

| 세부내역 |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 산출내역 | 재원부담비율(%) |
|-----------|-----|----------|------|---------------------------|
| 합 계 | | | | |
| 수소차 | | | |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
| 수소버스 | | | |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
| 수소 충전소 | | | | 국비 지방비 사업자 부담 기타 |

4. 사업추진일정 계획

주)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기재

5. 기타사항

| | |
|------|--------------|
| 담당부서 | 신기후체제대응팀 |
| 담당자 | 김철기 |
| 전화번호 | 044-201-6692 |
| FAX | 044-201-6691 |

26.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계속)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 사업목적

-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피해 저감을 위해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등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및 저탄소 생활 실천 범국민 운동 전개, 기후변화 적응 추진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2. 사업추진 방향

-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15.6.30)됨에 따라 산업계는 물론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 부문의 감축 노력의 극대화
- 비산업 부문의 관리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 및 국민의 기후변화대응 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 가속화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사업 병행 추진

3. 대상사업 및 우선순위(2018년 예산편성 기준)

□ 지원대상 사업

| 사업구분 | 세부 사업내역 |
|------------------|---|
| 지자체 기후변화적응 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별도 통보 예정 |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교육센터) 운영 ● 저탄소생활실천 프로그램 및 홍보·캠페인 등 |

※ 타 부처 등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중복투자 방지)

□ 우선순위

| 사업구분 | 지원 우선순위 |
|------------------|---|
| 지자체 기후변화적응 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별도 통보 예정 |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등 ●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저탄소생활 실천프로그램 발굴 추진 등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추진에 적극적인 지자체 |

4. 지원 범위 및 기준

□ 지자체 기후변화적응 지원 사업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별도 통보 예정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 지역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 광역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1명)
 - 광역 및 지역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비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컨설팅트 양성 교육과정 운영 경비(강사료, 교육콘텐츠 개발비, 교육자료 제작 등 재료비)
 - 컨설팅 활동비(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트 협의체 운영, 경연대회 참여, 워크숍 개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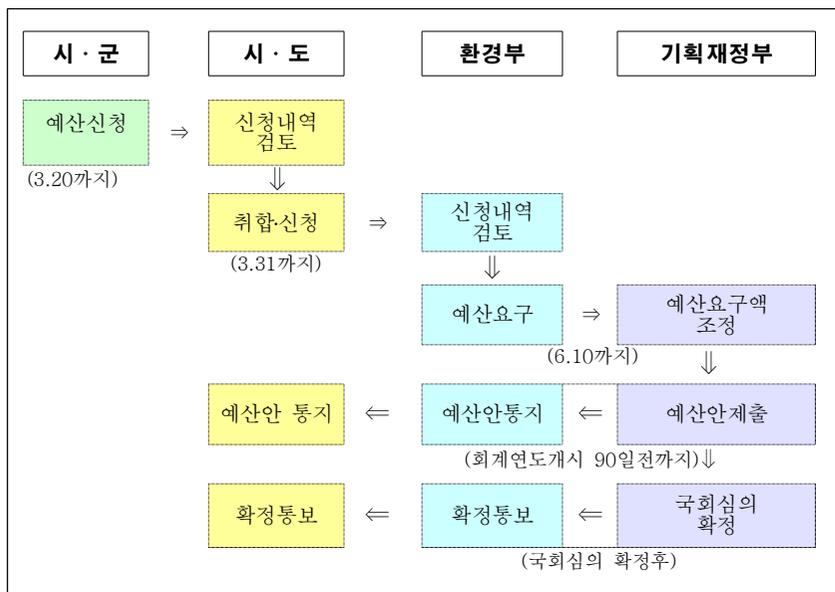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교육센터) 운영
 - 교육콘텐츠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기후학교 등)
 - 광역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1명)
 - 광역 및 지역 교육센터 운영비
- 저탄소생활 실천프로그램 발굴·보급 및 홍보·캠페인 등
 - 저탄소생활 실천프로그램 발굴·보급(그린터치 등)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 전개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

5. 국고 보조율

총 사업비의 50% 국고보조(정률보조)

-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6. 예산안 편성체계



[서식 1] 예산 신청서

사업명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세부사업명)

2018. . .

| | | | |
|------|--|--------|--|
| 시·도명 | | 시·군·구명 | |
|------|--|--------|--|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1. 사업개요

가. 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위치(시설물인 경우 위치도 별첨) :

나. 현황

-
-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그간 추진사항('17.12월 말 기준)

가. 추진실적

나. 예산집행 및 사업비 내역 (계속사업인 경우)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 당초예산 (a) | 전년이월 (b) | 이.전용 (c) | 예산현액 (a+b+c) | 집행 | 차년 이월 | 불용 | 이불용 사유 |
|------|-------------|-------------|-------------|-----------------|----|----------|----|-----------|
| 계 | | | | | | | | |
| '16 | | | | | | | | |
| ~'15 | | | | | | | | |

사업추진 현황

|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 | | | 지방비 | 집행액 | 추진상황(%) | 지연사유 |
|------------|------|------|------|-----|-----|-------------|------|
| 당초예산 | 전년이월 | 이.전용 | 예산현액 | | | | |
| | | | | | | | |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식, 개소, 백만원)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 연 차 별 투 자 소 요 | | | | |
|------------------|----------|------|-----|---------------|------|------|------|--------|
| | | 물량 | 사업비 | '16년까지 | '17년 | '18년 | '19년 | '20년이후 |
| 합 계 | | | | | | | | |
| 세 부 내 역 | | | | | | | | |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 연 차 별 투 자 소 요 | | | | |
|--------|--------------|------|-----|---------------|------|------|------|--------|
| | | 물량 | 사업비 | '16년까지 | '17년 | '18년 | '19년 | '20년이후 |
| 재 원 | ○국 고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시·도비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 ○기 타 (%) | | | | | | | |

- 주) 1. 시설물 설치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내역(타당성조사, 부지선정 및 사전행정절차, 기본설계·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 사업비 및 추진일정)을 별도로 첨부해야 함
2.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변경사유,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현행 대비 변경 세부내역 등을 별도 첨부

4. 2019년도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금 액 | 산 출 내 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 계 | | | |
| | | | |

주)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작성

5. 사업추진일정

※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기재

6. 기타사항

| | |
|------|--------------|
| 담당부서 | 환경경제통계과 |
| 담당자 | 곽종선 |
| 전화번호 | 044-201-6673 |
| FAX | 044-201-6666 |

시·도명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18예산 (국고) | '19예산 요구 | | | | 비고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기타 | |
| 소관합계 | | | | | | |
| 총계 | | | | | | |
| ○ (시군 합계) | | | | | | |
| - 단위사업명 | | | | | | |
| - | | | | | | |
| ○ (시군 합계) | | | | | | |
| - 단위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예산 신청 현황을 취합하여 작성, 비교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27.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신규)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사업목적

-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저탄소 생활 실천 지원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2. 사업추진 방향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하는 것으로 결정(15.6.30)됨에 따라 산업계는 물론 가정, 상업 등 비산업 부문의 감축 노력의 극대화

-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및 지원
-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생활 지원하는 제도 추진(탄소포인트제 등)

3. 대상사업 및 우선순위(2018년 예산편성 기준)

지원대상 사업

| 사업구분 | 세부 사업내역 |
|-----------|---------------------|
| 탄소포인트제 운영 | •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

※ 타 부처 등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중복투자 방지)

□ 우선순위

| 사업구분 | 지원 우선순위 |
|-----------|------------------------------|
| 탄소포인트제 운영 |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범위 내에서 지급 |

4. 지원 범위 및 기준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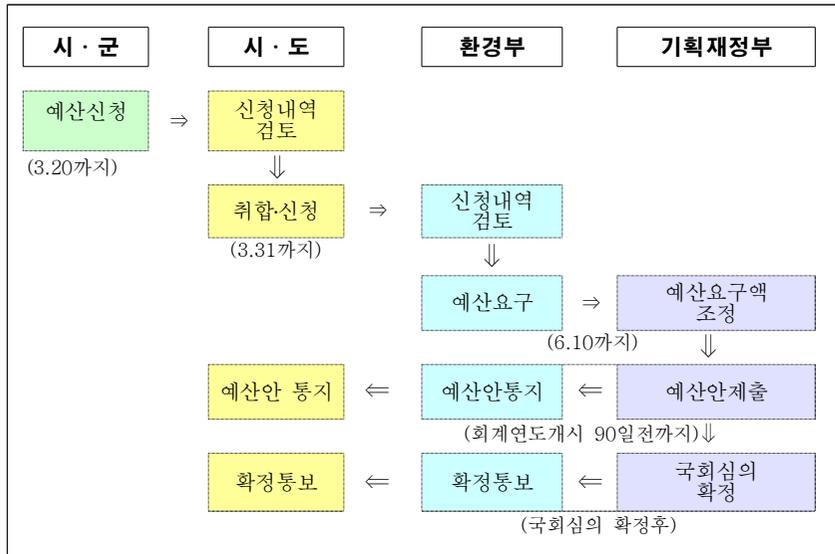
- 광역시·도별 가입자 수, 참여율 및 감축성과 등을 고려

5. 국고 보조율

□ 총 사업비의 50% 국고보조(정률보조)

-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 50% 보조가 원칙이며, 「탄소포인트 운영에 관한 규정」 범위 내에서 보조
- 광역시·도별 참여율, 인센티브 지급액

6. 예산안 편성체계



[서식 1] 예산 신청서

**사업명 :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
기반 구축 지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2018. . .

| | | | |
|------|--|--------|--|
| 시·도명 | | 시·군·구명 | |
|------|--|--------|--|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1. 사업개요

가. 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위치(시설물인 경우 위치도 별첨) :

나. 현황

-
-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그간 추진사항('17.12월 말 기준)

가. 추진실적

나. 예산집행 및 사업비 내역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 당초예산 (a) | 전년이월 (b) | 이·전용 (c) | 예산현액 (a+b+c) | 집행 | 차년 이월 | 불용 | 이불용 사유 |
|------|-------------|-------------|-------------|-----------------|----|----------|----|-----------|
| 계 | | | | | | | | |
| '17 | | | | | | | | |
| ~'16 | | | | | | | | |

사업추진 현황

|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 | | | 지방비 | 집행액 | 추진상황 (%) | 지연사유 |
|------------|------|------|------|-----|-----|-------------|------|
| 당초예산 | 전년이월 | 이·전용 | 예산현액 | | | | |
| | | | | | | | |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식, 개소, 백만원)

| 구 분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 연 차 별 투 자 소 요 | | | | |
|------------------|----------|------|-----|---------------|------|------|------|--------|
| | | 물량 | 사업비 | '16년까지 | '17년 | '18년 | '19년 | '20년이후 |
| 합 계 | | | | | | | | |
| 세 부 내 역 | | | | | | | | |

| 구분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 연차별투자소요 | | | | |
|----|---|------|-----|---------|------|------|------|--------|
| | | 물량 | 사업비 | '16년까지 | '17년 | '18년 | '19년 | '20년이후 |
| 재원 | ○국고 (%) ○지방비 (%) - 시·도비 - 시·군비 ○기타 (%) | | | | | | | |

- 주) 1. 시설물 설치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내역(타당성조사, 부지선정 및 사전행정 절차, 기본설계·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종별 사업비 및 추진일정)을 별도로 첨부해야 함
2.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변경사유,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현행 대비 변경 세부내역 등을 별도 첨부

4. 2018년도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국고지원비율 |
|------|----|------|--------|
| 합계 | | | |
| | | | |

주)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작성

5. 사업추진일정

※ 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기재

6. 기타사항

| | |
|------|--------------|
| 담당부서 | 수생태보전과 |
| 담당자 | 윤혜영 |
| 전화번호 | 044-201-7043 |
| FAX | 044-201-7054 |

시·도명

28. 생태하천 복원사업(계속, 지특)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17예산 (국고) | '18예산 요구 | | | | 비고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기타 | |
| 소관합계 | | | | | | |
| 총계 | | | | | | |
| ○ (시군 합계) | | | | | | |
| - 단위사업명 | | | | | | |
| - | | | | | | |
| ○ (시군 합계) | | | | | | |
| - 단위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예산 신청 현황을 취합하여 작성, 비교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오염하천, 생태계 훼손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생태하천으로 복원
- 지원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27조의2, 제69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55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 4대강 수계법(한강법 제13조, 낙동강법 제26조, 금강법 제24조, 영산강법 제24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7~계속
 - 총사업비 : '17년까지 총 투자액(국비) 2.7조원
 - 사업규모 : '02~'17년까지 1,471km 복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50%
 - 시행주체 : 자치단체

2. 선정기준 및 작성양식 등

-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17.12.26)」(기통보)을 참고

| | |
|------|--------------|
| 담당부서 | 유역총량과 |
| 담당자 | 이영자사무관 |
| 전화번호 | 044-201-7025 |
| FAX | 044-201-7037 |

2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개선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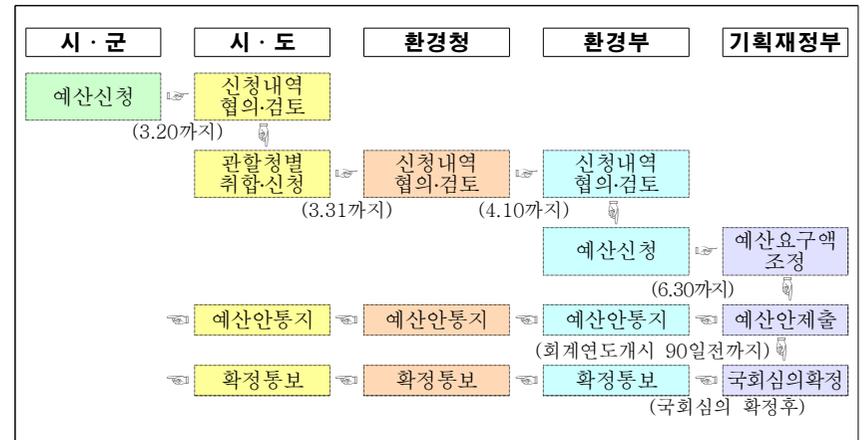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1년 ~ 계속
 - 사업비 : 미정('17년까지 기투자액 14,213억원)
 - 사업규모 : '17년까지 104개소 신설 완료, 44개소 설치 및 개선 중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시·군·구 80%, 광역시 60%, 농협조합 7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농협조합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 추진경위 :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지원을 위해 '91년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2. 지원대상 자치단체 및 사업추진체계

- 지원대상 :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일반 시·군(농협조합 포함)
 - 지원 우선순위
 -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시·군
 - 계속사업 우선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차순위로 지원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17)에 포함된 시·군
 - 자원화시설(바이오에너지화) 설치여건이 양호한 시·군
 - 광역상수원 지역에 위치한 시·군
 - 운영중인 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 등 최적 처리시설을 활용한 시설

사업추진체계



3. 제출서식 등 기타사항

- 기타조건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6.9월)」 준수
- 제출서식은 붙임1~4 참조

[붙임 1]

**사업명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신규/증설)**

2018. . .

| | | | |
|-----|--|-------|--|
| 시·도 | | 시·군·구 | |
|-----|--|-------|--|

작성자(시·군·구/조합) :
(인)
(Tel : , Fax :)

확인자(시·도/시·군·구) :
(인)
(Tel : , Fax :)

1. 사업개요

가. 국고보조금의 개요

(국고/지방비, 단위: 백만원)

| 사업구분 | 사업기간 | 총예산 | 전전년 이전예산 ('16년이전 까지) | 전년도 예산 ('17) | 당해연도 신청예산액 ('18) | 이후 요구액 |
|-------|------|-----|-------------------------------|---------------------|-------------------------|--------|
| 계속/신규 | | / | / | / | / | / |

나. 사업신청의 개요

| 구 분 | 개 요 |
|------------|---|
| 시 설 명 | |
| 처리장 부지 | (예정)위치 부지면적 m ² (약 평) |
| 설 치 기 간 | |
| 사업추진단계 | 기본/실시설계 %, 공사중 % * 농협조합의 경우 시·군 및 도와 협의 여부 |
| 처리대상구역 | |
| 수거대상 가축분뇨 |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 |
| 계 획 년 도 | |
| 계획수거량 | m ³ /일(호수), 희망농가 : m ³ /일(호수) |
| 처리시설용량 | m ³ /일 |
| 처 리 방 식 | (예) 전처리 → 주처리(생물학적 처리, 공법) → 후처리 → 하수 처리장 연계 또는 고도처리 → 단독처리 또는 연계처리 - 하수처리장 개요 : 처리용량 : m ³ /일, 처리공법 : ※ 계속사업은 처리공정도 별첨 |
| 최종 방류수역 | 방류 수계 작성(대권역, 중권역, 직접방류 하천 모두 기재) * 방류여부에 관계없이 작성 |
| 슬러지 처리방식 | (예) 탈수 → 슬러지 케익 → 매립 또는 하수처리장으로 병합 처리, 해양배출, 자원화 |
| 액비살포지 확보면적 | m ² (약 평) ← 자원화시설(액비화시설)인 경우 |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필요성: 상수원 등 수질민감지역, 정부 수질개선대책 포함여부 등
 - 효과

사업 추진현황(부지확보 내역 기재)

- ○○○○.○○.○○ :
- ○○○○.○○.○○ :

자원화(바이오에너지화) 추진 적합성

- 자원화 기술 우수성 및 실용성
- 기자재 및 부재료의 조달·교체 용이성, 운영 용이성
- 바이오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수요 및 생산물 활용방안
- 음식물 등 혼합처리시 확보계획
- 소화액 및 슬러지 처리 적정성 등

수익성 타당성 여부

- 설치·운영비 대비 경제성
- 월간 운영비 및 시설개량비
- 투입량 대비 생산된 바이오가스 발생량 및 활용계획(바이오가스시설)
- 생산된 고체연료의 공급대상 시설 및 활용계획(고체연료시설)

문제점

- 예상되는 문제점, 특히 부지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제기사항 등
기술

전문가 의견

- 자문단 및 자문위원회, 전문가 등 검토의견
※ 요약 별첨 할 것

법령·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 법령·제도 등 특기사항, 기본계획 반영여부, 예산변동내역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기술 검증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적용여부

재원부담비율 : 국고 60% ~ 80%, 지방비 10% ~ 20%, 농협조합 20%

※ 재원분담비율은 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80%, 지방비 20%, 광역시(군단위 제외)는 국고보조금 60%, 지방비 40% 원칙으로 하되, 향후 변동될 수 있음(단, 농협조합은 전 지역 국고보조금 70%)

사업 요구내역

- 사업요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필요시 관련자료 별첨)

2. 축산현황 및 전망

가. 오염원 현황 및 환경기초시설 현황

지역내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등 오염원 현황

| 구 분 | 오염원 | 배출량(m ³ /일) | 오염부하량(kg/일) |
|------|--------|------------------------|-------------|
| 계 | | | |
| 생활하수 | 인 구 : | (%) | (%) |
| 산업폐수 | 업 체수 : | (%) | (%) |
| 가축분뇨 | 가 축 : | (%) | (%) |

※ 원단위 또는 실제측정량 등을 토대로 산정하고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현황

| 구 분 | 가동중 | | | 설치중 | | 비 고 |
|-----------------|-------|------|-------|-------|------|-----|
| | 개 소 수 | 시설용량 | 처 리 량 | 개 소 수 | 시설용량 | |
| 하수처리장 | | | | | | |
| 분뇨처리시설 | | | | | | |
|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 | | | | | |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 | | | | | |
|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 | | | | | |

- 주) 1. 비고란에는 시설의 여유용량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병합처리, 연계처리 등에 대한 가능성 검토
 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국고지원 시설현황
 3.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은 퇴비·액비 재활용 신고시설 현황

나. 가축(한우·젖소·돼지)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

- 사육 및 발생현황, 장래 가축사육전망 기술

연도별 가축사육동향

(마리, %)

| 구분 년도 | 한 우 | | 젖 소 | | 돼 지 | |
|----------|-----|-----|-----|-----|-----|-----|
| | 사육두 | 증가율 | 사육두 | 증가율 | 사육두 | 증가율 |
| 2008년 | | | | | | |
| | | | | | | |
| 2017년 | | | | | | |

※ 신청기준 전년도('17년) 부터 10년간 작성(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반영)

장래사육두수 전망

(마리, %)

| 구분 년도 | 한 우 | | 젖 소 | | 돼 지 | |
|----------|------|-----|------|-----|------|-----|
| | 사육두수 | 증가율 | 사육두수 | 증가율 | 사육두수 | 증가율 |
| 2018년 | | | | | | |
| ... | | | | | | |
| 2025년 | | | | | | |

※ 신청기준 당해연도('18년) 부터 '25년까지 작성(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반영)

사육규모별 축산현황

| 구 분 | 계 | 허가대상 | | 신고대상 | 신고미만 |
|-----|-----|---------|---------|------|------|
| | | 5,000이상 | 5,000이하 | | |
| 계 | 농가수 | | | | |
| | 마리수 | | | | |
| 한 우 | 농가수 | | | | |
| | 마리수 | | | | |
| 젖 소 | 농가수 | | | | |
| | 마리수 | | | | |
| 돼 지 | 농가수 | | | | |
| | 마리수 | | | | |

읍·면·동별 가축사육현황

(호, 마리)

| 구분 지역별 | 한 우 | | 젖 소 | | 돼 지 | |
|-----------|------|----|------|----|------|----|
| | 사육호수 | 두수 | 사육호수 | 두수 | 사육호수 | 두수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종 및 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

(m³/일)

| 축종 | 규모 | 계 | 허가대상 | | 신고대상 | 신고대상 미만 |
|----|----|---|---------|---------|------|---------|
| | | | 5,000이상 | 5,000이하 | | |
| 계 | | | | | | |
| 한우 | | | | | | |
| 젖소 | | | | | | |
| 돼지 | | | | | | |

사육규모별 읍·면·동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

(m³/일)

| 지역별 | 규모 | 총계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신고미만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처리현황 분석

- 지역 내 농가의 처리현황 등 기술

가축분뇨 이용 여건

○ 비료생산 현황

(kg)

| 축종 | 가축분뇨 이용 | | | 유기질비료 | 화학비료 |
|------|---------|----|-----|-------|------|
| | 퇴비 | 액비 | 건제분 | | |
| 계 | | | | | |
| 한우·말 | | | | | |
| 젖소 | | | | | |
| 돼지 | | | | | |
| 닭 | | | | | |

○ 경종농가 및 비료생산 현황

(kg)

| 농경지 면적(ha) | | | 가축분뇨 이용검토 | | | | 유기질 비료 | 화학비료 |
|------------|---|-----|-----------|----|----|-----|--------|------|
| 초지 | 논 | 밭 등 | 축종 | 퇴비 | 액비 | 건제분 | | |
| | | | 계 | | | | | |
| | | | 초지 | | | | | |
| | | | 논 | | | | | |
| | | | 밭 등 | | | | | |

가축분뇨 처리현황

(개소, m³/일)

| 구분 | 개소 | 자가처리 | | | | 위탁처리 | | | | | 기타 () | |
|----|----|------|-----|-----|----|------|------|------|-----|---------|--------|--|
| | | 계 | 퇴비화 | 액비화 | 정화 | 계 | 공공처리 | 공동처리 | 처리업 | 재활용 신고자 | | |
| 계 | | | | | | | | | | | | |
| 한우 | | | | | | | | | | | | |
| 젖소 | | | | | | | | | | | | |
| 돼지 | | | | | | | | | | | | |
| 닭 | | | | | | | | | | | | |
| 개 | | | | | | | | | | | | |

축산농가 규모별 반입량

(호, m³/일)

| 구분 | 계 (수거 가능량) | 허가농가 | | 신고대상 | | | 신고미만 | | | |
|----|------------|------|-----|--------|-----|-----|--------|-----|-----|--------|
| | | 농가수 | 발생량 | 수거 가능량 | 농가수 | 발생량 | 수거 가능량 | 농가수 | 발생량 | 수거 가능량 |
| 계 | | | | | | | | | | |

읍·면·동별 가축분뇨(예상) 반입량

(m³/일)

| 지역별 | 수거량 | 계 | 한우 | 젖소 | 돼지 | 비고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경종농가 확보현황 및 공급 계획

(㎡)

| 지역별 | 확보량 | 계 | 초지 | 논 | 밭 | 과수원 |
|-----|-----|---|----|---|---|-----|
| 계 | | | | | | |
| | | | | | | |

○ 퇴비·액비 공급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기술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 현황(법 제34조 관련)

○ 가축분뇨배출시설 제한지역 지정현황 기술

공공처리시설 유입 축산농가 가축분뇨 분리·저장 현황

| 축산농가 호수 | 허가 대상 | 신고 대상 | 신고 미만 | 비고 |
|---------|-------|-------|-------|----|
| 총 축산농가 | | | | |
| 분리·저장 | | | | |

○ 조례제정 여부 및 내용, 미제정시 향후 계획

3. 공공처리시설 용량 검토

가. 가축분뇨 일반현황

(㎡/일)

| 구분 | 발생량 | 처리량 | 부적정 처리량 | 공공처리 필요량 | | 비고 |
|------|-----|-----|------------|----------|----------|----|
| | | | | 계획 | 희망농가(호수) | |
| 계 | | | | | () | |
| 한우 | | | | | () | |
| 젖소 | | | | | () | |
| 돼지 | | | | | () | |
| 계 | | | | | () | |
| 허가대상 | | | | | () | |
| 신고대상 | | | | | () | |
| 신고미만 | | | | | () | |

부적정 처리량 관리방안

- 기존 농가처리 개선 또는 경종 농가이용 증대
- 기존시설 활용(분뇨, 하수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재활용시설 등)
- 공공처리량 산정

공공처리 방법

- 자원화 여건 분석
- 처리방법

4. 예산집행 및 계획 내역

가. (계속사업)예산집행 및 사업비 내역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 당초예산 (a) | 전년이월 (b) | 이·전용 (c) | 예산현액 (a+b+c) | 집행 | 차년 이월 | 불용 | 이·불용 사유 |
|--------------|-------------|-------------|-------------|-----------------|----|----------|----|------------|
| 전년도 이전 | | | | | | | | |
| 전년도 (‘17) | | | | | | | | |

사업추진 현황(‘17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 | | | 지방비 | 집행액 | 추진상황 (%) | 지연사유 |
|------------|------|------|------|-----|-----|-------------|------|
| 당초예산 | 전년이월 | 이·전용 | 예산현액 | | | | |
| | | | | | | | |

○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개략)사업비 내역

| 구분 | | 단위 | 금액(천원) | 비고 |
|-----|------------------------------------|----|--------|----|
| 공사비 |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배관공사 전기·계장공사 | | | |
| | 소계 | | | |
| |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폐기물처리비 | | | |
| | 소계 | | | |
| | 총공사비 | | | |

- 주) 1. 계속사업비는 공사비내역을 세분하고, 신규사업은 개략공사비를 작성
 2.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등 공종별 주요내역을 작성하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으로 기재
 3. 산출내역에 물량·단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가령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증빙자료 및 물질수지도(설계서 사본 등) 등을 별도 첨부

○ 각 공정별 주요사업 산출내역

나. 연차별 소요 금액

(단위: 식, 천원)

| 구분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 연차별 투자소요 | | | | | | | | |
|------|---------|------|--|----------|----|------|----|------|----|--------|----|--|
| | | | | 계 | | 시작년도 | | 다음년도 | | 다음년도이후 | |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합계 | | | | | | | | | | | | |
| 세부내역 | ○타당성조사 | | | | | | | | | | | |
| | ○기본설계 | | | | | | | | | | | |
| | ○토지매입 | | | | | | | | | | | |
| | - 직접 보상 | | | | | | | | | | | |
| | - 간접 보상 | |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 |
| | ○도급공사 | | | | | | | | | | | |
| | ○관급공사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재원별 | ○국고 |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도급공사, 관급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으로 기재
 2.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3. A4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도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하고, 총사업비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요구내용을 별도 서식에 작성

다. 사업 추진일정

(단위: 천원)

| 구분 | 당해년도 이전 | 당해년도('18) | | 다음년도('19)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타당성조사 | | | | | |
| ○부지확보 | | | | | |
| ○기본 및 실시설계 | | | | | |
| ○공사 | | | | | |
| ○착공 | | | | | |

□ 사업 추진계획(부지확보 내역 기재)

○ ○○○○.○○.○○ :

라. 공공처리시설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 담당부서

○ 설치사업 : , 운영·관리 :

[붙임 2]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양식>

사업명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2018. . .

| | | | |
|-----|--|-------|--|
| 시·도 | | 시·군·구 | |
|-----|--|-------|--|

작성자(시·군·구) : (인)
 (Tel : , Fax :)

확인자(시·도) : (인)
 (Tel : , Fax :)

1. 사업개요

가. 국고보조금의 개요

(국고/지방비, 단위: 백만원)

| 사업구분 | 사업기간 | 총예산 | 전전년 이전예산 (‘16년이전 까지) | 전년도 예산 (‘17) | 당해연도 신청예산액 (‘18) | 이후 요구액 |
|-------|------|-----|-------------------------------|--------------------|------------------------|--------|
| 계속/신규 | | / | / | / | / | / |

나. 사업신청의 개요

| 구 분 | 개 요 |
|------------|--|
| 시 설 명 | |
| 처리장 (예정)위치 | |
| 부지 부지면적 | m ² (약 평) |
| 설 치 기 간 | |
| 사업추진단계 | 기본/실시설계 %, 공사중 % |
| 처리대상구역 | |
| 수거대상 가축분뇨 |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 |
| 계 획 년 도 | |
| 계획수거량 | m ³ /일(호수) |
| 처리시설용량 | m ³ /일 |
| 처 리 방 식 | (예) 전처리 → 주처리(생물학적 처리, 공법) → 후처리→ 하수처리장 연계 또는 고도처리 → 단독처리 또는 연계처리 - 하수처리장 개요 : 처리용량 : m ³ /일, 처리공법 : ※ 계속사업은 처리공정도 별첨 |
| 최종 방류수역 | 방류 수계 작성(대권역, 중권역, 직접방류 하천 모두 기재) * 방류여부에 관계없이 작성 |
| 슬러지 처리방식 | (예) 탈수 → 슬러지 케익 → 매립 또는 하수처리장으로 병합처리, 해양배출, 자원화 |
| 경종농가 확보면적 | m ² (약 평) ← 자원화시설(액비화시설)인 경우 |

사업 추진현황(부지확보 내역 기재)

- ○○○○.○○.○○ :
- ○○○○.○○.○○ :

사업현황

-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상황 및 특성 등을 간략히 언급

문제점

-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기술
- 문제 현상 및 원인분석 자료(조사보고서 사본 등) 첨부
 -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명백히 규명

기술진단결과 및 전문가 의견

- 한국환경공단 등의 기술진단 결과, 기술컨설팅, 자문단 등 검토의견
 - ※ 분량이 많을 경우 요약 별첨 할 것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 법령·제도 등 특기사항, 기본계획 반영여부, 예산변동 내역 등

재원부담비율 : 국고 60% ~ 80%, 지방비 10% ~ 20%, 농협조합 20%

※ 재원부담비율은 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80%, 지방비 20%, 광역시(군단위 제외)는 국고보조금 60%, 지방비 40% 원칙으로 하되, 향후 변동될 수 있음(단, 농협조합은 전 지역 국고보조금 70%)

외국기자재 사용 여부

- 외국기자재 명칭, 구입일자 및 사유, 내역 기술

공공처리시설

개선내용

- 수질현황

| 구 분 | BOD | COD | SS | T-N | T-P | (mg/L) |
|--------|-----|-----|----|-----|-----|------------------|
| | | | | | | 대장균군수 (개수/mL) |
| 설계유입수질 | | | | | | |
| 실제유입수질 | | | | | | |
| 방류수 수질 | | | | | | |
| 연계 수질 | 기준 | | | | | |
| | 유입 | | | | | |

- 퇴비액비화 현황

| 부속도 | 함수율 (%) | 구리 (mg/kg) | 아연 (mg/kg) | 염분(%) |
|-----|---------|------------|------------|-------|
| | | | | |

- 고체연료 품질기준 현황

| 길이 (mm) | 저위발열량 (kcal/kg) | 수분 (%) | 회분 (%) | 황분 (%) | 수은 (mg/kg) | 카드뮴 (mg/kg) | 납 (mg/kg) | 크롬 (mg/kg) |
|---------|-----------------|--------|--------|--------|------------|-------------|-----------|------------|
| | | | | | | | | |

개선내용

-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내용 및 소요비용 등 예산신청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필요시 관련자료 별첨)

2. 축산농가 처리 및 수거현황

가. 가축(한우·젓소·돼지)분뇨발생량 및 처리량

- 사육 및 발생현황, 장래 가축사육전망 기술

연도별 가축사육동향

(마리, %)

| 구분 년도 | 한 우 | | 젖 소 | | 돼 지 | |
|----------|-----|-----|-----|-----|-----|-----|
| | 사육두 | 증가율 | 사육두 | 증가율 | 사육두 | 증가율 |
| 2008년 | | | | | | |
| | | | | | | |
| 2017년 | | | | | | |

※ 신청기준 전년도('17년) 부터 10년간 작성(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반영)

장래사육두수 전망

(마리, %)

| 구분 년도 | 한 우 | | 젖 소 | | 돼 지 | |
|----------|------|-----|------|-----|------|-----|
| | 사육두수 | 증가율 | 사육두수 | 증가율 | 사육두수 | 증가율 |
| 2018년 | | | | | | |
| ... | | | | | | |
| 2025년 | | | | | | |

※ 신청기준 당해연도('18년) 부터 '25년까지 작성(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반영)

가축분뇨 처리현황

(개소, m³/일)

| 구분 | 개소 | 자가처리 | | | | 위탁처리 | | | | 기타 () |
|------|----|------|-----|-----|----|------|------|------|-----|-----------|
| | | 계 | 퇴비화 | 액비화 | 정화 | 계 | 공공처리 | 공동처리 | 처리업 | |
| 계 | | | | | | | | | | |
| 한우 | | | | | | | | | | |
| 젖소 | | | | | | | | | | |
| 돼지 | | | | | | | | | | |
| 닭·오리 | | | | | | | | | | |
| 개 | | | | | | | | | | |

축산농가 규모별 반입량

(호, m³/일)

| 구 분 | 계(수거 가능량) | 허가농가 | | | 신 고 대 상 | | | 신고미만 | | |
|-----|--------------|------|-----|-----------|---------|-----|-----------|------|-----|-----------|
| | | 농가수 | 발생량 | 수거 가능량 | 농가수 | 발생량 | 수거 가능량 | 농가수 | 발생량 | 수거 가능량 |
| 계 | | | | | | | | | | |

읍·면·동별 가축분뇨(예상) 반입량

(단위 : m³/일)

| 지역별 | 수거량 | 계 | 한 우 | 젖 소 | 돼 지 | 비 고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 현황(법 제34조 관련)

o 가축분뇨배출시설 제한지역 지정현황 기술

공공처리시설 유입축산농가 가축분뇨 분리·저장현황

| 축산농가 호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신고미만 | 비 고 |
|---------|------|------|------|-----|
| 총 축산농가 | | | | |
| 분리·저장 | | | | |

o 조례제정 여부 및 내용, 계획

3. 예산집행 및 신청내역

가. 예산집행 및 사업비 내역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 당초예산 (a) | 전년이월 (b) | 이·전용 (c) | 예산현액 (a+b+c) | 집행 | 차년 이월 | 불용 | 이불용 사유 |
|--------------|-------------|-------------|-------------|-----------------|----|----------|----|-----------|
| 전년도 이전 | | | | | | | | |
| 전년도 (‘17) | | | | | | | | |

○ 추진중인 개선사업에 대한 연도별 추진현황 기술

연도별 예산배정 및 집행내역(완료사업만 해당)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연 도 별 | | | | | | |
|--------------|--------|-------|--|--|--|--|--|--|
| | | 이전 | | | | | | |
| 총 계 | | | | | | | | |
| 예산배정 및 집행 | 소 계 | | | | | | | |
| | 국고 보조금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기타 | | | | | | | |

(개략)사업비 내역

| 구 분 | | 단 위 | 금 액(원) | 비 고 |
|-----------|---------|-----|--------|-----|
| 공사 비 | 토 목 공 사 | | | |
| | 건 축 공 사 | | | |
| | 기계·배관공사 | | | |
| | 전기·계장공사 | | | |
| 소 계 | | | | |
| 설 계 용 역 비 | | | | |
| 시 설 부 대 비 | | | | |
| - 토지매입비 | | | | |
| 폐기물처리비 | | | | |
| 소 계 | | | | |
| 총 공 사 비 | | | | |

- 주) 1. 계속사업비는 공사비내역을 세분하고, 신규사업은 개략공사비를 작성
 2.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등
 공종별 주요내역을 작성하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으로 기재
 3. 산출내역에 물량·단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가령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증빙자료 및 물질수지도(설계서 사본
 등) 등을 별도 첨부

○ 각 공종별 주요사업 산출내역

나. 처리공법(처리방법 포함) 변경내역

| 공 법 | | | |
|-----------------------|--|--|--|
| 공사기간 | | | |
| 용량(m ³ /일) | | | |
| 예산액(백만원) | | | |
| 비 고 (변경사유) | | | |

○ 변경승인 여부 및 검토의견

- 승인기관(시·도, 지방환경관서)의 설치승인·변경승인 여부나
 검토의견(승인·변경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아직 시기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을 반드시 첨부

※ 미첨부시 지원보류

다. 사업 추진일정

(단위 : 천원)

| 구분 | 당해년도 이전 | 당해연도('16) | | 다음연도('17)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 타당성조사 | | | | | |
| ○ 부지확보 | | | | | |
| ○ 기본 및 실시설계 | | | | | |
| ○ 공사 | | | | | |
| ○ 착공 | | | | | |

사업 추진계획(부지확보 내역 기재)

○ ○○○○.○○.○○ :

.

라. 공공처리시설 담당부서

담당부서

○ 설치사업 : , 운영·관리 :

<붙임 3>

2019년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시·도 검토의견

총괄

(백만원)

| 시·군명 | 수집대상 지역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 | 2019년 예산안 | | | 우선 순위 | 비고 |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계 | 국고 | 지방비 | | |
| ○○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부서 | 수생태보전과 |
| 담당자 | 강민지사무관 |
| 전화번호 | 044-201-7049 |
| FAX | 044-201-7054 |

30.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
 -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인공습지, 저류시설, 장치형 시설 등)를 통하여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4 ~ (계속)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국고보조(자치단체 자본보조)
- 국고지원기준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70%, 일반지역 50%
 - ※ 지방비는 30~50%이며, 수계별로 기금에서 일부 지원(지원비율은 각 수계 관리위원회에서 별도 결정)

□ 지원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 「물환경보전법」 제69조(국고보조)

2. 선정기준 및 작성양식 등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17.4)」 참조

| | |
|------|--------------|
| 담당부서 | 수생태보전과 |
| 담당자 | 차도현 주무관 |
| 전화번호 | 044-201-7042 |
| FAX | 044-201-7054 |

31.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매년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하구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 및 경관 훼손 초래
 - 쓰레기 수거·처리 주체 불분명(수거체계 구축 미흡),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부유쓰레기가 하천 하류 또는 바다로 유출
- 이에 쓰레기 발생량 감축, 상·하류 지자체간 비용분담, 재정지원 등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한반도 조성에 기여
 - ※ 대통령 지시('08.3, '11.6) : 하천, 하구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9 ~ (계속)
- 총사업비 : '17년까지 기투자액 85,432백만원
- 사업시행 방법 : 지자체(사업시행), 유역환경청(사업선정 및 현장지원)
- 지원형태: 국고보조(지자체 경상보조)
- 국고지원기준
 - 광역시 40%, 광역시 외 도·시·군 70%

- 지원대상
 - 하천, 하천변 및 하구 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비용

□ 지원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 물환경보전법 제69조(국고 보조)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17년까지 854억원 투자
- 향후 지원계획 : 하천 및 하구 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

| 구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이후 |
|----------|------|------|------|------|------|------|------|------|------|------|---------|
| 국고보조(억원) | 89 | 80 | 76 | 86 | 108 | 113 | 104 | 104 | 94 | 84 | 계속 사업 |

3.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사업

- 하천 및 하구유입 쓰레기 수거, 운반 및 처리 비용
- 하천 및 하구유입 쓰레기 수거시설 설치, 장비 임대 및 구입 등
 - 쓰레기 차단막, 수거 선박, 적환장 등 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 지원대상 하천 및 하구역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하구

- 아산만·세만금·탐진강·가화천·태화강·형산강·영덕오십천·삼척오십천·강릉남대천·양양남대천 및 경포호·향호·매호·영랑호·송지호·화진포·광포호 등 유입하천 및 하구

□ 지원우선 순위

-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 체결지역
- '17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결과 예산이 부족한 지역
- '17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추진된 지역
- 부유쓰레기가 다량 산재되어 수거·처리가 시급한 지역
-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쓰레기 수거량이 많은 지역
- 기타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가 필요한 지역 등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자치단체
 -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처리 국고보조사업 신청(기초자치단체→시·도)
 - 기초자치단체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종합(취합)하여 예산신청서 제출(시·도→유역(지방)환경청, 2.28까지)
- 유역(지방)환경청
 - 시·도에서 제출한 예산신청서 검토(붙임 2, 순위 포함)하여 제출(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 3.10까지)
- 환경부 : 신청내역 검토 및 편성, 기획재정부 요구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지원비율 : 광역시 40%, 광역시 외 도·시·군 70%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5.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1>

사업명 : ○○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018. .

| | | | |
|------|--|-------|--|
| 시·도명 | | 관리지역명 | |
|------|--|-------|--|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대상지: 00 하천(00 km 또는 km²), 00 하구(00 km 또는 km²) 등
- 사업기간 :
- 사업비 : 00 백만원(국비 00 백만원, 지방비 00 백만원)
- 사업내용(연간 수거계획 : 00톤)

| | 구분 | 사업비 (백만원) | 사업내용 |
|----------|-------------------------|--------------|---|
| | 계 | | |
| ○○ 하천 | ○ 쓰레기 수거 | | ○ 사업구간 ○○지점부터 ○○지점(00 km 또는 km ²)의 쓰레기 00톤 수거 ○ |
| | ○ 쓰레기 운반 | | ○ ○○ 쓰레기 적환장에서 ○○ 쓰레기 처리장까지(00 km) 쓰레기 00톤 운반 ○ |
| | ○ 쓰레기 처리 | | ○ 소각 : ○○ 쓰레기 처리장에서 00톤 소각 ○ 매립 : ○○ 쓰레기 매립장에 00톤 매립 ○ 재활용 : ○ 기타 처리방법 |
| | ○ 기반시설(차단막, 적환장 등) 설치 등 | | ○ 시설 종류, 설치위치, 설치규모 등 |
| | ○ 수거장비 임차 | | |
| | ○ 기타 | | |
| ○○ 하구 | ○ 쓰레기 수거 | | |
| | ○ 쓰레기 운반 | | |
| | ○ 쓰레기 처리 | | |
| | ○ 기반시설(차단막, 적환장 등) 설치 등 | | |
| | ○ 수거장비 임차 | | |
| ○ 기타 | | | |

2. 사업대상지역의 일반 현황

- 하천·하구 현황, 유역 현황 등
-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 쓰레기의 분포 및 수거·처리 현황 등
 -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추진상 문제점 등
 - ※ 쓰레기 수거량, 처리방법별 처리량, 수거·처리주체 등 세부내용과 추진상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대상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
 - -

3. 2018년도 예산 요구내용

- 총괄 (백만원)

| 구분 | 2018예산안 | | 증감 | |
|-----|---------|-------|-------|---|
| | 요구(A) | 조정(B) | (B-A) | % |
| 계 | | | | |
| 국고 | | | | |
| 지방비 | | | | |
| 기타 | - | | | |

- 세부내용(국고기준) (백만원)

| 사업내용 | 규 모 | 2018예산안 | | 비 고 |
|------|-----|---------|----|-----|
| | | 요구 | 조정 | |
| 계 | | | | |
| | | | | |
| | | | | |

※ 요구내용(A)은 지자체에서 작성하되, 사업물량, 산출단가 등 중심으로 작성(산출내역 작성예시 참조)

※ 조정내용(B)는 유역(지방)청에서 검토하여 청색으로 작성

4. 고려사항

- 관련계획
- 사업추진 현황
 -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등 현지조사, 적치 및 산재량 등 타당성 조사 내용 등을 일정에 따라 기재

5. 기대효과

-

6. 기타 참고자료

- 사업계획 평면도 1/50,000 지형도
 - 대상사업 설치 위치, 규모 등
 - ※ 언론보도, 주변 사진 등 첨부
- 시설 부대경비(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등)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건설부문요율에 따라 결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이월할 수 있음

<산출내역 참조>

‘18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산출내역

총괄

| 구분 | 사업내용 | 규 모 | 사업방법 | 금 액 (백만원) | 산출근거(원) | 비고 |
|----------|--------|-----|------|--------------|---------|----|
| | 합 계 | | | | | |
| OO 하천 | 소 계 | | | | | |
| | - 인건비 | | | | | |
| | - 장비임대 | | | | | |
| | - 운반비 | | | | | |
| | - 처리비 | | | | | |
| | - 기타 | | | | | |
| OO 하구 | 소 계 | | | | | |
| | - 인건비 | | | | | |
| | - 장비임대 | | | | | |
| | - 운반비 | | | | | |
| | - 처리비 | | | | | |
| | - 기타 | | | | | |

※ 규모란에는 쓰레기 수거량, 사업방법은 인력수거 또는 수거장비, 산출근거는 인건비, 처리비 등 원단위에 의한 산정내용 및 근거제시 등 기재

세부내역

< OO하천 >

- 000 시설
- 규모
- 설치 위치
-
-
- 000 시설
- 규모
- 설치 위치
-
-

< OO하구 >

- 000 시설
- 규모
- 설치 위치
-
-
- 000 시설
- 규모
- 설치 위치
-
-

| | |
|------|--------------|
| 담당부서 | 유역총량과 |
| 담당자 | 김영민주무관 |
| 전화번호 | 044-201-7026 |
| FAX | 044-201-7037 |

2018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검토의견
(시·도명)

총괄

(백만원)

| 시·군명 | 대상지역 | 사업기간 | 2018년 예산안 | | | 우선순위 | 비고 |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 |
| ○○군 | | | | | | 1 | (예)비용분담협약체결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역(지방)청에서 작성

32.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1. 사업목적 및 개요

사업목적

-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8개 지자체) 및 충청남도(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중
- ※ 진위천수계(1단계 : '12~'20, 2단계 : '21~'30), 삽교호수계(1단계 : '19~'30)
- 기타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수질·유량조사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보고서 작성비용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2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시행 방법 : 지자체(사업시행)
- 지원형태: 국고보조
- 국고지원기준
 - 광역시도 : 50%, 시·군 : 70%, 평택시 : 80%
- 지원대상
 -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 지원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 '17년까지 25.2억원 투자
- 향후 지원계획 :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

| 구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이후 |
|-----------|------|------|------|------|------|------|------|------|------|---------|
| 국고보조 (억원) | - | 2.0 | 2.8 | 4.1 | 4.0 | 4.0 | 4.0 | 4.3 | 8.4 | 계속 |

3.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사업

-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환경기초시설 등) 수질·유량 조사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 지원대상 하천

- 진위천 및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

□ 지원우선 순위

- 기타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자치단체
 -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국고보조사업 신청(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사업비 신청(광역자치단체→환경부)
- 환경부 : 신청내역 조정·편성, 기획재정부 요구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지원비율 : 광역시도 50%, 시·군 70%, 평택시 80%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5.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1>

**사업명 :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2018. .

| | | | |
|------|--|-------|--|
| 시·도명 | | 관리지역명 | |
|------|--|-------|--|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1. 사업개요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 사업자 :
- 사업기간 :
- 사업물량 :
- 총 사업비 :

다. 현 황

라. 지원근거

마. '19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바. 사업효과

사. 재원부담비율

2. 사업추진일정

| 구 분 | 추진일정 (월) | | | | | | | | | | | | 비고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중기재정 소요 전망

가. 사업운영 기본방향

나. 산출근거

4. 기타사항

| | |
|------|--------------|
| 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
| 담당자 | 박창진사무관 |
| 전화번호 | 044-201-7075 |
| FAX | 044-201-7070 |

33.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유출 등으로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직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사고의 근원적 예방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비 : 미정('17년까지 기투자액 3,068억원)
- 사업규모 : 완충저류시설 94개소 설치('17년소 설치완료, 10개소 설치 중)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시·군·구 7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및 제 69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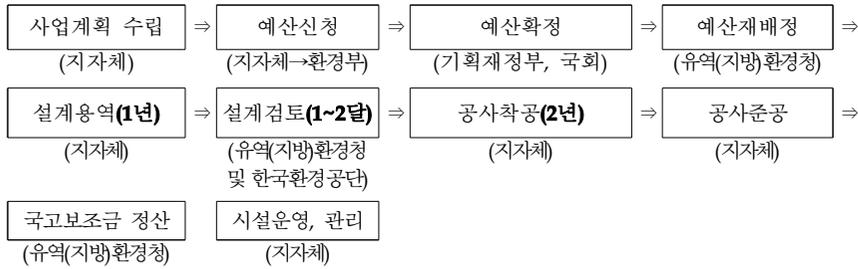
- 추진경위 : '02년도 낙동강수계법 제정하여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화
- '14.03월 낙동강수계 뿐만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각종 화학물질 및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질법을 개정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확대('15.3)

2. 지원대상 자치단체 및 사업추진체계

- 지원대상 :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1. 면적 150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 1일 5천톤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 ④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당 2kg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 사업추진체계



3. 제출서식 등 기타사항

- 기타조건 :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5.7월)」 준수
- 제출서식은 붙임1 참조

[붙임1]

사업명 : 0000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계속)

2018. 3.

| | | | |
|------|------|--------|------|
| 시·도명 | 0000 | 시·군·구명 | 0000 |
|------|------|--------|------|

작성자(시·군) : 담당과 과장 직명 0000000장 성명 0 0 0 (인)
 (TEL : 000-000-0000, FAX : 000-0000)

작성자(시·군) : 담당과 담당 직명 0000000장 성명 0 0 0 (인)
 (TEL : 000-000-0000, FAX : 000-0000)

확인자(시·도) : 담당과 담당자 직명 0000000 성명 0 0 0 (인)
 (TEL : 000-000-0000, FAX : 000-0000)

00 0000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계속)

1. 사업개요

가. 위 치 : 00시 00면 000리 000번지 일원

나. 시설용량 : 0,000m³

다. 단지현황

- 1) 단지지정일 : 200X. X. XX. (000도 고시 제 200X-XXX호)
- 2) 조성계획

| 조성규모 (m ²) | | | | 착공일 | 준공일 | 현공정 (%) |
|------------------------|------|-------|----|-----|-----|---------|
| 계 | 분양면적 | 처리장부지 | 기타 | | | |
| | | | | | | |

3) 단지분양계획

| 구분 | 계 | 입주완료 | 건축중 | 계획중 | 주요업종 | 비고 |
|-----------------------|---|------|-----|-----|------|----|
| 분양면적(m ²) | | | | | | |
| 업체수(개소) | | | | | | |

- ※ 계획입주업체 입주완료(공장가동) 예정일 : 20XX년 X월
- ※ 분양계약서, 입주의향서 또는 MOU체결내역 등 입주내역 증빙자료 제출(붙임자료로 제출)

2.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

가. 개요

1) 완충저류시설

| 시설용량 (m ³ /일) | 사업비(백만원) | | | | 사업기간 (공사기간) | 사업시행자 |
|--------------------------|---------------|-------------|-------------|------|-------------|-------|
| | 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 | | |
| XX,000 (총계) | XX,000 (100%) | X,000 (70%) | X,000 (30%) | (%) | 20XX~20XX | 00시장 |

2) 연계처리시설

| 시설명 | 시설용량 (m ³ /일) | 실유입량 (m ³ /일) | 연계처리량(m ³ /일) | | 운영자 |
|-----|--------------------------|--------------------------|--------------------------|-----|------|
| | | | 가능량 | 계획량 | |
| | XX,000 | XX,000 | X,000 | | 00시장 |

나. 추진경위

- 1) 20XX. X :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및 협의
- 2) 20XX. X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3) 20XX. X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4) 20XX. X : 설계 승인 및 사업비 확정

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 1) 000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유출수를 저류하기 위함

마. 기대효과

- 1) 00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00하천 직유입 차단
- 2) 00상수원 보호

바. 기타 법령·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
- 2)

3. 연차별 설치계획

(물량 : 대수, 톤, 금액 : 백만원)

| 구 분 | 사업 기간 | 총 사업비 | | 연 차 별 투 자 소 요 | | | | | |
|------------------|-----------------|--------|----------|---------------|----|-------|-----|----------|--------|
| | | | | 2017년까지 | | 2018년 | | 2019년 이후 | |
| | | 현행 | 변경 요구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합 계 | | XX,000 | | | - | | X00 | | XX,000 |
| 세 부 내 역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X00 | | | - | | X00 | | - |
| | ◦감리비 | | | | - | | - | | |
| | ◦공사비 | | | | - | | - | | |
| | -토목공사 | | | | - | | - | | |
| | -건축공사 | | | | - | | - | | |
| | -기계공사 | | | | - | | - | | |
| | -전기·계장공사 | | | | - | | - | | |
| | -조경공사 | | | | - | | - | | |
| | ◦부대비 | X00 | | | - | | - | | |
| 재 원 별 | ◦국 고 (70 %) | X,X00 | | | - | | X00 | | X,X00 |
| | ◦지방비 (30 %) | X,X00 | | | - | | - | | X,X00 |
| | -시·도비 | X,X00 | | | | | - | | X,X00 |
| | -시·군비 | | | | | | | | |
| | ◦차 입 (%) | | | | | | | | |
| ◦민 자 (%) | | | | | | | | | |

- 주) 1. 세부내역에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계 ” 란 만 기재
 3. A4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도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4. 2018년도 세부추진 계획

(단위 : 천원)

| 세부내역 | 사업비 | 산출내역 | 재원부담비율 |
|---------------|---------|------|----------|
| 합 계 | X00,000 | | |
|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X00,000 | | 국비 : 70% |
| ◦ 감리비 | - | | |
| ◦ 공사비 | - | | |
| - 토목공사 | - | | |
| - 건축공사 | - | | |
| - 기계공사 | - | | |
| - 전기·계장공사 | - | | |
| - 조경공사 | - | | |
| ◦ 부대비 | - | | |

- 주) 1. 세부내역에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3.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5.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

- 가. 20XX. X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승인
 나. 20XX. X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다. 20XX. X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라. 20XX. X : 공사 착공
 마. 20XX. X : 공사 준공

6. 기타 사항

-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첨부1) 1부.
 ※ 예시 참조
 나. 기타 증빙자료 1부.

[예시]

0 0 시 0 0 0 0 산업 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계획

2017. 3.

000시(군)

목 차

| | |
|------------------------------------|---|
| I . 산업단지 일반현황 | 1 |
| II . 산업단지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 2 |
| III .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 | 3 |
| 1. 기존시설(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활용방안 | 3 |
| 2.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 계획 | 3 |
| 3.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 3 |
| 4. 사업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 5 |
| IV . 완충저류시설 운영계획 | 5 |
| 1. 운영조직 | 5 |
| 2. 운영 일반사항 | 6 |
| 3. 연계처리 계획 | 7 |

[붙임]

| | |
|--------------------------------------|---|
| [붙임 1] 산업단지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평가표 | 8 |
|--------------------------------------|---|

[참고자료]

| | |
|-------------------------------------|----|
| [참고 1]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수행할 경우의 용량산정 ... | 10 |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I. 산업단지 일반현황

| | | | |
|----------------------|----------------------------|---|---|
| 공업지역 (산업단지)명 | OO 일반산업단지 | | |
| 위 치 | OOO도 OO군 OO면 OO리 OOOO번지 일원 | | |
| 관리기관명 | OO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 | |
| 담당자 및 연락처 | 홍길동 과장, 010-000-0000 | | |
| 공업지역 (산업단지) 개요 | 사업시행자 : OOOO OO사업협동조합 | | 조성면적(천 m ²) : 636천 m ² |
| | 공단조성기간 | 착공일 : 1991년 | 준공일 : 1995년 |
| | 분양여건 | 분양면적(천 m ²) : 460천 m ² | 분양업체수 : 70개사 |
| | 주요 입주업종 | 비금속, 철강, 기계 | |
| | 사업비 | 400억 | |
| | 방 류 하 천 | 산업단지 내 2련 암거 → OO강 | |
| | 하폐수 처리시설 | OO 폐수처리시설 | |
| | 하류지역 최근접 상수 및 취수원 | OO취수장 | |
| | 취수원과의 유하거리(km) : | 71km | |

II. 산업단지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 | 항 목 | 내 용 | |
|---------------------|--|---|------------------------|
| 수질오염 사고발생 가능성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천 m ²) | 636천 m ² | |
| | 폐수배출량 (m ³ /일) | 70m ³ /일 | |
| |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량 (m ³ /일) | 18m ³ /일 | |
|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톤/년) | 1,888톤/년 | |
|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kg/m ² ,년) | 2.96kg/m ² ,년 | |
| 부지여건 | 완충저류시설 설치부지 확보 여부 | 부지확보 완료 : ○ 부지확보 용이 : - 부지확보 어려움 : - | |
| 기술적인 조건 | 연계처리시설 | 처리시설명 | OO 폐수처리장 |
| | | 시설 용량(m ³ /일) | 1,500m ³ /일 |
| | | 일평균 처리량(m ³ /일) | 800m ³ /일 |
| | 배수구역 면적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 170% (1,076천 m ² ÷ 636천 m ²) | |
| 경제성 | 완충저류시설 예상사업비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원/m ²) | 15,212원/m ² (9,675백만원 ÷ 636천 m ²) | |

주) 각 항목별로 산정근거를 별도로 제출하겠음

Ⅲ.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 (사고유출수 저류기능과 비점오염원 저류기능을 동시 수행할 경우)

1. 기존시설(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활용방안

가. 현재 산업단지 내 유수지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유출수 저류기능과 비점오염원 저류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

2.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 계획

가. 사고유출수 저류기능과 비점오염원 저류기능을 동시 수행할 경우

- 완충저류시설 용량은 3,300m³이며,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음
- 완충저류시설 용량 = 사고유출수조 용량 +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
= 85m³ + 3,180m³
= 3,300m³ (= 3,265m³)

※ 사고원수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산업단지의 방류벽의 용량(실외 저장보관시설용량의 110% 이상) : 45m³

※ 소방용수량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에 제시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산정 : 40m³

※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용량 :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비점오염저감 시설(저류시설)의 용량 : 3,180m³

3.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가. 예상 사업비

- 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로 구분되며 총 사업비는 9,675백만원임
- 사업비 =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8,850 + 825

$$= 9,675 \text{ 백만원}$$

$$\begin{aligned} \text{- 공사비} &= 69.529 \cdot V^{0.5982}, [V : \text{저류용량}(\text{m}^3), \text{백만원}] \\ &= 69.529 \cdot (3,300)^{0.5982} \\ &= 8,850 \text{ 백만원} \end{aligned}$$

- 시설부대경비

$$\begin{aligned} &= \text{설계용역비} + \text{감리비} + \text{토지매입비} + \text{시설부대비} \\ &= 391 \text{ 백만원} + 124 \text{ 백만원} + 288 \text{ 백만원} + 22 \text{ 백만원} \\ &= 825 \text{ 백만원} \end{aligned}$$

※ 추정 부지면적 : 2,400m², 지가 : 12만원/m²

나. 예상 운영비

○ 운영비는 인건비, 전력비, 수질분석비, 유지보수비, 연계처리비를 포함하며 연간 135백만원으로 산정

$$\begin{aligned} \text{- 운영비} &= 6.932 \cdot V^{0.3664}, [V : \text{시설용량}(\text{m}^3), \text{연간 운영비}(\text{백만원/년})] \\ &= 6.932 \cdot (3,300)^{0.3664} \\ &= 135 \text{ 백만원/년} \end{aligned}$$

다. 사업비 및 운영비 분담방안

- 사업비는 9,675백만원으로 70%는 국비, 30%는 군비로 계획함
- 운영비는 연간 135백만원으로 100% 군비로 계획함

| 구분 | 국비 | 지방비 | 비고 |
|-----|-----|------|----|
| 설치비 | 70% | 30% | - |
| 운영비 | - | 100% | - |

4. 사업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가. 사업 추진일정

- 기본설계 : 20XX년XX월 ~ 20XX년XX월
- 실시설계 : 20XX년XX월 ~ 20XX년XX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XX년XX월
- 공사준공 : 20XX년XX월
- 시설운영 : 20XX년XX월 ~

나. 설치장소

- 위 치 : OO도 OO군 OO면 OO리 0000번지



IV. 완충저류시설 운영계획

1. 운영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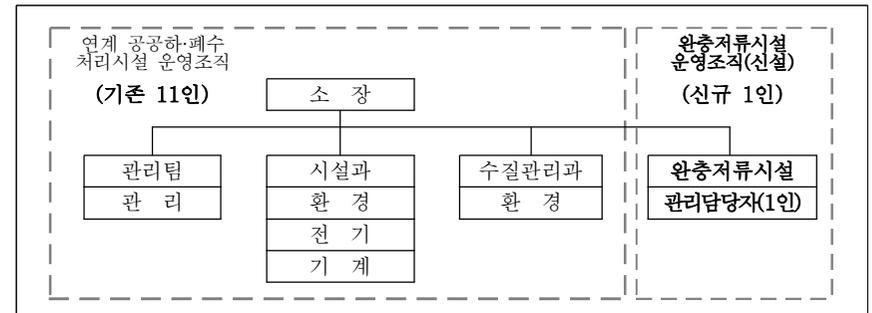
가. 완충저류시설의 특성상 OO 폐수처리장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OO 폐수처리장 운영과 장 이하의 기존 조직체계를 이용하고, 상기 기존 조직에 완충

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전담직원 1인을 별도로 추가함

- 완충저류시설 전담직원 주요업무
 -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기록관리 및 보고
 -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입주업체 교육

나. OO폐수처리장의 기존 조직체계와 통합관리, 완충저류시설팀 신설

- 완충저류시설 운영인원 포함 총 12인



2. 운영 일반사항

가. OO 폐수처리장 중앙제어실에서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상황이 감시되고 운영·관리되도록 자동화, 무인운전 수준으로 계획함

나. OO일반산업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시, 유해물질 유출 시 즉각적으로 OO 폐수처리장으로 통보하여 유해물질 포함한 사고유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

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유출수 및 유해물질 포함한 우수관거 유출수가 하천으로 직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완충저류시설로 유입시켜 하천방류 또는 연계처리 함

라. 또한 완충저류시설은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여야 하고

강우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처리로 인한 사고유출수 관리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운영·관리 함

3. 연계처리 계획

가. 사고유출수의 처리

- 1) 사고유출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처리 될 수 있는 시설로 위탁 또는 연계처리
 - 연계처리 시 연계처리시설의 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탁처리
 - 사고유출수조의 저류수를 연계처리 할 경우 OO폐수처리장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O일에 걸쳐 연계처리토록 함
 - OO폐수처리장의 연평균 유입유량(800m³/일) 및 일최대 유입유량 (1,000m³/일) 고려시에도 OO폐수처리장의 여유용량이 500m³/일 이상이 되어 연계처리 가능
 - 연계처리시는 완충저류시설에서 OO폐수처리장까지 이송관거 500m를 설치하여 압송하는 것으로 계획

나. 초기우수의 처리

- 1) 저류된 초기우수는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에 따라 처리

다. 연계 OO폐수처리장 개요

| 구분 | 내용 |
|----------|---------------------------------|
| 위 치 | OO도 OO군 OO면 000번지 인근 |
| 처리대상 | OO일반산업단지 내 공장폐수 |
| 시설용량 | 1,500 m ³ /일 |
| 연평균 유입유량 | 800 m ³ /일 |
| 수처리 방식 | 생물학적 고도처리 → 가압부상 → 여과 → 소독 → 방류 |

[붙임 1]

산업단지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평가표

| 항 목 | | 내 용 | |
|---------------------|---|------------------------------------|-------------|
| 수질오염 사고발생 가능성 | 1.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 kg/m ² ,년 | |
| | 2. 우천시 산업단지, 공업지역 우수관거 말단부 유출수의 하천 유출경로 | •전량 직접 하천 유출 | 아래 중 1항목 선택 |
| | | •유수지에 저류 후 하천 유출 | |
| | | •일부 폐(하)수처리장 이송, 일부 유수지 저류 후 하천 유출 | |
| | | •전량 차집 후 폐(하)수처리장 이송 | |
| | 3. 평상시 산업단지, 공업지역 우수관거 말단부 유출수의 하천 유출경로 | •전량 직접 하천 유출 | 아래 중 1항목 선택 |
| | | •유수지에 저류 후 하천 유출 | |
| | | •일부 폐(하)수처리장 이송, 일부 유수지 저류 후 하천 유출 | |
| | | •전량 차집 후 폐(하)수처리장 이송 | |
| | 4.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 천m ² | |
| 5. 폐수배출량 | m ³ /일 | | |
| 6.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량 | m ³ /일 | | |
| 부지여건 | 7. 완충저류시설 설치부지 확보 여부 | 아래 중 1항목 선택 | |
| | •부지확보 완료 | | |
| | | | •부지확보 용이 |
| •부지확보 어려움 | | | |

| 항 목 | | 내 용 |
|-----------------------------|--|-------------|
| 부지여건 | 8. 오염물질의 낙동강본류 유입여부,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도(오염물질이 취수원까지의 유하거리) | km |
| 기술적인 조건 | 9. 우수관거 말단부의 차집 용이성 | 아래 중 1항목 선택 |
| | •용이 | |
| | •보통 | |
| | •곤란 | |
| | 10. 하수와 하천수의 혼입여부 | 아래 중 1항목 선택 |
| | •분류(우수관거에 하수, 하천수의 혼입이 미미함) | |
| | •일부 합류(우수관거 말단부 + 산,공단 하수) | |
| | •합류(우수관거 말단부 +인근 지역 하수, 우수) | |
| | •합류(우수관거 말단부 +하수 + 하천수) | |
| | 11. 우수지 유무 및 완충저류시설 로의 활용가능성 | 아래 중 1항목 선택 |
| | •현 상태로 활용이 용이함 | |
| | •일부 활용 가능 | |
| | •활용이 어려움 | |
| | •우수지 없음 | |
| | 12. 폐(하)수처리장의 여유 용량, 완충저류물질의 연계처리가능성 | 처리시설명 |
| 시설 용량(㎥/일) | | ㎥/일 |
| 일평균 처리량(㎥/일) | | ㎥/일 |
| 여유용량 (시설용량-일평균처리량) | | ㎥/일 |
| 처리가능성 (여유용량 ÷ 연계처리량) | | % |
| 13. 배수구역 면적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 % | |
| 경제성 | 14. 완충저류시설 예상사업비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 원/㎥ |

[참고 1]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수행할 경우의 용량산정

1. 기존시설(우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활용방안

가. 기존 OO 우수지 하부를 준설하여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용량을 확보하며 확보된 용량으로 우수지의 고유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기우수를 저류함

※ 우수지 제원 : 저류용량 20,000㎥, 조성면적 2,500㎡

※ 우수지 하부 준설로 초기우수 저류를 위한 3,300㎥의 비점 오염저감 용량 확보

나. 우수지의 초기우수 저류와 관련하여 우수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완충저류시설은 비점오염원 저감기능을 제외한 사고유출수의 저류만을 고려할 수 있음

2.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 계획

가.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수행할 경우

○ 완충저류시설 용량은 250㎥이며,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음

○ 완충저류시설 용량

$$= (\text{사고유출수조 용량} + \text{우수관거 기저유량} \times 4\text{시간}) \times 1.5(\text{안전율})$$

$$= (85\text{m}^3 + 80\text{m}^3) \times 1.5(\text{안전율})$$

$$= 250\text{m}^3 (\approx 247.5\text{m}^3)$$

- 사고유출수는 유출차단시설 용량 45㎥, 소방용수량 40㎥로 총 85㎥임
- 유입시설로 연결되는 우수관거의 기저유량의 4시간 유량은 80㎥임
- 80㎥ = 20㎥/hr × 4hr

| | |
|------|--------------|
| 담당부서 | 자원순환정책과 |
| 담당자 | 장명규 주무관 |
| 전화번호 | 044-201-7346 |
| FAX | 044-201-7351 |

34.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배경 및 목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지자체 재정부담 감소 등을 위해 재활용센터를 한군데 이상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 부지확보 및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이 미흡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재활용센터 및 민간 중고매장(ex : 아름다운 가게, 나눔장터) 등 폐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집적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폐자원의 단순 재사용·재활용의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 산업이 미국·유럽의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20~30년 전부터 활성화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업사이클(up-cycle) 관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리뉴얼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육성의 성공가능성을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 스위스 프라이탁(Freitag)사는 전세계 350여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연매출 600억 이상의 세계적인 기업

○ 지원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업사이클센터 설립 지원

- '13~'18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 7개소 약 322억원 지원

○ 향후 지원계획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 설치사업 '19년 예산 국고보조 신청 접수('18.3~4)
 - 매년 2개소, 개소당 약 25억원 예정(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
-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9년 예산안 편성 및 부처안 반영('18.6)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방비 50% 및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치단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가 설치되지 않거나 증축 등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
-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폐자원의 활성화 산업 육성을 위한 의향이 있는 지자체

4. 대상사업

○ 재활용센터*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 * 재활용센터 :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
- ** 업사이클(up-cycle) : 폐자원을 재사용·재활용·물리화학적가공 또는 재디자인 등을 통해 그 활용도와 부가가치를 대폭 높인 상품을 만드는 것

1. 사업 개요

가. 개 요

○ 목 적 :

○ 기 간 :

* 계속사업일 경우 사업시점부터 사업 종점까지 명시

* '19년 당해 종료 사업일 경우 “2019년” 명시

○ 총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기 투자액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19년 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재원부담비율(국비 : 00 %, 시·도비 : 00%, 시·군비 : 00%)

○ 사업 대상지 :

○ 사업규모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시설 및 장비 기반구축 | 예시) - 부지 : m ² (평) / 연면적 m ² (평) - 층수 : 층 - 본관 동 및 별관 동 * 기타 시설 및 장비 기반구축에 해당되는 내용 |
| 기 타 (프로그램 운영 등) | 예시) - 안정적 폐자원 확보 시스템 구축 - 분류, 유해성 검사, 가공 시스템 구축 - 리뉴얼 스튜디오 입주 및 소재기업 협업 연계 - 재활용 및 업사이클에 대한 교육·홍보 등 |

나. 사업 필요성

다. 세부 사업내용

- 사업기간 중 사업내용

- '19년 사업내용

라. 기대효과

바. 기타 특이사항

2. 연차별 추진계획

※ 1년 단위 사업인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물량 : 대수, m³, 톤, 금액 : 백만원)

| 구 분 | 사업 기간 | 총 사업비 | 연 차 별 투 자 소 요 | | | | | | | | | | |
|------------------|--|----------|---------------|----|------|----|------|----|--------|----|--|--|--|
| | | | '19까지 | | 2020 | | 2021 | | 2022이후 | | |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
| 합 계 | | | | | | | | | | | | | |
| 세 부 내 역 |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용지(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 실시설계 ○ 감리용역 ○ 토목공사 - - ○ 건축공사 - - ○ 장비구축·운영 - - ○ 기 타 | | | | | | | | | | | | |
| 재 원 별 | ○ 국 고 (%) ○ 지방비 (%) - 시·도비 - 시·군비 ○ 차 입 (%) ○ 민자유지 (%) ○ 기 타 (%) | | | | | | | | | | | |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기타 세부내역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 추가기재
3.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4. A4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3. 2019년 세부 추진계획

1) 2019년 예산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금 액 | 산 출 내 역 | 국고 지원 비율 |
|-----------|-----|---------|----------|
| 합 계 | | | |
| ○ 타당성조사 | | | |
| ○ 기본설계 | | | |
| ○ 용지(보상)비 | | | |
| - 직접보상 | | | |
| - 간접보상 | | | |
| ○ 실시설계 | | | |
| ○ 감리용역 | | | |
| ○ 토목공사 | | | |
| - | | | |
| - | | | |
| ○ 건축공사 | | | |
| - | | | |
| - | | | |
| ○ 장비구축/운영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3. 기타 세부내역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 추가기재
 4.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2) 2019년 사업 상세내역

| 세부내역 (예 시) | 금 액 | 산출내역 | 국고 지원 비율 |
|---------------------------|--------|------------------------------|-------------|
| 합 계 | 000백만원 | 하단 참조 | 00.0% |
| ○ 부지확보 | 00백만원 | - | 00.0% |
| - 부지매입 | | 0000.00m ² | 00.0% |
| - 건물확보 | | 0000.00m ² | 00.0% |
| ○ 시설조성/운영 | 00백만원 | - | 00.0% |
| - 1동 또는 건물명 | 00백만원 | 공간 리모델링 1식 | 00.0% |
| - 2동 또는 건물명 | 00백만원 | 공간 리모델링 1식 | 00.0% |
| - 3동 또는 건물명 | 00백만원 | 공간 리모델링 1식 | 00.0% |
| ○ 장비구축/운영 | 00백만원 | - | 00.0% |
| - 가공 장비 | 00백만원 | 세척, 파쇄·분쇄, 압축·성형, 코팅 등 1식 | 00.0% |
| - 시제품/완제품 제작 장비 | 00백만원 | 재단·절삭, 도장, 본딩, 봉제 등 1식 | 00.0% |
| - 전시 장비 | 00백만원 | 전시장치 및 설비 1식 | 00.0% |
| - 물류 장비 | 00백만원 | 물류장비 및 설비 1식 | 00.0% |
| ○ 기타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 00백만원 | 00000 프로그램(구분) | - |

4. 사업추진일정 (상세히)

| 구 분 (예 시) | 추진 일정 (안) | | | | | | | | | | | | | | | | 비고 |
|--------------------|-----------|---|---|---|---|----|----|----|-------|---|---|---|---|---|---|---|----|
| | 2018년 | | | | | | | | 2019년 | | | | | | | | |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
| 타당성조사 | |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실시 용역 | | | | | | | | | | | | | | | | | |
| 추진단 구성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부지확보 및 건물매입 | | | | | | | | | | | | | | | | | |
| 시설조성 | | | | | | | | | | | | | | | | | |
| 장비구축 | | | | | | | | | | | | | | | | | |
| 시스템구축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준공 등 주요 공정별로 일정계획(실적 포함) 기재

5. 기 타

| | |
|------|--------------|
| 담당부서 | 폐자원관리과 |
| 담당자 | 유영란 |
| 전화번호 | 044-201-7370 |
| FAX | 044-201-7376 |

35.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수거 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 상시 배출가능 시설 설치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
- 지원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4항
- 지원규모: 전국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중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한 국고 지원(개소 당 875만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15~'17년 457개소(국고 3,691백만원) 지원
- 향후 지원계획
 - 전국 대상으로 매년 200여 개소 설치를 위한 국고 지원
 - ※ 재정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대상)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선정조건)
 - 재활용률 향상 등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선정지표: 주민부담률, 재활용품 분리배출률 높은 순)
 - 농어촌지역, 단독주택 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 우선 지원
(선정지표에 구 1.0, 시 1.5, 도·농복합시·군 2.0의 가중치 적용)
 -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관리 인건비 확보 지자체 우선 고려
 - 지방비 부담분(50%) 확보 자치단체 등

4. 기관별 주요 수행 사항

| 기 관 | 주요 수행 사항 |
|-----|---|
| 환경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등 사업 계획 수립 ○ 예산 수립 등 총괄 관리 |
| 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및 운영 ○ 관리인 제도 운영 등 시설 관리 체계 운영 ○ 사업비 지원 및 관리 ○ 설치 사업 결과 환경부 제출 |

5. 대상사업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6.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7. 기타사항

- 실적 보고 :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8.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

20 . . .

| | | | |
|------|--|--------|--|
| 시.도명 | | 시.군.구명 | |
|------|--|--------|--|

작성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1. 사업개요

가. 목적

나. 사업기간 :

다. 총사업비 : *사업기간 중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라. 사업규모 : *당해 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마. 시행대상 :

마. 시행 가구 수 :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수도 기재

2. 환경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전체 가구 수 현황 및 쓰레기 수거 방법(가장 최근연도)

(단위 : 가구)

| 가구수 현황 | | | 쓰레기 수거방법 | | | |
|--------|------|------|----------|-------|-------|-------|
| 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계 | 문전수거식 | 주민상차식 | 거점수거식 |
| | | | | | | |

※ 쓰레기 종량제 현황(통계자료 활용)

- 사업지역 가구 수 현황 및 쓰레기 수거 방법

(단위 : 가구)

| 가구수 현황 | | | 쓰레기 수거방법 | | | |
|--------|------|------|----------|-------|-------|-------|
| 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계 | 문전수거식 | 주민상차식 | 거점수거식 |
| | | | | | | |

나. 지역 여건 분석

※ 현재 문제점 및 주민요구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다. 그간의 추진 경과

라.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사업계획

가. 사업비 부담 및 재원확보 현황

○ 재원부담비율

- 국 비: 천원(%)

- 지방비: 천원(%)

※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지방비 확보현황 (확보일시 및 금액)

※ 지방비를 미확보 하였을 경우, 확보 계획 상세 기재

나. 대상 가구 수 및 사업비 산출 근거

- 대상 가구 수, 현장조사 결과 등 세부 자료(사진 등) 제시
 - 산출근거는 적용 가구 수 및 적용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시설 설치 및 분리수거함 구입 등 제반 비용에 한하여 작성(전기·통신 요금 등 운영비용 및 담당자 여비 등은 국고지원 비대상이므로 제외하여야 함)

다. 사업자 선정 방식

4. 성과관리 및 홍보계획

가. 성과관리 계획

- ※ 주민 만족도 등 조사계획, 사업시행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등
- ※ 재활용품 수거량, 판매실적 등 관련통계 관리 방안 등

나. 홍보계획 등

- ※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지역언론 활용 등 홍보계획, 주민참여 유도방안 등

| | |
|------|--------------|
| 담당부서 | 폐자원관리과 |
| 담당자 | 유영란 |
| 전화번호 | 044-201-7370 |
| FAX | 044-201-7376 |

5. 세부 추진일정

| 구분 | 추진일정 (월) | | | | | | | | | | | | 비고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타사항

- ※ 사업 예정지역 폐기물 배출 형태 사진(문제점 등)

36.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지원(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전량 소각·매립 처리되는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
 - 분리·선별된 폐기물을 물질재활용을 함으로써 순환가능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및 소각·매립량 감축, 지자체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을 경감
-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가능물질이 약 70.4% 혼입(13년), 동 시설운영 시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50% 재활용 가능 예상
- 지원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4항
- 지원규모: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 지원[개소 당 45억원(일 80톤 처리 기준) 중 국고 22.5억원 지원]

2. 향후지원 계획

- '18년 시범사업(1개소) 성과평가 후 사업 확대 예정
- ※ 재정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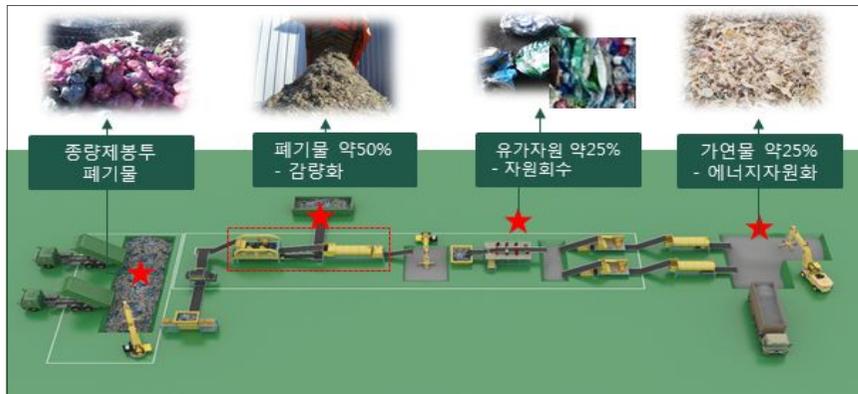
- (지원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 (선정조건)

- 소각·매립량이 많은 지자체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이 높은 지자체
- 연내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비 부담분(50%) 확보 가능 및 시설 설치 부지 확보 지자체
- 물질재활용 및 열적재활용 등 선별 후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연계 계획 수립 지자체

4. 대상사업

- 종량제봉투를 파봉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선별할 수 있는 시설 (파쇄기, 타격식·디스크·풍력식 선별기, 분쇄기, 압축기, 집진기, 방음장치, 컨베이어 등)



5.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 지원비율: 국고 50%, 지방비 50%

6. 기타사항

- 실적 보고: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7.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20 . . .

| | | | |
|------|--|--------|--|
| 시·도명 | | 시·군·구명 | |
|------|--|--------|--|

작성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1. 사업개요

가. 목적

나. 사업기간: ※ 19.11월까지 준공 완료로 계획 수립

다. 총사업비:

라. 사업규모: ※ 일 처리 용량 등

2. 환경분석

가. 일반현황

- 최근 3개년 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처리량

(단위: 톤)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소각량 | | | |
| 매립량 | | | |
| 계 | | | |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공식통계 값

- 최근 3개년 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단위: %)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 | |

※ '쓰레기종량제 현황' 공식통계 값

나. 지역 여건 분석

※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의 주요 문제점등 자유롭게 기재

라.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사업계획

가. 사업비 부담 및 재원확보 현황

○ 재원부담 비율

- 국 비: 천원(%)

- 지방비: 천원(%)

※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지방비 확보현황(확보일시 및 금액)

※ 지방비를 미확보 하였을 경우, 확보 계획 상세 기재

나. 사업비 산출 근거

※ 시설 설치비(전처리시설에 설치할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부지 구입비 등
※ 시설 설치 등 제반 비용에 한하여 작성(인건비, 전기·통신 요금 등 운영 비용 및 담당자
여비 등은 국고지원 비대상이므로 제외)

다. 시설설치 부지 개요

※ 시설설치 부지의 위치(사진, 도면 등), 규모 등
※ 부지확보 여부 또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라. 재활용 연계 계획

※ 전처리시설을 통하여 분리·선별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다. 사업자 선정 방식

4. 성과관리 및 홍보계획

가. 성과관리 계획

- ※ 사업시행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등
- ※ 소각매립 감축 및 재활용 증가 등 추정량

나. 홍보계획 등

- ※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지역언론 활용 등 홍보계획 등

5. 세부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 일정 (월) | | | | | | | | | | | | 비고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타사항

| | |
|------|--------------|
| 담당부서 | 폐자원관리과 |
| 담당자 | 노시민 |
| 전화번호 | 044-201-7366 |
| FAX | 044-201-7376 |

37.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 확산방지 및 안정화(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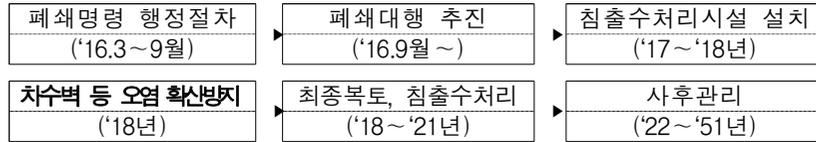
- 에어덤 붕괴(12.12.) 이후 방치중인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의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침출수 처리 및 안정화 사업을 통해 환경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 보호와 수도권 식수원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사업명 :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 사업기간 : '17 ~ '21(5년간)
- 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50%)
- 사업량 :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사업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지자체 자본보조, 환특)
- 사업주체 : 원주지방환경청, 충북 제천시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 추진실적 : 2017년부터 신규(국비 5억원, 50%)
- 향후 지원계획
 -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및 차수벽 설치, 오염확산방지 모니터링 등 안정화사업추진('17 ~ '21년)



3.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역
 - 위해우려 매립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 시설과 주변 오염지역

□ 지원우선순위

-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
 - 재난위험시설인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은 특정관리대상시설 ('14.7월 지정)로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사업 필요

□ 지원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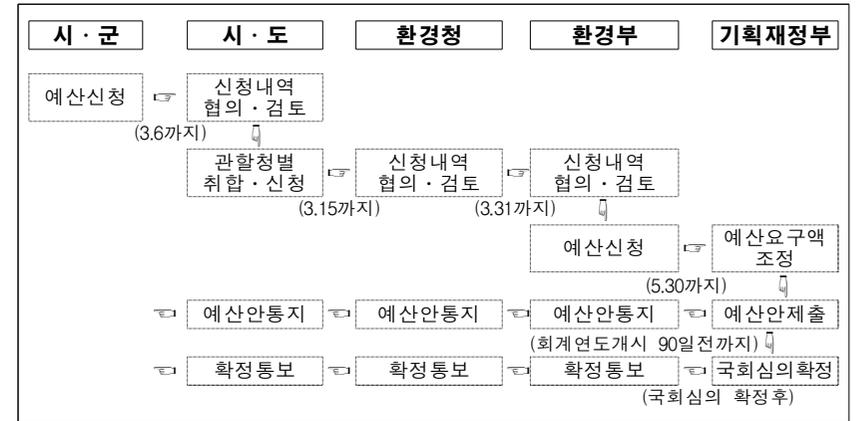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지원율 50%)

4. 대상사업

-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사업

5.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원주청)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및 안정화사업 추진('17~'21년)
 - (제천시) 지방비 분담 및 안전화 사업이후 매립장 인수, 사후관리



- 재원분담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6.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 신청기한
 - 제천시 → 충청북도 : 3월 6일까지
 - 충청북도 → 원주지방환경청 : 3월 15일까지
 -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부 : 3월 31일까지
- 신청서류
 - 지자체('붙임'을 작성) →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부에 제출

붙임 : 지방자치단체 신청양식

사업추진계획서

**사업명 :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
확산방지 및 안정화사업**

20 . . .

| | | | |
|------|--|--------|--|
| 시.도명 | | 시.군.구명 | |
|------|--|--------|--|

작성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위치 :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48(왕암동 989)
- 사업규모 :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및 연계처리, 차수벽 등 오염 확산 방지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모니터링, 최종복토 등

2. 사업 추진현황

-
-

3. 투자실적 및 계획

-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기 투자실적 | '19년도 사업비 | 향후 투자계획 |
|-----|-------|--------|-----------|---------|
| 계 | 7,000 | | | |
| 국고 | | | | |
| 지방비 | 소계 | | | |
| | 사도비 | | | |
| | 사군비 | | | |
| 기타 | | | | |

※ 총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19년도 사업추진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비 구분 | 예산액 | 주요 집행내역 | 추진일정 (연/월) |
|--------|-----|---------|---------------|
| 합 계 | | | |
| | | | |

※ 사업비 구분은 기본계획비, 기본·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공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분

○ 연차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교부액 (A) | 전년이월액 (B) | 예산현액 (C=A+B) | 집행액 (D) | 집행율 (D/C) |
|------|------------|--------------|-----------------|------------|--------------|
| 계 | | | | | |
| '17년 | | | | | |
| '18년 | | | | | |
| | | | | | |

4. 지방비 확보여부

○